

租稅外 公共負擔斗 財政

1999. 5.

발간사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확대,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 등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도시자영자의 소득과약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확대 실시하고, 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할 경우 직장인과 자영자간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금·기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기업이나 가계 등 민간이 부담하는 각종 준조세에 의해 조성되면서도 정부의 「예산외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의적·파행적 관리로 연금·기금제도의 부실이 심화되어 왔다는 기존의 효율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준조세를 비롯한 조세이외의 부담은 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조세의 대체 또는 보완형태의 재정수입일 뿐만 아니라 기존 세제의 세율인상 등에 따른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다는 속성 때문에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환경,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의 다양화와 함께 정부 및 공공부문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기능(market mechanism)을 강조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기존 조세제도를 통한 세입(稅入)보다는 부담금이나 사용료·수수료 등 조세이외의 부담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 IMF, OECD 등을 중심으로 준재정행위(準財政行爲, QFAs, quasi-fiscal activities) 또는 예산외자금(豫算外資金, EBFs, extrabudgetary funds) 등을 정부의 고유기능이나 재정활동과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정부활동(government operations)의 투명성(transparency)과 신뢰성(accountability)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유의 재정수입으로 볼 수 없는 준조세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조세이외 공공부담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히 최근에 발표된 「OECD의 부담금에 대한 정책제언」(1998)을 통하여 조세이외 공공부담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본원의 한경동 연구위원과 대우경제연구소 하정훈 박사가 수행하였으며, 김민정, 박마리아 연구조원의 자료정리와 원고작성에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저자들은 보고서의 초고에 유익한 논평을 해준 평가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모든 내용은 연구자들의 개인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혀둔다.

1999년 5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좌승희

목 차

발간사

연구의 배경과 기본개념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I. 연구의 기본개념 — 공공재 · 외부성과 자원배분

기업의 준조세 부담현황 —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 I. 서론
- II. 상장기업의 준조세 부담현황
- III. 준조세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
- IV. 준조세와 연구개발비
- V. 결론 및 시사점

<부록 1> 업종별 준조세 현황

<부록 2> 30대 그룹의 준조세 현황

정부 · 공공부문의 조세의 공공부담 부과현황

- I. 서론
- II. 다양한 기존 개념들 — 금전지급의무, 공과금, 준조세
- III.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조세의 공공부담에 대한 정의와 유형
- IV. 재정통계자료를 통해 본 조세의 공공부담의 규모
- V. 결론 및 시사점

요약 및 정책과제 — 「OECD의 부담금에 대한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영문초록

연구의 배경과 기본개념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1999년에는 약 1,200억원, 2000년부터는 매년 약 370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준조세 정비조치를 취했다는 발표를 하였다.¹⁾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기업 준조세에 관한 개혁을 1999년 32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준조세를 정비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정부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한 부처에서는 국민부담을 줄이려고 하지만 다른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형태의 부담이 생기거나 기존의 부담률이 인상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는 여권발급시 부과하는 국민교류기여금 등 준조세 정비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통일부에서는 북한에 건설 중인 경수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전기료에 3%의 경수로분담금을 부과하고,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팔당호·낙동강 등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도료에 부담금을 징수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전화요금, 우편·철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 준조세를 비롯한 조세이외의 부담은 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조세의 대체 또는 보완형태의 재정수입일 뿐만 아니라 기존 세제의 세율인상 등에 따른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새로운 재정수입의 확보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조세이외 부담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조세이외의 부담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특히 기업이나 가계가 생각하는 준조세와 정부가 주장하는 준조세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기업이나 가계 등 민간부문에서는 계속해서 과도한 준조세 부담을 성토하지만, 정부나 공공부문에서는 준조세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 민간부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거나 불가피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준조세나 부담금에 대한 논의는 성토와 주장이 평행선을 그은 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준조세나 부담금에 대한 연구가 설문조사 등에 의한 실태파악 등에 의존한 채 특정부문이나 개별적인 제도에만 관심을 가져왔던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준조세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조세이외 공공부담에 초점을 맞추어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OECD의 부담금에 대한 정책제언」(1998)을 통하여 조세이외 공공부담의 정비와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세 또는 조세이외 공공부담에 대한 이론적 이해의 틀을 정리한 후,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기업의 준조세 부담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아울러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준조세, 부담금 등 조세이외의 공공부담을 "조세의 공공부

1) 기획예산위원회(1999. 1. 20.)

담(租稅外 公共負擔)"이란 새로운 개념에 따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재정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그 규모를 추산한다.

II. 연구의 기본개념 — 공공재 · 외부성과 자원배분

기업과 가계는 정부에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형태의 조세를 납부하면서도 부담금, 공과금, 수수료, 과태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조세이외의 부담을 지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이외의 부담을 포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준조세(準租稅, quasi-tax)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준조세란 용어는 이론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준조세나 부담금이 조세와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가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면, 그리고 정부 · 공공기관이 조세의 형태이든 준조세의 형태이든 민간부문으로부터 세입을 필요로 한다면, 정부 · 공공부문의 재정(財政)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론적 토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원배분과정에서 시장기구(market mechanism)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나 공공부문의 시장개입행위라고 할 수 있는 조세부과나 조세이외의 부담이 갖는 경제적 의미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논의하게 될 준조세, 부담금, 공과금 등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기본개념들—공공재, 외부성, 시장실패, 효율성, 공정성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재화 특성과 자원배분

가. 공공재와 외부성

(1) 공공재와 사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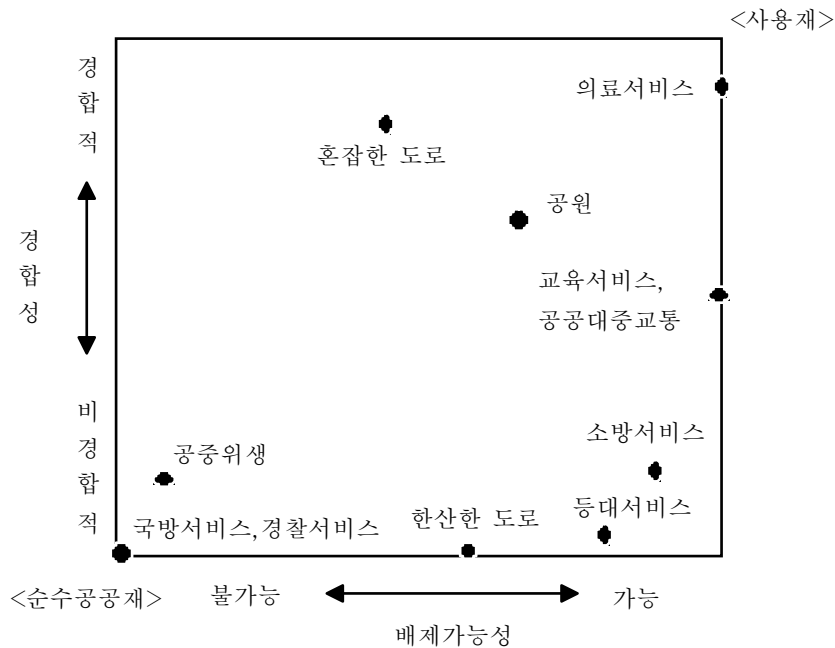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란 사용재(私用財, private goods)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소비하기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공공재의 예로는 국방, 고속도로, 공원, 가로등, 경찰 등 다양하며, 비경합성(非競合性, non-rivalry)과 배제불가능성(排除不可能性, non-excludability)이라는 두 가지 성질이 사용재와 구별되는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공공재가 갖는 첫 번째 기본특징인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어떤 사람이 공공재로 정의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모든 구성원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공공재로부터 생기는 혜택을 다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성격이 바로 비경합성이다. 더욱이 소비가 비경합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추가적으로 공공재의 소비에 참여하여도

이로 인해 혼잡(混雜, congestion)의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재의 배제불가능성이란 두 번째 특징은 사용재의 경우 대가(代價)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소비할 수 없다는 배제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공공재의 경우에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것을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모두 만족하는 순수공공재(純粹公共財, pure public goods)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오히려 두 가지 성격 가운데 하나만 만족하거나, 만족하더라도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²⁾ <그림 1>에서는 비경합성을 한 축으로 하고, 배제불가능성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공공재의 사례를 들고 있다.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모두 만족하는 순수공공재를 원점에 놓으면, 사용재는 반대쪽 모서리에 오게 된다. 또한 공공재로 분류될 수 있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는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상대적 위치를 정할 수 있다.

<그림 1> 공공재와 사용재



자료: 이준구(1998)

(2) 외부성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실을 주지만 이에 대한 대가(代價)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대해 외부성(外部性, externality)이 존재한다고 한다.³⁾ 외부성에는 해로운 것과 이로

2) 이처럼 두 특성을 완전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공공재를 비순수공공재(非純粹公共財, impure public goods)라고도 함.

3) 외부성이란 표현은 직접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거래관계의 내부 또는 시장

운 것이 있으며⁴⁾, 생산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해로운 외부성의 대표적인 예로써는 환경오염을 들 수 있다. 어떤 제조업자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공해물질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으로 다른 경제주체들이 피해를 받게되는 경우이다. 반면에 이로온 외부성이 나타나는 경제활동은 기술개발(R&D)을 들 수 있다. 어떤 한 기업의 성공적인 기술개발로 다른 기업이나 생산자에게 의도하지 않았던 파생기술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줌으로써 바람직한 파급효과가 생기는 경우이다.

나. 효율적인 자원배분 — 시장실패 · 정부개입과 가격결정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가격기구(price mechanism)를 통해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재나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사용재만이 존재하는 경제와는 달리 시장에 의한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실패(市場失敗, market failure)의 사례로 이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재의 경우에는 배제불가능성 때문에 가격을 징수하려 해도 징수할 수 없거나 징수비용이 가격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가격책정이 무의미해지고, 더욱이 비경합성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더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시장기구에 의해서는 적정수준의 공공재가 생산되지 않고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성은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시장가격체계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직접적으로 해롭거나 이로온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 따라서 해로운 외부성을 유발하는 사람, 예를 들어 환경오염 배출자는 오염을 유발하는 상품의 생산량을 결정할 때 직접적인 생산비용만을 고려할 뿐 오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환경의 훼손과 같은 사회적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에 이로온 외부성을 갖는 재화나 서비스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파급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적정수준보다 적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외부성이 존재할 때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은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공공재나 외부성이 존재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먼저 공공재의 경우 시장기구와 마찬가지로 분권화된(decentralized) 의사결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될 수 있음이 이론적인 모형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사용재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는 시장의 수요조건과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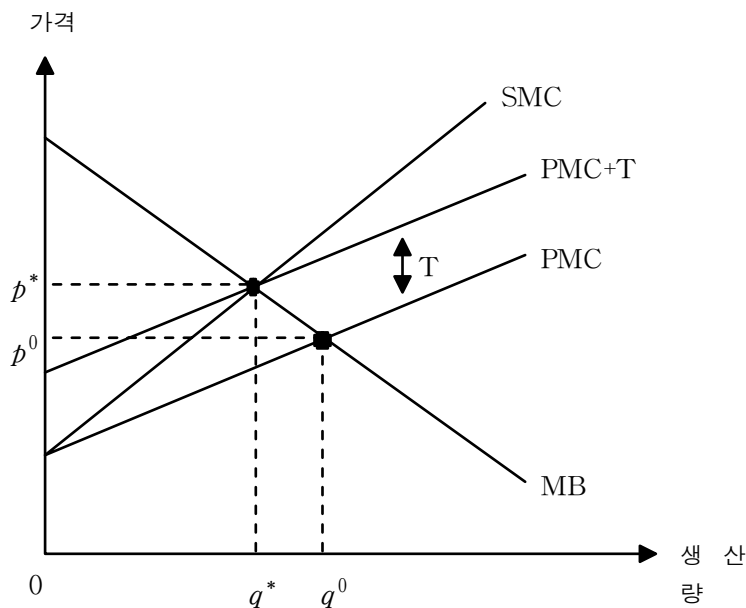
이라는 테두리의 '외부'에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

4) 이로온 외부성을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또는 긍정적 외부성(positive externality), 해로운 외부성을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 또는 부정적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이라고 함.

조건으로부터 결정되는 가격을 통해 각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왈라스 균형(Walrasian equilibrium) 또는 일반경쟁균형(一般競爭均衡, competitive equilibrium)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게 된다. 반면에 공공재의 경우에는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양의 공공재를 소비하게 되므로 각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공공재의 양은 같지만 소비자마다 각각 다른 가격(조세)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린달균형(Lindahl equilibrium)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하여 공공재의 공급수준과 각자의 부담비율을 적정하게 결정하여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결과가 된다.⁵⁾⁶⁾

한편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림 2>을 이용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생산의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이 사적 한계비용(private marginal cost)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하게 되며, <그림 2>에서 q_0 가 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사적 한계비용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손해에 해당하는 외부비용(external cost)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social marginal cost)은 이 기업의 사적 한계비용에 외부비용을 합한 것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그림 2>의 SMC곡선이다.

<그림 2> 부정적 외부성과 피구의 조세



자료: 전영섭 · 나성린(1995)

- 5) 이준구(1998), 전영섭 · 나성린(1995) 참조
- 6)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공공재의 혜택을 원하지만 그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이와 같이 사람들이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그 공공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놓고, 다른 사람에 의해 공급된 후 이에 편승하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무임승차자의 문제(free rider problem)라고 함. 이와 같은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불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하나의 가설(hypothesis)에 불과하며 현실에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님.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인 q^* 가 된다. 결국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할 때에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더 많은 생산이 이루어져 사회적 적정수준 이상의 오염이 발생하는 반면에 가격은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낮게 책정된다. 따라서 기업이 오염에 따른 비용을 고려할 유인(誘引, incentive)이 없는 한 오염은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줄어들지 않게 된다. 이러한 유인을 제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오염배출량에 따라 가격(조세)을 지불하도록 하여 생산의 사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T 만큼의 가격(조세)이 부과되면 기업의 생산량은 사회적 적정수준으로 줄어들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부비용을 가격체계에 내부화(internalization)하기 위해 부과하는 가격(조세)을 「피구의 조세(Pigouvian tax)」라고 부르며, 환경세가 이에 해당한다.⁷⁾⁸⁾

따라서 공공재가 존재할 때 준시장적(準市場的, quasi-market)인 메커니즘을 이용하거나, 외부성이 있는 재화의 경우에는 시장기구보다는 정부개입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효율적인 자원배분과정에서 시장기구를 통해 결정되는 사용재의 가격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공공재 또는 외부성과 관련이 있는 가격(조세)을 찾게 된다.⁹⁾

2. 공공부담의 평가기준 : 효율성, 형평성, 적절성

공공재나 외부성이 존재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시장실패 때문에 정부개입 또는 정부·공공부문의 생산, 공급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공공재를 흔히 정부나 공공부문에 의해 생산·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정부나 공공부문이 생산, 제공하는 것 중에는 공공재가 아닌 것도 많으며, 오히려 민간부문이 공공재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정부·공공부문의 개입은 필요조건에 불과할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정부나 공공부문이 징수하는 공공부담은 일종의 가격(price)이며, 따라서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배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공공부담이 가격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 어떤 부담은 편익을 제공하는 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반

7) 정부개입이 아닌 당사자의 거래에 의한 외부성의 해결은 코오즈의 정리 등을 제시할 수 있음. 원동철(1998) 참조

8) 반면에 긍정적인 외부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높게 나타나게 되므로 보조금을 통하여 사적 한계비용을 낮춤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이러한 보조금을 「피구의 보조금(Pigouvian subsidy)」이라고 하며, 그 예로는 환경보조금을 들 수 있음.

9) 정부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일반적인 세금(조세)과 구별하기 위해 환경오염 등에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을 부담금, 부과금, 분담금 등으로 지칭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특별히 조세와 부담금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공공부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하고자 함.

면, 또 다른 부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공평성(fairness)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생산물의 성격과 공공정책의 목표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공공부담을 평가하는 기준은 배분기능으로서의 효율성(efficiency), 책임부담의 공평성(equity),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나 비용의 적절성(reasonableness) 등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 배분기능으로서의 효율성

경제시스템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가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자·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자원배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달성하는 필요조건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에서 살펴보았듯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그것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한계비용(the marginal or incremental costs)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마지막 한 단위 재화의 가치가 가격과 같아질 때까지 재화를 사는 것이다. 만약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낮게 결정된다면, 소비자의 수요가 지나치게 늘어나 사회적으로 높은 가치의 다른 재화를 희생하고 많은 자원을 그 재화의 생산에 투입하게 된다. 또한 재화의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게 결정된다면, 반대의 경우가 나타난다. 결국 경쟁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때, 가격은 자연스럽게 한계비용에 수렴하게 되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사실 공공부담은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공공부담이 적절하게 책정된다면 그 재화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재화와 공공부담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으며, 때로는 대체재의 사용을 장려하게 된다. 만약 정부가 대체재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민간부문의 시장을 이용하여 공급한다면, 공공부담을 부과할 것인가 또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소유와 경영을 이전시킬 것인가라는 선택이 남게 된다. 또한 정부가 한계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담을 책정한다면 수요나 이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이와 같은 정보는 민간기업이 정부기능을 대신하거나 또는 경쟁적인 재화를 생산하려는 결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공공부담이 배분기능으로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쟁시장을 이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이나 희소가치를 갖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민간기업이 효율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재화나 용역을 정부는 제공해야 하고, 예를 들어 고정비용이 지나치게 커서 자연독점으로 인해 경쟁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경쟁시장에서는 정부도 재화의 가격을 한계비용에서 결정해야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자연독점의 경우와 같이 고정비용이 커서 평균생산비용이 감소하더라도 가격을 한계비용으로 책정한다면 손해를 보게 된다. 공장과 설비에 대한 많은 고정투자비용을 생산량이나 용도에 따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한 단위를 생산하는 비용은 작지만 고정투자를 상쇄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재화나 서비스를 정부나 공공부문이 공급하더라도 효율적인 생산은 한계비용가격설정(marginal-cost pricing)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가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면 이 생산계획으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것이며, 정부는 그 차이를 다른 부문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조세 등에 의해 보전해야 한다. 반대로 평균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면 재화나 서비스의 잠재적인 소비자가 생산자의 추가비용을 보상할 수 있을 정도로 지불하려 해도 이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문제는 한계비용가격설정과 평균비용가격의 차이를 충당해야 하는가 또한 충당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된다.

정부의 대안은 ① 민간기업이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되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 ②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③ 공기업을 만들어 필요하면 보조금을 주는 방법, ④ 공기업을 만들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 등이다. 전력, 교통, 지방행정서비스 등은 주로 규제가 심하거나 공기업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수자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고정비용이 크고 한계비용이 작은 경우이다. 또한 한계비용가격설정과 평균비용가격 차이를 충당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이중가격제도(two-part tariff)가 한 가지 대안이 된다. 이 제도는 소비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를 사게 한 다음, 그것을 구입하는 양에 비례하여 추가적인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또 다른 대안은 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진 소비자에게만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가격을 부과하여 효과를 최소화하거나 또는 고정부담을 하는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사용에 대해 할인해 주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가격설정방식은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¹⁰⁾, 단계부과(block rate)¹¹⁾, 그리고 차등가격(differential pricing)¹²⁾ 등이다.

한편 정부는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자원은 회소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지 사용권이나 자원채굴

10) 가격차별은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대체수단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을 부과하는 것임. 다시 말해 재화나 용역의 대체수단을 가지지 못한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임. 특히 램지가격설정(Ramsey pricing)은 가격차별을 이용한 것으로 수요의 탄력성(가격의 변화에 다른 수요량의 변화의 비율)에 따라 가격을 부과하는 방법임. 쉽게 대체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수요탄력성이 낮은 사용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반대로 수요탄력성이 큰 사용자는 싼 가격을 지불하도록 함.

11) 단계부과방식은 최초 몇 단위에 고율로 부과하되 다음 단위부터 점차 부과율을 낮추어 가는 방식임. 최초 몇 단위의 고율부과로 고정비용을 충당하고, 다음의 낮은 부과율은 한계비용을 반영하게 됨. 이 방식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단위의 소비에 대해서 낮은 한계비용을 부담하도록 고정비용에 기여 또는 기부토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2) 차등가격방식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전기나 전화서비스와 같이 24시간 동안 수요가 변동하는 경우 최대부하기(最大負荷期, peak period)에 가격을 비싸게 하는 것임. 최대부하기에 초과용량이 줄어들어 비용체감산업과 같아지기 때문에 일종의 한계가격설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허가권 등에 대한 수수료를 결정할 때에는 생산비용을 충당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리·유지비용을 충당하거나 자원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적정수준의 자원이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가격의 설정은 경매(auction)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에서 유사한 재화가 공급되고 있다면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

나. 책임부담의 공정성

자원배분에 있어서 효율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기준은 공정성(equity)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배분하거나 할당하는 것, 심지어 시장기구의 가격에 따른 배분도 항상 잠재적으로 배제성(excludibility)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성의 문제는 누가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배제당하는가라는 점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담을 책정할 때에는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 배분되는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입법이나 행정절차와 같은 정치시스템에 의해 배분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사용재를 배분하는 데 가장 적당한 것이 시장의 가격기구이지만 공공재의 배분에는 정치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의무)교육이나 미성년자나 저소득층의 보호 등과 같은 가치재(價値財, merit goods)의 경우 정부는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재일지라도 그 배분에 직접 간여하게 된다.

만약 정부가 개인적인 혜택만 누릴 수 있는 비가치재(非價値財, nonmerit goods)에 대한 부담을 책정해야 한다면 그 재화와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담하지 않도록 혜택과 부담이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가치재의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거나 혜택보다 적은 비용부담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轉嫁)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가된 부담은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보조받지 못한 소비자 또는 일반적인 납세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비가치재의 경우에는 상호보조금(cross-subsidy)을 제거하는 것이 공평하면서도 효율성과 상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가치재의 경우 효율성과 공정성의 목표는 상충될 수 있다. 공정성의 사회적인 정의(定義, definition)는 특정 재화나 용역, 예를 들어 의료, 주택 등에 대해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무료로 가치재를 공급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비용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가치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목표가 저소득층에게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또는 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비용과 편익에 엄격히 근거하여 결정된 공공부담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공공부담을 차등화하거나 일반적인 조세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대안이 된다. 그러나 공공부담

을 많이 지는 계층이 적은 공공부담을 부담하는 계층을 보조하게 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다. 행정적인 절차 및 비용의 적절성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부담이 시장기구에서의 가격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지만 생산물의 성격과 공공정책의 목표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나 비용의 적절성(reasonableness)이 고려된다. 직접비용으로서의 징수비용(collection costs)과 간접비용으로서의 납부비용(compliance)을 최소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절차의 단순성과 투명성에서 확보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나 부담금 등과 같은 다양한 공공부담이 정부의 예산제도(budget system)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공부담은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정부·공공부문의 세입(歲入)이 되며, 이를 재원으로 정부는 세출(歲出)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세입·세출이라는 측면에서 공공부담은 생산물의 성격과 공공정책의 목표에 따라 ①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조세(租稅)처럼 세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고 징수되는 공공부담, ② 소위 목적세(目的稅, ear-marked tax)와 같이 세입과 세출(歲出)이 특정 목적을 위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공공부담, 그리고 ③ 기금(基金, fund)과 같이 정부나 공공부문이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가격과 유사하게 부담금, 수수료 등을 책정하여 징수하는 공공부담 등으로 적절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기업의 준조세 부담현황

—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I. 서론

준조세는 국가 공공단체의 활동비 및 공익적 사회비용, 성금 등 국가나 지방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를 정상적인 조세 납부 외의 형태로 부담하는 제비용을 말하며 순수한 생산, 판매비용 외에 지출되는 접대비 등도 포함하고 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활동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순수한 생산비용, 판매비용과 조세를 제외시킨 비필수적인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업의 준조세부담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준조세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하여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의 기부금, 조세공과, 그리고 접대비의 50%와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조세공과를 포함한 제비용으로 정의하였다. 조세공과를 모두 준조세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세금과 공과금의 구분이 없고 조세공과금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준조세의 개념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나타내는 동태적 재무보고서이며, 회계정보이용자로 하여금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손익계산서상의 세금과공과의 구성항목에서 세금은 법인세를 제외한 영업과 관련된 사업소득,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 제조원가와 고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제세금이 제외된 것이며 공과란 상공회의소부과금, 연합회부과금, 조합각출금, 회비 등과 같이 영업에 관계가 있는 공공적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접대비는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으로 사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기타영업외비용은 이상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에 영업외비용으로서 매출할인, 재고자산평가손실, 기부금, 잡손실 등의 합계액을 기재한다(대우경제연구소 상장회사 재무데이터는 이들 항목을 분류하고 있다). 제조원가명세서는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로서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원가의 계산명세를 나타내며 당기총제조비용과 기초제공품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재공품원가를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된다. 구성항목중 세금과공과는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 연간 데이터로 분석(98년 상반기는 반기 데이터로 분석)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상장기업의 준조세 부담 현황과 상장기업의 법인세 및 항목별 준조세 부담 현황, 제조업 업종별 준조세 부담 현황, 30대그룹의 준조세 현황, 준조세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준조세와 연구개발비를 비교할 것이다. 또한 위의 모든 경우에 대해 법인세를 포함하는 경우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료를 준조세로 분류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도 분석할 것이다.

II. 상장기업의 준조세 부담 현황

상장기업을 대상(총 598사, 금융업 제외)으로 분석한 1994년 준조세는 약 2조 480 억원으로 전년보다 27.6%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률도 0.77%에서 0.8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상이익대비 준조세 부담률은 31.2%에서 25.1%로 하락하였다. 제조업의 준조세 지출이 두드러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준조세 지출이 증가하였지만, 특히 대기업은 66.4%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1> 상장기업의 94년 준조세 현황

(단위 : 억원, %)

	회사수	준조세		매출액대비 준조세(%)		경상이익대비 준조세(%)		
		금액	증가율	93	94	93	94	
비금융	598	20,480	27.6	0.77	0.83	31.2	25.1	
제조	473	13,710	45.2	0.81	0.98	33.4	25.6	
	대기업	49	9,162	66.4	0.79	1.07	35.7	25.1
	중소기업	424	4,549	15.5	0.84	0.83	30.6	26.6
	비제조	125	6,770	2.5	0.72	0.63	28.5	24.2

주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은 자본금 750억 기준임

<표 2> 94년 상장기업의 항목별 준조세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

	준조세(A=	기부금	공과금	접대비50%	법인세	총부담	
	B+C+D) 비중	(B) 비중	(C) 비중	(D) 비중	(E) 비중	(A+E) 비중	
비금융	20,480 0.83	9,529 0.39	9,316 0.38	1,635 0.07	23,848 0.97	44,329 1.79	
제조	13,710 0.98	7,554 0.54	4,965 0.35	1,192 0.09	14,414 1.03	28,125 2.01	
	대기업	9,162 1.07	6,212 0.73	2,545 0.30	405 0.05	7,406 0.87	16,567 1.94
	중소기업	4,549 0.83	1,342 0.25	2,419 0.44	787 0.14	7,009 1.29	11,557 2.12
	비제조	6,770 0.63	1,976 0.18	4,352 0.41	442 0.04	9,434 0.88	16,204 1.51

주 : 괄호안은 매출액 대비 비중임, 총부담은 준조세와 법인세의 합임

준조세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부금, 공과금, 접대비 순으로 비중이 높고 기부금의 비중은 매출액 대비 0.3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의 준조세부담률(매출액대비 준조세)이 높으며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부담률이 높다. 그러나 법인세를 포함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률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5년 준조세는 약 2조 3,859억원으로 전년보다 16.56% 증가하였으나,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률은 0.83%에서 0.76%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경상이익대비 준조세

부담율도 25.1%에서 19.6%로 하락하였다. 비제조업의 준조세 지출 증가율이 두드러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준조세 지출이 증가하였지만, 특히 대기업은 21.9%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3> 상장기업의 95년 준조세 현황

(단위 : 억원, %)

	회사수	준조세		매출액대비 준조세(%)		경상이익대비 준조세(%)		
		금액	증가율	94	95	94	95	
비금융	596	23,859	16.5	0.83	0.76	25.1	19.6	
제조	472	15,857	15.7	0.98	0.90	25.6	16.9	
	대기업	49	11,165	21.9	1.07	1.00	25.1	14.5
	중소기업	423	4,692	3.2	0.83	0.74	26.6	28.2
	비제조	124	8,001	18.2	0.63	0.58	24.2	28.8

<표 4> 95년 상장기업의 항목별 준조세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

	준조세(A=B+C+D)		기부금(B)		공과금(C)		접대비50%(D)		법인세(E)		총부담(A+E)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금융	23,859	0.76	11,351	0.36	10,560	0.34	1,947	0.06	30,421	0.97	54,280	1.73	
제조	15,857	0.90	8,636	0.49	5,776	0.33	1,446	0.08	21,165	1.21	37,023	2.11	
	대기업	11,165	1.00	7,632	0.68	3,031	0.27	502	0.04	14,652	1.31	25,817	2.31
	중소기업	4,692	0.74	1,004	0.16	2,745	0.43	944	0.15	6,514	1.02	11,206	1.76
	비제조	8,001	0.58	2,715	0.20	4,785	0.35	501	0.04	9,255	0.67	17,257	1.25

주 : 괄호안은 매출액 대비 비중임, 총부담은 준조세와 법인세의 합임

준조세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부금, 공과금, 접대비 순으로 비중이 높고 공과금의 비중은 매출액 대비 0.3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의 준조세부담률(매출액대비 준조세)이 높으며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부담률이 높다. 그러나 법인세를 포함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률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6년 준조세는 약 1조 9,683억원으로 전년보다 17.50%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률은 0.76%에서 0.54%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경상이익대비 준조세 부담률은 19.6%에서 42.1%로 대폭 증가하였다. 비제조업의 준조세 지출 감소율이 두드러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준조세 지출이 감소하였지만, 특히 대기업은 34.8%의 감소율을 보였다.

준조세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과금, 기부금, 접대비 순으로 비중이 높고 공과금의 비중은 매출액 대비 0.2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의 준

조세부담률(매출액대비 준조세)이 높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부담률이 높다. 그러나 법인세를 포함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률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 상장기업의 96년 준조세 현황

(단위 : 억원, %)

	회사수	준조세		매출액대비 준조세(%)		경상이익대비 준조세(%)		
		금액	증가율	95	96	95	96	
비금융	596	19,683	-17.5	0.76	0.54	19.6	42.1	
제조	472	11,883	-25.1	0.90	0.61	16.9	39.9	
	대기업	49	7,284	-34.8	1.00	0.59	14.5	37.2
	중소기업	423	4,600	-2.0	0.74	0.65	28.2	45.2
비제조	124	7,800	-2.5	0.58	0.46	28.8	45.9	

<표 6> 96년 상장기업의 항목별 준조세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

	준조세(A+B+C+D)		기부금(B)		공과금(C)		접대비50%(D)		법인세(E)		총부담(A+E)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비금융	19,683	0.54	7,734	0.21	10,007	0.27	1,942	0.05	18,763	0.51	38,446	1.05	
제조	11,883	0.61	5,500	0.28	4,979	0.26	1,404	0.07	10,790	0.56	22,673	1.17	
	대기업	7,284	0.59	4,487	0.36	2,353	0.19	443	0.04	4,962	0.40	12,245	0.90
	중소기업	4,600	0.65	1,012	0.14	2,626	0.37	961	0.14	5,828	0.82	10,428	1.47
비제조	7,800	0.46	2,234	0.13	5,028	0.29	538	0.03	7,974	0.47	15,773	0.92	

주 : 괄호안은 매출액 대비 비중임, 총부담은 준조세와 법인세의 합임

1997년 준조세는 약 1조 8,556억원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률은 0.54%에서 0.44%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97년 준조세 금액은 경상이익 적자규모 1조 2천억원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준조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경상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게 된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준조세 지출이 감소하였지만, 경상이익 적자규모보다 준조세 금액이 커 만약 준조세 지출이 줄어든다면 이익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준조세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과금, 기부금, 접대비 순으로 비중이 높고 공과금의 비중은 매출액 대비 0.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의 준조세부담률(매출액대비 준조세)이 높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부담률이 높다. 그러나 법인세를 포함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률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상장기업의 97년 준조세 현황

(단위 : 억원, %)

	회사수	준조세		매출액대비 준조세(%)		경상이익대비 준조세(%)		
		금액	증가율	96	97	96	97	
비금융	596	18,556	-5.7	0.54	0.44	42.1	후전	
제조	472	10,697	-10.0	0.61	0.49	39.9	적축	
	대기업	49	6,284	-13.7	0.59	0.45	37.2	후전
	중소기업	423	4,414	-4.0	0.65	0.56	45.2	적축
비제조	124	7,859	0.8	0.46	0.38	45.9	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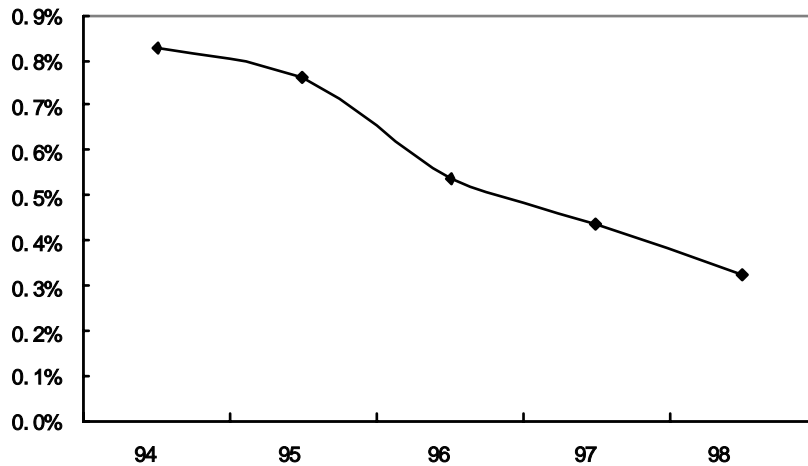
<표 8> 97년 상장기업의 항목별 준조세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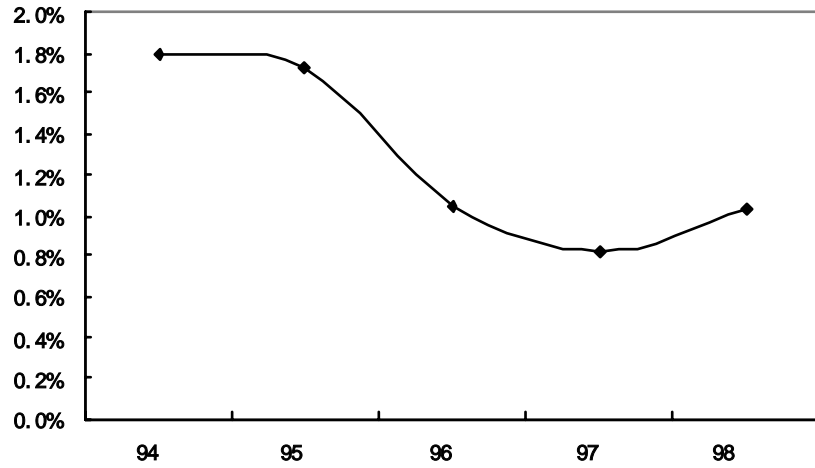
	준조세(A+B)		기부금		공과금		접대비50%		법인세		총부담		
	+C+D	비중	(B)	비중	(C)	비중	(D)	비중	(E)	비중	(A+E)	비중	
비금융	18,556	0.44	6,028	0.14	10,611	0.25	1,917	0.05	16,091	0.38	34,647	0.82	
제조	10,697	0.49	4,113	0.19	5,197	0.24	1,387	0.06	9,863	0.45	20,560	0.94	
	대기업	6,284	0.45	3,293	0.24	2,534	0.18	456	0.03	4,125	0.30	10,408	0.75
	중소기업	4,414	0.56	820	0.10	2,663	0.34	931	0.12	5,738	0.72	10,152	1.28
비제조	7,859	0.38	1,915	0.09	5,413	0.26	530	0.03	6,228	0.30	14,087	0.69	

주 : 괄호안은 매출액 대비 비중임, 총부담은 준조세와 법인세의 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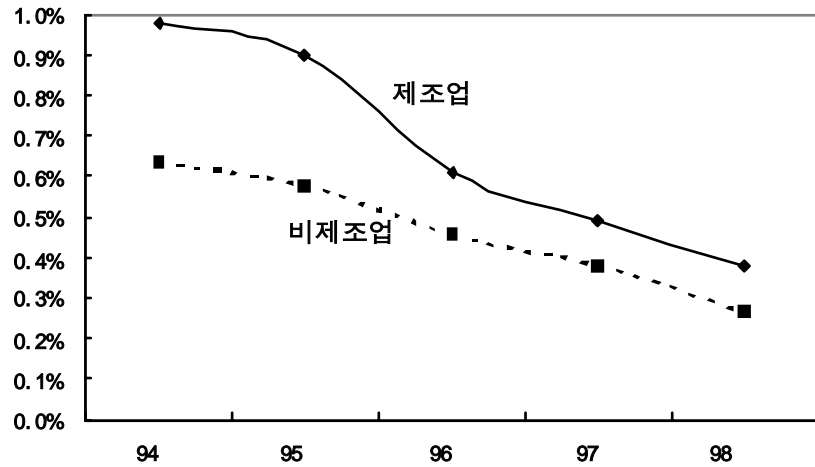
<그림> 상장기업 매출액대비 준조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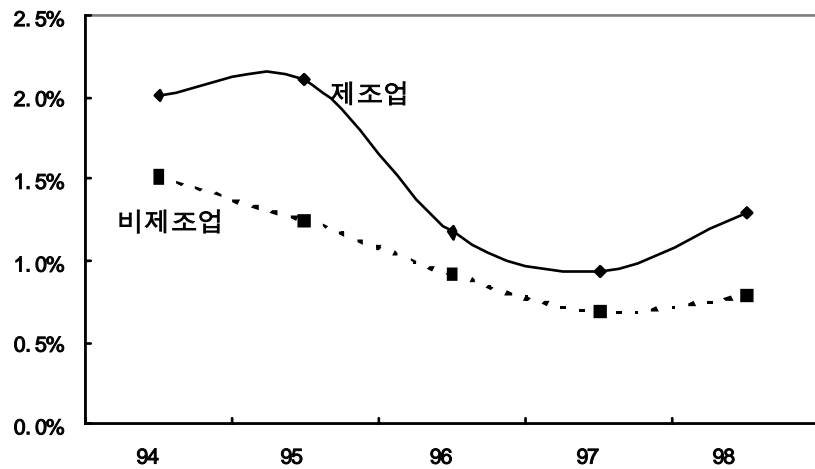
<그림> 상장기업 매출액대비 (준조세+법인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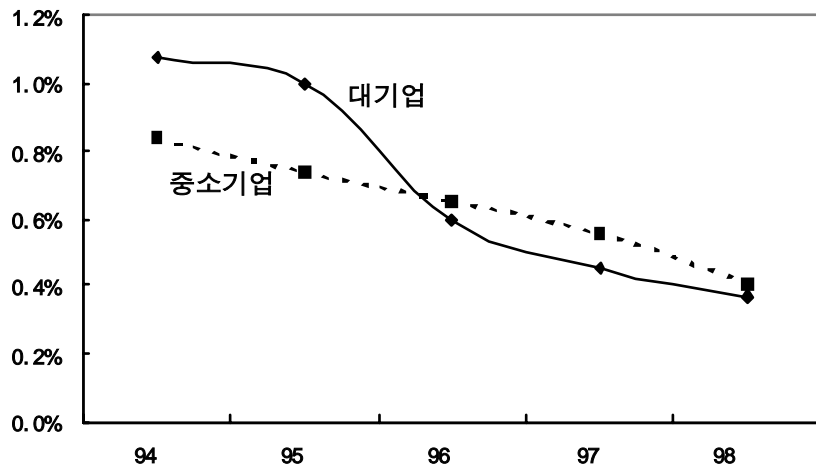
<그림> 제조업, 비제조업의 매출액대비 준조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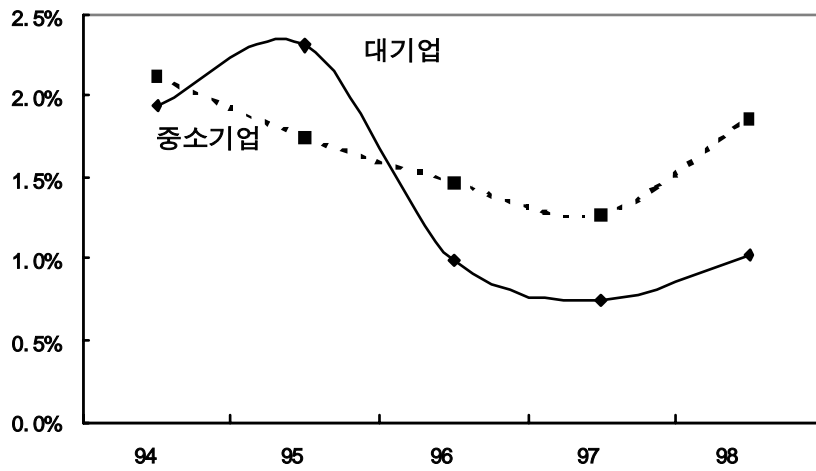
<그림> 제조업, 비제조업의 매출액대비 (준조세+법인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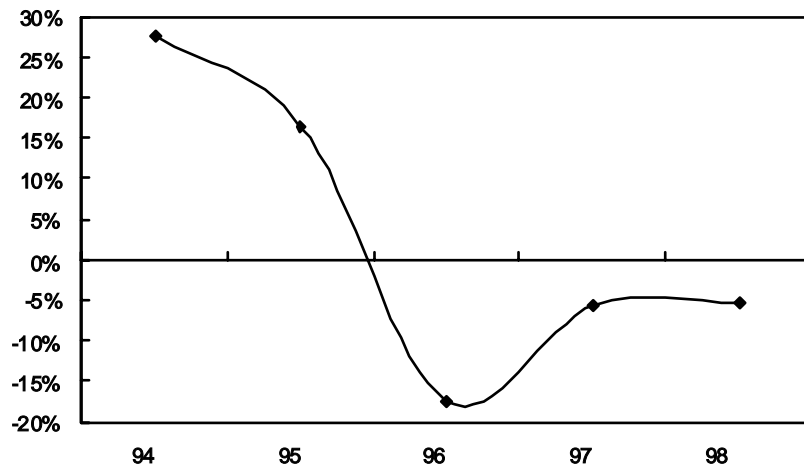
<그림> 대기업,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준조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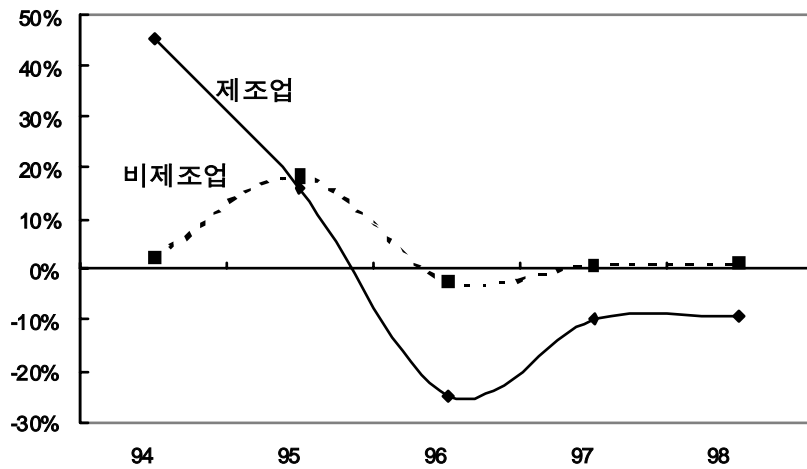
<그림> 대기업,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준조세+법인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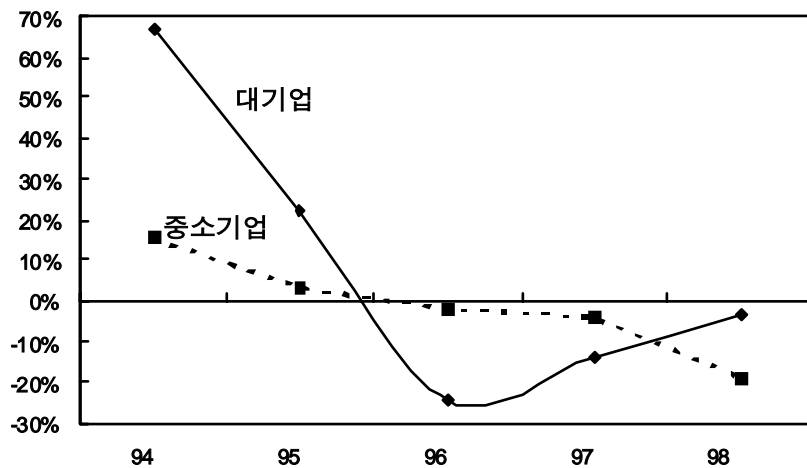
<그림> 상장기업 준조세 증가율 추이



<그림> 제조업, 비제조업의 준조세 증가율 추이



<그림> 대기업, 중소기업의 준조세 증가율 추이



위의 그림들은 지금까지의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상장기업의 매출액 대비 준조세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둘째, 상장기업의 매출액 대비 실질적부담(준조세+법인세)은 97년까지 줄어들다가 98년 상반기에 높아졌다. 셋째,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준조세 및 실질적 부담이 높다. 넷째, 95년까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준조세 및 실질적 부담이 높았으나, 96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었다. 다섯째, 준조세 증가율은 96년까지 급격히 낮아졌으나, 96년 이후 감소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매출액 증가율이 준조세 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96년까지는 대기업의 매출증가율이 중소기업의 매출증가율보다 높거나, 대기업의 준조세 증가율이 중소기업의 준조세 증가율보다 낮아서 발생한 결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석은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준조세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분석한 것이다. 사회보험은 정부의 공권력에 강제성을 이용하여 개인과 기업의 기여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사회보장이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가 실시 중이다. 국민연금은 부담금(사용자) 3%, 기여금(가입자) 3%, 그리고 퇴직금전환금 3%로 재원을 조성하였으나, 99년 4월부터는 부담금(사용자) 4.5%, 기여금(가입자) 4.5%로 재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은 3%이나, 사용자가 그의 반인 1.5%를 부담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98년 12월 31일까지는 실업급여는 근로자 사업주 각각 0.3%, 고용안정사업은 사업주 0.2%,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0.1~0.5%를 부담하였다. 그러나 99년 1월 1일부터는 실업급여는 근로자, 사업주 각각 0.5%, 고용안정사업은 사업주 0.3%,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0.1~0.7%를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가 0.5%를 부담한다.

<표 9> 사회보험료를 준조세에 포함하는 경우

(단위 : 억원)

	94	95	96	97
매출액	2,485,677	3,155,603	3,673,050	4,265,061
인건비/매출액	11.3	10.9	11.3	10.7
인건비(A)	280,882	343,961	415,055	456,362
적용율(B)	0.084	0.084	0.084	0.084
C = A*B	23,594	28,893	34,865	38,334
D=준조세(기존)	20,480	23,859	19,683	18,556
C+D	44,074	52,751	54,548	56,891

주 : C+D는 사회보험료를 준조세에 포함할 경우임

사회보험료를 준조세의 개념에 포함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보험료율의 인상에 따라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Ⅲ. 준조세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

94~97년까지 상장기업이 준조세로 지출한 금액은 8조 2,578억원으로 동 기간동안 창출한 경상이익 23조 7,066억원의 35%에 해당한다. 따라서 만약 준조세로 지출이 없었다면 경상이익이 35%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기업이 준조세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매년 20% 이상의 경상이익 증가를 볼 수 있었고 특히 경상이익 적자가 발생한 97년은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표 10> 준조세 및 경상이익 추이

(단위 : 억원)

		94	95	96	97	합계
상장 기업	준조세(A)	20,480	23,859	19,683	18,556	82,578
	경상이익(B)	81,564	121,458	46,749	-12,705	237,066
	경상이익대비 준 조세(A/B)	25%	20%	42%	흑전	35%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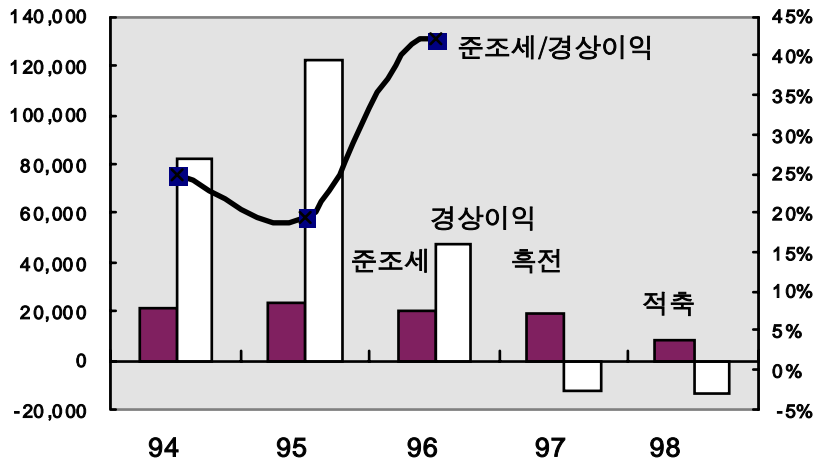
<표 11> 상장기업의 준조세와 경상이익 추이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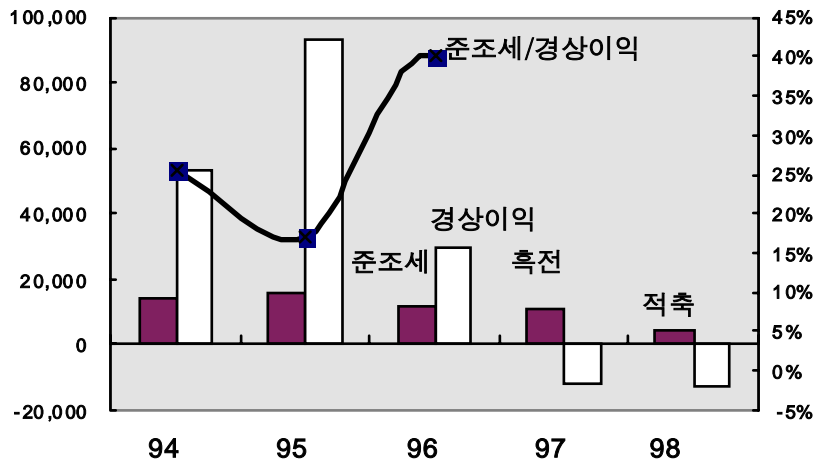
구분		94	95	96	97	합계
비금융	준조세(A)	20,480	23,859	19,683	18,556	82,578
	경상이익(B)	81,564	121,458	46,749	-12,705	237,066
	A/B	25%	20%	42%	흑전	35%
제조업	준조세(A)	13,710	15,857	11,883	10,697	52,147
	경상이익(B)	53,616	93,653	29,772	-12,047	164,944
	A/B	26%	17%	40%	적축	32%
대기업	준조세(A)	9,162	11,165	7,284	6,284	33,895
	경상이익(B)	36,486	77,035	19,598	-2,980	130,139
	A/B	25%	14%	37%	흑전	26%
중소기업	준조세(A)	4,549	4,692	4,600	4,414	18,255
	경상이익(B)	17,131	16,618	10,174	-9,066	34,857
	A/B	27%	28%	45%	적축	52%
비제조업	준조세(A)	6,770	8,001	7,800	7,859	30,430
	경상이익(B)	27,947	27,805	16,977	-659	72,070
	A/B	24%	29%	46%	흑전	42%

제조업, 대기업은 상장기업의 4년간 평균 준조세/경상이익 비율 35%보다 낮으나, 중소기업, 비제조업은 각각 52%, 42%로 준조세/경상이익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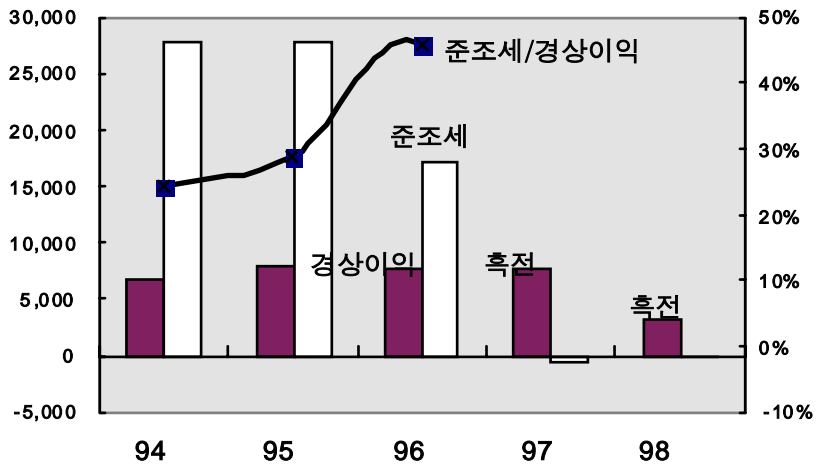
<그림> 상장기업의 준조세 및 경상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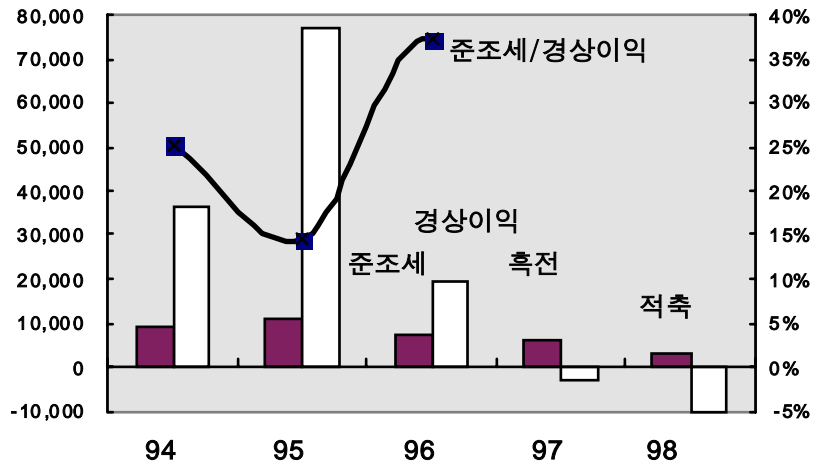
<그림> 제조업의 준조세 및 경상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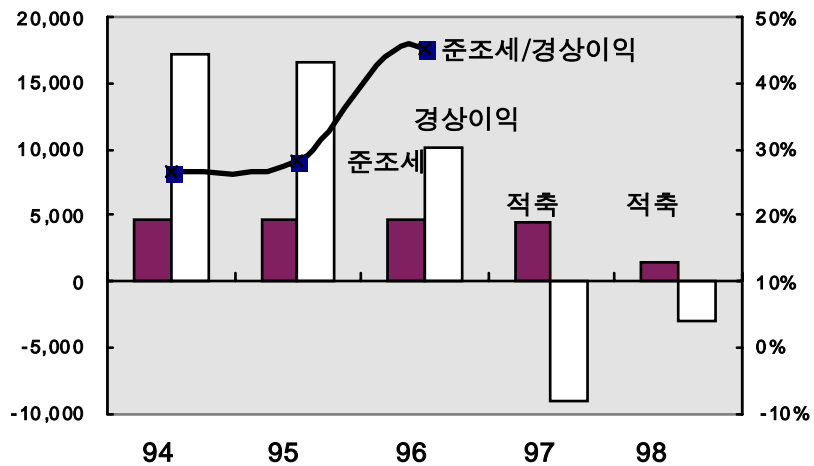
<그림> 비제조업의 준조세 및 경상이익 추이



<그림> 대기기업의 준조세 및 경상이익 추이



<그림> 중소기업의 준조세 및 경상이익 추이



위의 분석에 사회보험료를 준조세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경우 94~97년까지 상장기업이 준조세로 지출한 금액은 20조 8,264억원으로 동 기간동안 창출한 경상이익 23조 7,066억원의 약 88%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장기업이 동 금액을 준조세로 지출하지 않았더라면 경상이익이 88%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경상이익 적자가 발생한 97년 중 큰 폭의 경상이익 흑자를 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표 12> 참조).

<표 12> 준조세 및 경상이익 추이

(단위 : 억원)

		94	95	96	97	합계
상장 기업	준조세(A)	20,480	23,859	19,683	18,556	82,578
	준조세(B)	44,074	52,751	54,548	56,891	208,264
	경상이익(C)	81,564	121,458	46,749	-12,705	237,066
	경상이익대비 준조세(A/C)	25%	20%	42%	흑전	35%
	경상이익대비 준조세(B/C)	54%	43%	116%	흑전	88%

IV. 준조세와 연구개발비

97년 상장기업 1사당 연구개발비는 74억원이고 준조세는 31억원으로 연구개발비의 41% 수준이다. 94년부터 97년까지의 준조세/연구개발비 비율을 살펴보면, 연구개발비의 49%를 준조세로 지출하였으며, 준조세가 경감되고 이를 연구개발비로 지출한다면,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3> 상장기업 1사당 준조세 및 연구개발비

(단위 : 억원, %)

	94	95	96	97	합계
준조세	33(0.79)	38(0.76)	30(0.55)	31(0.44)	132
연구개발비	51(1.32)	71(1.44)	73(1.27)	74(0.19)	269
준조세/연구개발비	62%	53%	43%	41%	49%

주 : 괄호안은 매출액대비 비중임

<표 14> 상장기업 준조세 및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94	95	96	97	합계
비금융	준조세(A)	20,480	23,859	19,683	18,556	82,578
	연구개발비(B)	33,179	45,788	46,302	43,979	169,248
	A/B	62%	52%	43%	42%	49%
제조업	준조세(A)	13,710	15,857	11,883	10,697	52,147
	연구개발비(B)	29,624	40,947	41,920	37,766	150,257
	A/B	46%	39%	28%	28%	35%
대기업	준조세(A)	9,162	11,165	7,284	6,284	33,895
	연구개발비(B)	24,862	35,243	35,191	32,585	127,881
	A/B	37%	32%	21%	19%	26%
중소기업	준조세(A)	4,549	4,692	4,600	4,414	18,255
	연구개발비(B)	4,762	5,704	6,729	5,181	22,376
	A/B	96%	82%	68%	85%	81%
비제조업	준조세(A)	6,770	8,001	7,800	7,859	30,430
	연구개발비(B)	3,555	4,841	4,381	6,213	18,990
	A/B	190%	165%	178%	127%	160%

아래에서는 업종별, 그룹별로 준조세 및 연구개발비를 살펴보았다. 업종별로는 전자, 자동차 및 부품의 연구개발비가 많아 준조세/연구개발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룹별로는 5대그룹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가 많아 상대적으로 준조세/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 업종별 준조세 및 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억원, %)

		94	95	96	97	98
	(A)	3,399	5,938	3,059	3,260	884
	(B)	14,710	22,806	19,672	19,550	4,021
	A/B	23%	26%	16%	17%	22%
	(A)	2,604	2,965	2,829	2,524	1,069
	(B)	1,326	1,658	1,520	1,240	502
	A/B	196%	179%	186%	204%	213%
,가	(A)	1,115	1,167	1,435	1,879	809
	(B)	1,511	1,995	1,255	2,830	1,137
	A/B	74%	58%	114%	66%	71%
	(A)	1,441	1,488	1,565	1,462	527
	(B)	2,017	2,338	2,774	2,414	640
	A/B	71%	64%	56%	61%	82%
	(A)	1,189	1,409	1,510	1,173	365
	(B)	218	463	336	820	297
	A/B	545%	304%	449%	143%	123%
1	(A)	3,102	2,481	2,104	965	1,171
	(B)	1,242	2,063	2,150	1,387	566
	A/B	250%	120%	98%	70%	207%
	(A)	907	910	867	935	254
	(B)	409	319	527	491	.
	A/B	222%	286%	165%	191%	n/a
	(A)	981	901	835	762	258
	(B)	922	1,089	1,215	607	232
	A/B	106%	83%	69%	126%	112%
	(A)	442	577	459	604	188
	(B)	809	1,164	3,199	1,887	257
	A/B	55%	50%	14%	32%	73%
	(A)	1,335	1,225	955	597	204
	(B)	5,974	6,903	7,686	7,226	1,478
	A/B	22%	18%	12%	8%	14%
	(A)	305	634	519	496	220
	(B)	295	543	968	1,075	354
	A/B	103%	117%	54%	46%	62%
	(A)	576	611	480	477	183
	(B)	375	381	457	362	54
	A/B	154%	160%	105%	132%	343%
	(A)	300	343	353	467	111
	(B)	43	51	38	41	7
	A/B	692%	673%	923%	1149%	1648%
	(A)	346	389	407	441	159
	(B)	4	8	8	16	0
	A/B	9321%	4790%	4901%	2725%	49675%
	(A)	200	249	298	315	83
	(B)	393	699	815	1,061	164
	A/B	51%	36%	37%	30%	51%

(계속)

	(A)	280	271	225	295	129
	(B)	454	266	186	415	204
	A/B	62%	102%	121%	71%	63%
	(A)	382	458	159	287	151
	(B)	74	32	46	128	
	A/B	517%	1420%	348%	225%	n/a
	(A)	192	264	263	253	88
	(B)	1	0	0	1	0
	A/B	16552%	114800%	87693%	22565%	43890%
	(A)	246	265	219	215	90
	(B)	408	374	427	440	98
	A/B	60%	71%	51%	49%	92%
	(A)	162	170	159	199	42
	(B)	66	149	111	96	51
	A/B	245%	114%	143%	207%	84%
	(A)	259	281	135	172	58
	(B)	1,340	1,697	1,763	1,276	
	A/B	19%	17%	8%	13%	n/a
	(A)	207	228	158	134	53
	(B)	5	11	26	-4	
	A/B	4293%	1989%	615%	-3425%	n/a
	(A)	87	156	184	119	41
	(B)	14	19	19	22	3
	A/B	598%	817%	988%	532%	1185%
	(A)	49	55	76	103	46
	(B)	29	56	104	37	14
	A/B	165%	97%	73%	278%	335%
	(A)	64	72	85	75	23
	(B)	286	416	609	236	
	A/B	22%	17%	14%	32%	n/a
가 ,	(A)	75	82	57	53	22
	(B)	17	20	22	63	47
	A/B	447%	404%	265%	84%	46%
	(A)	38	44	50	52	19
	(B)	2	4	4	4	0
	A/B	2280%	1230%	1138%	1422%	17664%
	(A)	41	56	58	46	15
	(B)	7	26	46	59	1
	A/B	560%	213%	127%	78%	1281%
	(A)	45	46	44	40	19
	(B)	106	88	122		
	A/B	43%	52%	36%	n/a	n/a
	(A)	15	15	19	34	3
	(B)	0	0	0	2	
	A/B	3384%	#DIV/0!	#DIV/0!	1456%	n/a

(계속)

	(A)	19	23	29	33	10
	(B)	60	87	117	144	65
	A/B	31%	26%	25%	23%	15%
	(A)	22	25	25	24	8
	(B)	3	3	3	2	
	A/B	882%	1002%	863%	1260%	n/a
	(A)	24	28	23	22	7
	(B)	0	0	66		
	A/B	15780%	39729%	35%	n/a	n/a
	(A)	12	12	15	20	7
	(B)	12	39	0	40	
	A/B	96%	31%	51633%	49%	n/a
	(A)	11	14	13	14	10
	(B)	1	2	2	1	1
	A/B	914%	814%	747%	1269%	991%
	(A)	6	6	4	5	3
	(B)	3	2			
	A/B	232%	316%	n/a	n/a	n/a
	(A)	2	2	4	3	1
	(B)	41	17	10	24	3
	A/B	4%	13%	39%	10%	24%
	(A)	2	1	1	2	0
	(B)					
	A/B	n/a	n/a	n/a	n/a	n/a

<표 16> 그룹별 준조세 및 연구개발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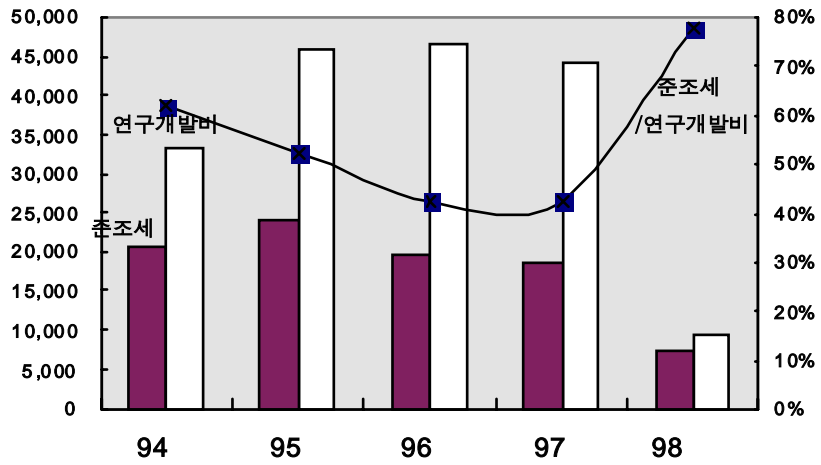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94	95	96	97	98
	(A)	2,279	4,075	2,445	2,731	643
	(B)	11,079	14,982	10,478	9,861	
	A/B	21%	27%	23%	28%	n/a
	(A)	1,561	2,052	1,548	1,244	615
	(B)	917	3,666	5,516	9,379	4,103
	A/B	170%	56%	28%	13%	15%
	(A)	1,480	2,105	1,096	1,241	317
	(B)	5,389	8,097	8,329	6,779	1,128
	A/B	27%	26%	13%	18%	28%
	(A)	1,250	1,537	1,329	1,216	394
	(B)	3,431	4,491	6,635	4,625	1,400
	A/B	36%	34%	20%	26%	28%
S K	(A)	689	1,116	851	752	348
	(B)	889	828	1,042	1,374	525
	A/B	77%	135%	82%	55%	66%
	(A)	604	688	978	717	281
	(B)	158	218	271	76	21
	A/B	383%	316%	361%	946%	1340%
	(A)	732	793	390	512	259
	(B)	250	193	87	204	36
	A/B	292%	412%	449%	250%	727%
	(A)	277	349	443	335	122
	(B)	180	247	676	498	164
	A/B	154%	141%	66%	67%	75%
	(A)	162	373	367	266	183
	(B)	195	133	318	357	127
	A/B	83%	281%	115%	74%	144%
	(A)	227	204	181	264	69
	(B)	210	116	245	34	0
	A/B	108%	175%	74%	775%	137780%
	(A)	170	202	164	239	69
	(B)	246	242	248	133	45
	A/B	69%	84%	66%	179%	153%
	(A)	344	280	225	226	74
	(B)	211	240	373	212	46
	A/B	163%	117%	60%	107%	161%
	(A)	191	186	141	171	52
	(B)	101	100	71	76	37
	A/B	190%	185%	200%	225%	139%
	(A)	97	109	121	121	59
	(B)	5	2	1	3	1
	A/B	1954%	5856%	9908%	4665%	7435%
	(A)	95	136	157	118	48
	(B)	538	594	585	109	11
	A/B	18%	23%	27%	108%	4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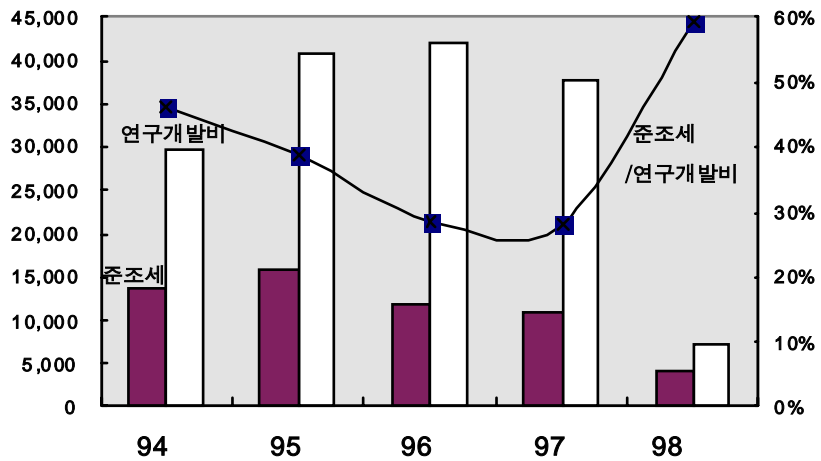
(계속)

	(A)	116	131	88	117	49
	(B)	26	38	65	74	11
	A/B	44%	34%	13%	15%	44%
	(A)	115	110	103	109	28
	(B)	49	76	71	114	8
	A/B	23%	14%	14%	9%	33%
	(A)	104	123	165	107	170
	(B)	100	127	136	145	133
	A/B	10%	9%	12%	7%	12%
	(A)	53	64	73	102	.
	(B)	82	117	116	81	.
	A/B	6%	5%	6%	12%	n/a
	(A)	69	78	88	92	12
	(B)	123	135	114	130	40
	A/B	5%	5%	7%	7%	3%
	(A)	74	105	79	73	3
	(B)	12	16	20	7	-2
	A/B	63%	64%	39%	10%	-14%
	(A)	59	71	75	65	14
	(B)	160	247	310	121	122
	A/B	3%	2%	2%	5%	1%
	(A)	29	39	43	59	20
	(B)	48	152	146	120	27
	A/B	6%	2%	2%	4%	7%
	(A)	43	46	51	44	40
	(B)	57	79	55	88	16
	A/B	7%	5%	9%	5%	25%
	(A)	65	64	48	44	18
	(B)	22	34	31	49	5
	A/B	2%	1%	1%	9%	3%
	(A)	27	55	53	31	11
	(B)	26	44	56	28	0
	A/B	1%	1%	9%	1%	-3%
	(A)	19	28	28	30	4
	(B)	13	12	8	3	1
	A/B	1%	2%	3%	1%	6%
	(A)	33	30	33	30	.
	(B)	61	93	82	28	.
	A/B	5%	3%	4%	1%	n/a
	(A)	75	41	37	29	30
	(B)	15	19	22	188	10
	A/B	4%	2%	1%	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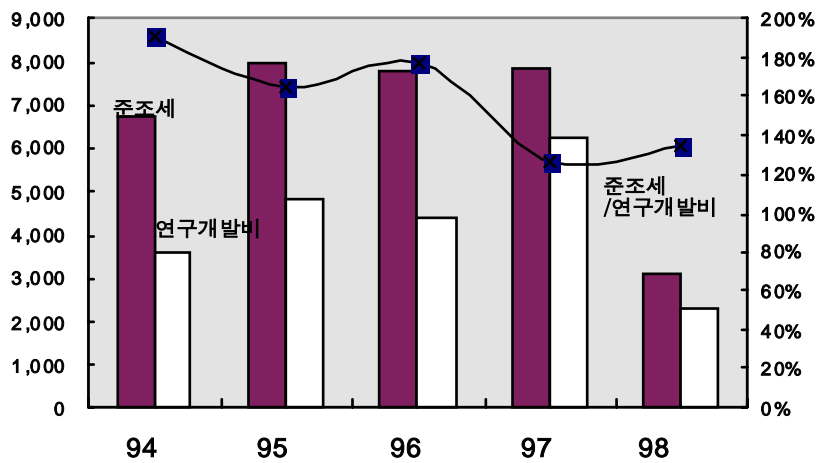
<그림> 상장기업의 준조세 및 연구개발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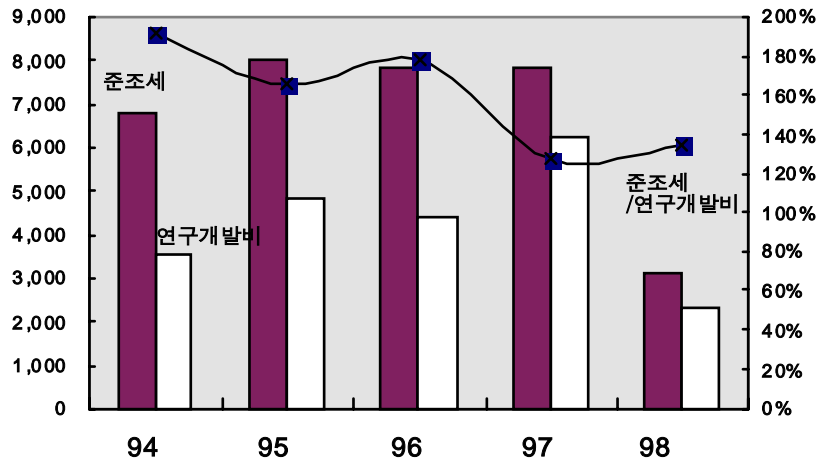
<그림> 제조업의 준조세 및 연구개발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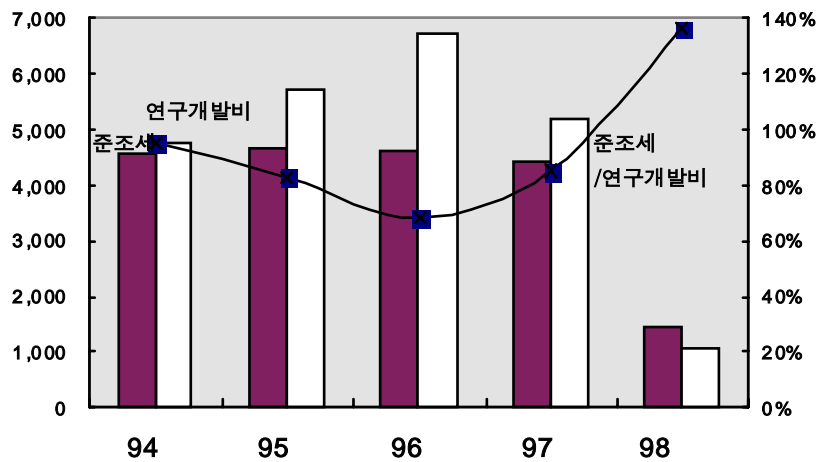
<그림> 비제조업의 준조세 및 연구개발비 추이



<그림> 대기업의 준조세 및 연구개발비 추이



<그림> 중소기업의 준조세 및 연구개발비의 추이



위의 분석에 사회보험료를 준조세에 포함시키는 경우 97년 상장기업 1사당 연구개발비는 31억원이고 준조세는 95억원으로 연구개발비보다 큼(연구개발비의 134%)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지불한다면, 기업은 연구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시사점

97년 상장기업의 매출액 대비 준조세 비중은 0.44%로 96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준조세 지출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경상이익 적자 수준보다 준조세 지출액이 초과하여 경상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게 된다(97년은 연이은 대기업 부도 및 IMF의 긴급자금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단절을 보였다. 즉 97년중 우리나라 제조업은 금융기관 차입증가와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부채의 원화환산가액 증가 등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등 96년에 비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 한편 기업의 노력으로 인건비 및 경비부담이 완화되어 영업이익은 다소 늘어났으나, 대규모 환차손 발생과 금융비용 증가로 경상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수익성도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사회보험료를 준조세에 포함시킨다면, 97년 상장기업의 매출액 대비 준조세 비중은 약 88%로 급증하게 된다. 준조세와 연구개발비를 비교하면, 지난 4년간 평균 준조세 대비 연구개발비는 49%에 달해 준조세를 경감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투자할 시 상당한 연구개발비의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준조세 경감을 통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특히 기술 및 합리화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보다 원활한 기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준조세에 사회보험료를 포함하게 된다면 97년에 연구개발비의 134%를 준조세로 지출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불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준조세 중 범국민적 공공성을 띤 성금 등은 정부 재정부담으로 전환시키고 기타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준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준조세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부록 1> 업종별 준조세 현황

<표 1> 업종별 94년 준조세 부담 현황

			가	93	94	93	94
,가	57	3,399	141.6	0.61	1.12	15.8	13.3
	45	2,604	- 11.7	1.67	1.35	65.9	54.5
	8	1,115	27.7	1.07	1.15	6.7	7.4
	83	1,441	1.5	1.27	1.11	46.2	29.0
	32	1,189	11.8	0.21	0.20	60.8	79.5
1	37	3,102	28.2	1.57	1.81	37.7	45.0
	41	907	33.7	0.77	0.92	48.1	48.3
	44	981	33.8	0.83	0.91	1,195.1	40.0
	25	442	61.5	0.87	1.02	68.8	34.0
	31	1,335	91.2	0.42	0.63		72.9
	2	305	- 46.2	7.51	2.70	37.1	11.6
	26	576	24.4	1.01	1.17	23.5	33.2
	9	300	48.2	0.71	0.86	32.4	35.2
	8	346	15.9	2.62	2.68	95.6	90.6
	19	200	- 1.5	0.70	0.55	20.7	22.6
,	6	280	33.1	0.23	0.28	12.0	12.5
	1	382	46.4	0.97	1.25	103.1	38.8
	3	192	45.7	0.32	0.38	64.3	53.4
	16	246	21.7	0.78	0.88	32.8	530.9
	22	162	19.5	0.68	0.68		41.8
	5	259	- 1.2	0.89	0.73	20.2	21.4
	4	207	115.9	0.36	0.63	11.1	16.8
	14	87	29.3	0.60	0.61	10.1	11.5
	3	49	- 45.7	1.75	0.64	53.8	19.4
	9	64	21.8	0.58	0.50	15.4	9.8
가 ,	8	75	22.2	0.58	0.66	38.7	
	3	38	- 16.9	0.96	0.78	21.8	39.2
	11	41	6.3	0.80	0.75	22.3	18
	8	45	2.9	0.52	0.49		58.5
	2	15	- 5.2	2.00	1.79	58.2	
,	6	19	21.8	0.93	0.84	13.0	8.3
	1	22	31.1	1.00	1.10	23.0	25.8
	3	24	33.2	0.64	0.76		
	2	12	- 4.4	0.94	0.66	11.9	11.5
	1	11	- 29.9	2.22	1.48	147.2	76.5
	1	6	- 9.7	1.01	1.31		
	1	2	63.8	0.64	0.68	17.1	12.5
	1	2	- 6.9	4.15	3.15		

<표 2> 업종별 95년 준조세 부담 현황

(단위 : 개, 억원, %)

			가	94	95	94	95
,가	56	5,938	74.7	1.12	1.41	13.3	10.6
	44	2,965	13.8	1.35	1.23	54.5	84.1
	8	1,167	4.6	1.15	1.05	7.4	7.6
	82	1,488	3.2	1.11	0.93	29.0	23.8
	32	1,409	18.5	0.20	0.18	79.5	132.2
1	37	2,481	-20.0	1.81	1.25	45.0	18.6
	41	910	0.3	0.92	0.84	48.3	142.9
	44	901	-8.1	0.91	0.71	40.0	78.7
	25	577	30.5	1.02	0.81	34.0	20.8
	32	1,225	-8.2	0.63	0.49	72.9	58.4
	2	634	108.1	2.70	3.75	11.6	21.8
	25	611	6.0	1.17	1.03	33.2	34.7
	9	343	14.2	0.86	0.81	35.2	42.8
	8	389	12.6	2.68	2.41	90.6	84.3
	20	249	24.6	0.55	0.50	22.6	25.7
,	6	271	-3.4	0.28	0.22	12.5	7.6
	1	458	19.8	1.25	1.35	38.8	27.6
	3	264	37.5	0.38	0.46	53.4	61.2
	16	265	7.5	0.88	0.82	530.9	132.6
	22	170	4.6	0.68	0.53	41.8	10.5
	5	281	8.5	0.73	0.57	21.4	35.8
	4	228	9.9	0.63	0.56	16.8	18.8
	13	156	80.1	0.61	0.84	11.5	13.9
	3	55	12.4	0.64	0.48	19.4	15.6
	9	72	12.9	0.50	0.43	9.8	8.6
가 ,	8	82	9.2	0.66	0.65		
	3	44	14.4	0.78	0.88	39.2	92.1
	11	56	38.7	0.75	0.87	17.9	26
	8	46	1.0	0.49	0.44	58.5	27.2
	2	15	-2.0	1.79	1.59		208.9
,	7	23	24.2	0.84	0.86	8.3	7.0
	1	25	14.5	1.10	1.01	25.8	30.3
	3	28	17.5	0.76	0.84		165.3
	2	12	1.8	0.66	0.59	11.5	11.4
	1	14	23.0	1.48	1.03	76.5	31.5
	1	6	-6.4	1.31	1.51		
	1	2	45.6	0.68	0.67	12.5	18.9
	1	1	-12.1	3.15	3.68		685.9

<표 3> 업종별 96년 준조세 부담 현황

(단위 : 개, 억원, %)

			가	95	96	95	96
,가	56	3,059	- 48.5	1.41	0.70	10.6	32.0
	44	2,829	- 4.6	1.23	0.99	84.1	101.4
	8	1,435	23.0	1.05	1.11	7.6	15.6
	82	1,565	5.2	0.93	0.89	23.8	41.2
	32	1,510	7.2	0.18	0.15	132.2	118.1
1	37	2,104	- 15.2	1.25	1.00	18.6	25.3
	41	867	- 4.8	0.84	0.70	142.9	192.9
	44	835	- 7.4	0.71	0.63	78.7	
	25	459	- 20.4	0.81	0.52	20.8	22.5
	32	955	- 22.0	0.49	0.34	58.4	40.4
	2	519	- 18.1	3.75	1.58	21.8	13.4
	25	480	- 21.4	1.03	0.73	34.7	57.4
	9	353	3.0	0.81	0.72	42.8	50.0
	8	407	4.5	2.41	2.12	84.3	111.6
	20	298	19.5	0.50	0.50	25.7	24.7
,	6	225	- 16.8	0.22	0.15	7.6	10.0
	1	159	- 65.3	1.35	0.43	27.6	
	3	263	- 0.4	0.46	0.31	61.2	38.5
	16	219	- 17.5	0.82	0.61	132.6	20.7
	22	159	- 6.4	0.53	0.48	10.5	78.5
	5	135	- 51.8	0.57	0.24	35.8	
	4	158	- 30.5	0.56	0.33	18.8	139.2
	13	184	17.8	0.84	0.84	13.9	18.8
	3	76	38.6	0.48	0.48	15.6	21.0
	9	85	17.3	0.43	0.40	8.6	9.9
가 ,	8	57	- 29.9	0.65	0.46		
	3	50	14.3	0.88	0.93	92.1	
	11	58	3.1	0.87	0.84	25.5	44
	8	44	- 3.3	0.44	0.39	27.2	29.4
	2	19	29.9	1.59	1.77	208.9	37.0
,	7	29	26.5	0.86	0.87	7.0	6.7
	1	25	0.8	1.01	1.09	30.3	
	3	23	- 17.5	0.84	0.67	165.3	
	2	15	27.5	0.59	0.55	11.4	11.3
	1	13	- 8.1	1.03	0.77	31.5	23.1
	1	4	- 18.5	1.51	1.34		
	1	4	72.7	0.67	0.90	18.9	5.6
	1	1	1.3	3.68	5.66	685.9	

<표 4> 업종별 97년 준조세 현황

(단위 : 개, 억원, %)

			가	96	97	96	97
,가	56	3,260	6.6	0.70	0.63	32.0	
	44	2,524	- 10.8	0.99	0.76	101.4	
	8	1,879	30.9	1.11	1.28	15.6	16.6
	82	1,462	- 6.6	0.89	0.71	41.2	37.4
	32	1,173	- 22.4	0.15	0.10	118.1	
1	37	965	- 54.1	1.00	0.41	25.3	35.3
	41	935	7.9	0.70	0.68	192.9	1,696.0
	44	762	- 8.7	0.63	0.51		
	25	604	31.7	0.52	0.64	22.5	36.1
	32	597	- 37.5	0.34	0.21	40.4	
	2	496	- 4.5	1.58	1.19	13.4	37.4
	25	477	- 0.7	0.73	0.69	57.4	106.0
	9	467	32.3	0.72	0.85	50.0	
	8	441	8.3	2.12	1.95	111.6	246.4
	20	315	5.8	0.50	0.48	24.7	87.9
,	6	295	31.1	0.15	0.15	10.0	24.0
	1	287	80.5	0.43	0.67		
	3	253	- 3.9	0.31	0.22	38.5	
	16	215	- 1.8	0.61	0.56	20.7	18.9
	22	199	25.2	0.48	0.53	78.5	
	5	172	26.8	0.24	0.25		
	4	134	- 15.6	0.33	0.20	139.2	
	13	119	- 35.1	0.84	0.51	18.8	
	3	103	36.0	0.48	0.72	21.0	34.7
	9	75	- 11.0	0.40	0.37	9.9	
가 ,	8	53	- 7.5	0.46	0.42		
	3	52	3.7	0.93	0.90		226.0
	11	46	- 21.1	0.84	0.57	43.9	48,689
	8	40	- 8.8	0.39	0.34	29.4	
	2	34	75.7	1.77	1.28	37.0	30.8
,	7	33	14.1	0.87	0.78	6.7	5.7
	1	24	- 4.5	1.09	0.91		
	3	22	- 4.4	0.67	0.60		
	2	20	27.0	0.55	0.60	11.3	11.2
	1	14	13.9	0.77	0.75	23.1	65.1
	1	5	10.3	1.34	1.39		
	1	3	- 36.0	0.90	0.58	5.6	5.8
	1	2	14.7	5.66	4.16		170.3

<표 5> 업종별 94년 항목별 준조세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

	(A-B+C-D)	(B)	(C)	(D)	50%		(E)	+				
					(A-E)	(A-E)						
	3,399	1.12	2,540	0.84	706	0.23	153	0.05	3,962	1.30	7,360	2.42
	2,604	1.35	409	0.21	2,053	1.06	142	0.07	1,794	0.93	4,399	2.28
가	1,115	1.15	392	0.40	711	0.73	13	0.01	4,303	4.43	5,418	5.55
	1,441	1.11	508	0.39	703	0.55	25	0.17	1,503	1.16	2,948	2.28
	1,189	0.20	393	0.07	645	0.11	151	0.03	713	0.12	1,902	0.32
1	3,102	1.81	2,469	1.44	521	0.30	112	0.07	1,783	1.04	4,885	2.86
	97	0.92	238	0.26	465	0.50	155	0.16	1,031	1.04	1,938	1.96
	981	0.91	340	0.32	542	0.50	99	0.09	1,149	1.07	2,130	1.98
	42	1.02	131	0.30	266	0.62	45	0.10	340	0.79	782	1.81
	1,335	0.63	649	0.31	635	0.23	81	0.04	834	0.39	2,169	1.03
	35	2.70	238	2.29	41	0.36	6	0.06	877	7.78	1,182	10.48
	576	1.17	250	0.51	265	0.54	61	0.12	846	1.72	1,422	2.89
	300	0.86	39	0.11	236	0.68	26	0.07	335	1.14	665	2.00
	346	2.68	41	0.32	278	2.16	27	0.21	207	1.60	552	4.28
	200	0.55	22	0.06	131	0.36	47	0.13	218	0.60	418	1.15
	280	0.28	135	0.14	116	0.12	30	0.03	721	0.72	1,001	1.00
	332	1.25	211	0.69	153	0.52	13	0.04	452	1.48	833	2.73
	192	0.38	52	0.10	110	0.22	29	0.06	142	0.28	334	0.67
	246	0.88	63	0.23	144	0.52	39	0.14	335	1.33	631	2.26
	162	0.68	36	0.15	95	0.40	31	0.13	400	1.67	562	2.34
	239	0.73	92	0.26	133	0.37	34	0.09	220	0.62	479	1.34
	207	0.63	152	0.46	40	0.12	15	0.04	403	1.22	610	1.85
	87	0.61	24	0.17	43	0.31	20	0.14	343	2.47	435	3.09
	49	0.64	14	0.18	24	0.31	11	0.14	64	0.84	113	1.46
	64	0.50	16	0.13	31	0.24	17	0.13	186	1.46	250	1.96
가 ,	75	0.66	6	0.05	56	0.50	13	0.11	165	1.46	240	2.13
	38	0.78	3	0.06	31	0.62	5	0.10	42	0.86	80	1.64
	41	0.75	6	0.10	24	0.44	11	0.21	89	1.65	129	2.40
	45	0.49	2	0.02	37	0.40	7	0.07	99	1.08	144	1.56
	15	1.79	9	1.09	5	0.57	1	0.13	-	0.00	15	1.79
	19	0.84	2	0.10	10	0.47	6	0.27	60	2.68	78	3.52
	22	1.10	1	0.06	18	0.88	3	0.16	18	0.92	40	2.02
	24	0.76	2	0.06	19	0.60	3	0.10	22	0.71	46	1.47
	12	0.66	1	0.04	8	0.42	4	0.20	30	1.68	42	2.34
	11	1.48	2	0.29	8	1.08	1	0.11	39	5.16	50	6.64
	6	1.31	0	0.04	5	1.15	1	0.11	0	0.04	6	1.31
	2	0.68	-	0.00	0	0.20	1	0.48	4	1.66	5	2.34
	2	3.15	0	0.06	1	2.09	1	1.01	-	0.00	2	3.15

<표 6> 업종별 95년 항목별 준조세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

	(A-B+C-D)		(B)		(C)		50%		(E)		+	
							(D)				(A-E)	
	5,988	1.41	4,735	1.13	1,004	0.24	199	0.05	9,646	2.30	15,584	3.71
	2,955	1.23	635	0.26	2,158	0.89	171	0.07	1,740	0.72	4,705	1.95
가	1,167	1.05	342	0.31	797	0.72	27	0.02	3,917	3.52	5,083	4.57
	1,488	0.95	412	0.26	799	0.51	277	0.17	1,750	1.09	3,238	2.01
	1,409	0.18	511	0.05	750	0.09	148	0.02	849	0.11	2,257	0.28
1	2,481	1.25	1,743	0.87	623	0.31	116	0.06	2,844	1.43	5,326	2.67
	910	0.84	168	0.15	543	0.51	199	0.18	846	0.78	1,757	1.61
	901	0.71	220	0.17	572	0.45	109	0.09	829	0.65	1,730	1.36
	577	0.81	264	0.37	253	0.36	60	0.08	663	0.93	1,240	1.74
	1,225	0.49	455	0.18	674	0.27	97	0.04	941	0.38	2,166	0.87
	634	3.75	576	3.40	48	0.28	10	0.06	946	5.59	1,580	9.34
	611	1.03	217	0.37	323	0.55	71	0.12	676	1.14	1,287	2.18
	343	0.81	43	0.10	267	0.63	33	0.08	426	1.00	769	1.81
	389	2.41	53	0.33	307	1.91	30	0.18	231	1.43	621	3.84
	249	0.51	20	0.04	169	0.34	61	0.12	281	0.56	530	1.05
	271	0.22	97	0.05	139	0.11	35	0.03	885	0.73	1,156	0.95
	483	1.35	273	0.81	172	0.51	13	0.04	335	1.17	853	2.52
	264	0.46	96	0.17	145	0.26	23	0.04	220	0.39	484	0.85
	265	0.82	80	0.25	143	0.44	42	0.13	300	0.93	564	1.75
	170	0.53	34	0.10	101	0.32	35	0.11	307	0.96	477	1.49
	281	0.57	74	0.15	164	0.33	42	0.09	103	0.22	388	0.79
	228	0.56	166	0.41	44	0.11	18	0.04	297	0.73	525	1.30
	156	0.84	60	0.32	67	0.33	29	0.16	455	2.45	611	3.29
	55	0.48	6	0.05	34	0.30	14	0.12	156	1.37	210	1.84
	72	0.43	14	0.09	36	0.22	21	0.13	251	1.50	323	1.95
가 ,	82	0.65	16	0.12	52	0.42	14	0.11	104	0.83	185	1.48
	44	0.88	4	0.05	35	0.71	5	0.10	31	0.63	75	1.52
	56	0.87	15	0.23	28	0.44	13	0.21	54	0.83	110	1.71
	46	0.44	5	0.05	33	0.31	8	0.08	70	0.67	115	1.11
	15	1.59	9	0.92	6	0.59	1	0.03	0	0.05	15	1.62
	23	0.86	2	0.05	12	0.45	9	0.32	94	3.48	117	4.34
	25	1.01	0	0.02	20	0.80	5	0.20	28	1.12	53	2.14
	28	0.84	5	0.15	18	0.54	5	0.15	22	0.67	50	1.51
	12	0.59	1	0.05	7	0.34	4	0.20	31	1.51	43	2.10
	14	1.03	0	0.02	12	0.92	1	0.09	22	1.64	36	2.67
	6	1.51	0	0.05	5	1.33	0	0.10	0	0.01	6	1.52
	2	0.67	-	0.00	0	0.11	2	0.56	6	1.84	8	2.51
	1	3.68	0	0.03	1	2.62	0	1.02	-	0.00	1	3.68

<표 7> 업종별 96년 항목별 준조세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

	(A-B+C-D)		(B)		(C)		50%		(E)		+	
	3,059	0.70	2,215	0.51	650	0.15	194	0.04	1,776	0.41	4,836	1.11
	2,829	0.99	588	0.21	2,061	0.72	169	0.05	1,677	0.55	4,555	1.57
가	1,435	1.11	319	0.25	1,083	0.84	33	0.03	2,991	2.31	4,426	3.42
	1,555	0.89	450	0.25	823	0.47	292	0.17	1,335	0.74	2,870	1.63
	1,510	0.15	538	0.05	827	0.08	145	0.01	988	0.09	2,438	0.24
1	2,104	1.00	1,472	0.70	528	0.25	104	0.05	2,007	0.95	4,111	1.95
	867	0.70	169	0.14	528	0.43	169	0.14	93	0.77	1,810	1.47
	835	0.63	169	0.13	556	0.42	111	0.09	792	0.60	1,627	1.23
	459	0.52	130	0.15	261	0.30	68	0.08	653	0.74	1,112	1.27
	955	0.34	355	0.13	501	0.18	99	0.03	418	0.15	1,373	0.48
	519	1.58	445	1.35	60	0.18	15	0.04	1,612	4.88	2,131	6.45
	480	0.73	138	0.21	276	0.42	66	0.10	419	0.64	899	1.37
	353	0.72	35	0.07	279	0.57	39	0.08	234	0.45	588	1.21
	407	2.12	62	0.32	314	1.63	31	0.16	130	0.66	537	2.79
	298	0.50	42	0.07	194	0.33	62	0.11	277	0.47	575	0.97
	225	0.15	118	0.08	83	0.05	24	0.02	600	0.39	825	0.54
	159	0.43	79	0.22	66	0.18	14	0.04	6	0.02	165	0.45
	263	0.31	37	0.04	179	0.21	47	0.06	152	0.18	415	0.49
	219	0.61	42	0.12	130	0.35	46	0.13	232	0.81	511	1.42
	159	0.45	21	0.07	97	0.29	40	0.12	238	0.75	417	1.25
	135	0.24	38	0.07	77	0.14	21	0.04	15	0.03	150	0.27
	158	0.33	78	0.16	61	0.13	19	0.04	87	0.18	246	0.51
	184	0.84	84	0.38	71	0.32	29	0.13	399	1.82	582	2.65
	76	0.45	25	0.16	39	0.24	12	0.08	91	0.57	167	1.05
	85	0.40	20	0.10	40	0.19	24	0.12	244	1.16	329	1.57
가 ,	57	0.46	5	0.04	39	0.31	13	0.10	66	0.53	123	1.00
	50	0.98	3	0.05	42	0.78	5	0.05	9	0.17	59	1.09
	58	0.84	15	0.21	30	0.44	13	0.19	122	1.76	180	2.60
	44	0.39	5	0.04	31	0.27	8	0.07	44	0.39	88	0.78
	19	1.77	13	1.17	6	0.54	1	0.05	8	0.72	27	2.45
	29	0.87	7	0.20	12	0.34	11	0.33	108	3.21	137	4.05
	25	1.09	1	0.02	21	0.90	4	0.17	0	0.01	26	1.10
	23	0.67	5	0.13	13	0.39	5	0.15	18	0.52	41	1.20
	15	0.55	1	0.05	8	0.30	6	0.20	43	1.54	59	2.05
	13	0.77	0	0.01	11	0.69	1	0.07	22	1.32	34	2.09
	4	1.34	0	0.10	4	1.10	0	0.13	0	0.01	5	1.35
	4	0.90	-	0.00	1	0.32	2	0.55	18	4.11	22	5.01
	1	5.67	-	0.00	1	4.22	0	1.45	-	0.00	1	5.67

<표 8> 업종별 97년 항목별 준조세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

	(A-B+C-D)		(B)	(C)	50%		(E)	+				
					(D)			(A-E)				
	320	0.66	232	0.46	70	0.14	184	0.04	1,287	0.25	4,547	0.88
	2524	0.76	533	0.16	1,815	0.55	176	0.05	1,276	0.33	3,800	1.15
가	1,879	1.26	474	0.32	1,375	0.94	30	0.02	3,104	2.11	4,984	3.39
	1,462	0.71	392	0.19	767	0.37	303	0.15	1,348	0.66	2,810	1.37
	1,173	0.10	336	0.05	700	0.05	137	0.01	697	0.05	1,870	0.16
1	95	0.41	211	0.09	666	0.28	99	0.04	1,975	0.84	2,940	1.25
	95	0.66	164	0.12	588	0.43	173	0.13	1,131	0.82	2,066	1.50
	72	0.51	97	0.05	561	0.37	104	0.07	933	0.62	1,685	1.12
	604	0.64	238	0.27	282	0.30	65	0.07	671	0.71	1,275	1.35
	597	0.21	179	0.05	340	0.12	78	0.03	188	0.07	785	0.27
	46	1.19	257	0.61	221	0.53	19	0.04	550	1.31	1,046	2.50
	477	0.65	162	0.23	248	0.35	66	0.10	483	0.70	959	1.39
	457	0.85	48	0.05	383	0.70	36	0.07	212	0.35	660	1.23
	441	1.95	51	0.23	364	1.61	26	0.11	111	0.45	552	2.44
	315	0.45	43	0.07	209	0.32	63	0.10	251	0.35	556	0.87
	235	0.15	61	0.05	196	0.10	38	0.02	306	0.16	601	0.31
	287	0.67	58	0.13	214	0.50	15	0.03	0	0.00	287	0.67
	233	0.22	42	0.04	171	0.15	40	0.03	54	0.05	307	0.26
,	215	0.55	33	0.09	137	0.35	45	0.12	331	0.85	546	1.42
	199	0.55	46	0.12	114	0.30	39	0.10	189	0.50	388	1.05
	172	0.25	36	0.05	103	0.16	27	0.04	140	0.21	312	0.46
	134	0.20	42	0.05	69	0.11	22	0.03	42	0.05	175	0.27
	119	0.51	19	0.05	74	0.32	26	0.11	140	0.60	259	1.11
	103	0.72	40	0.28	44	0.31	19	0.13	119	0.84	222	1.55
	75	0.37	15	0.07	38	0.19	23	0.11	184	0.90	260	1.27
가 ,	53	0.42	3	0.02	39	0.31	11	0.09	41	0.32	94	0.74
	52	0.90	3	0.04	46	0.79	4	0.03	35	0.61	87	1.51
	46	0.57	4	0.05	28	0.35	14	0.17	36	0.45	82	1.02
,	40	0.34	4	0.03	28	0.24	8	0.07	20	0.17	60	0.51
	34	1.25	25	0.95	8	0.29	2	0.01	22	0.85	56	2.11
,	33	0.75	6	0.13	15	0.34	13	0.31	108	2.52	142	3.30
	24	0.91	2	0.03	19	0.72	3	0.11	0	0.00	25	0.92
	22	0.60	7	0.19	11	0.29	4	0.12	21	0.55	43	1.19
,	20	0.60	6	0.18	10	0.29	4	0.13	66	2.01	86	2.60
	14	0.75	0	0.00	13	0.69	1	0.04	7	0.35	21	1.10
	5	1.33	0	0.00	4	1.21	0	0.11	0	0.00	5	1.42
	3	0.55	-	0.00	1	0.20	2	0.37	12	2.74	14	3.32
	2	4.18	-	0.00	1	2.89	0	1.28	-	0.00	2	4.18

<표 9> 업종별 준조세 및 경상이익 추이

(단위 : 억원, %)

		94	95	96	97	98
	(A)	3,399	5,938	3,059	3,260	884
	(B)	25,653	55,814	9,563	-2,985	963
	A/B	13%	11%	32%		92%
	(A)	2,604	2,965	2,829	2,524	1,069
	(B)	4,780	3,527	2,788	-3,315	-8,236
	A/B	54%	84%	101%		
,가	(A)	1,115	1,167	1,435	1,879	809
	(B)	14,990	15,266	9,214	11,328	9,072
	A/B	7%	8%	16%	17%	9%
	(A)	1,441	1,488	1,565	1,462	527
	(B)	4,965	6,249	3,799	3,908	4,637
	A/B	29%	24%	41%	37%	11%
	(A)	1,189	1,409	1,510	1,173	365
	(B)	1,495	1,065	1,279	-2,212	-1,561
	A/B	80%	132%	118%		
1	(A)	3,102	2,481	2,104	965	1,171
	(B)	6,897	13,339	8,311	2,738	7,814
	A/B	45%	19%	25%	35%	15%
	(A)	907	910	867	935	254
	(B)	1,878	637	449	55	1,295
	A/B	48%	143%	193%	1696%	20%
	(A)	981	901	835	762	258
	(B)	2,455	1,145	-1,446	-3,961	-3,607
	A/B	40%	79%			
	(A)	442	577	459	604	188
	(B)	1,300	2,771	2,036	1,675	977
	A/B	34%	21%	23%	36%	19%
	(A)	1,335	1,225	955	597	204
	(B)	1,830	2,098	2,366	-11,447	-20,101
	A/B	73%	58%	40%		
	(A)	305	634	519	496	220
	(B)	2,628	2,904	3,888	1,327	2,023
	A/B	12%	22%	13%	37%	11%
	(A)	576	611	480	477	183
	(B)	1,734	1,759	837	450	-1,430
	A/B	33%	35%	57%	106%	
	(A)	300	343	353	467	111
	(B)	852	801	706	-368	-524
	A/B	35%	43%	50%		
	(A)	346	389	407	441	159
	(B)	382	462	365	179	-146
	A/B	91%	84%	112%	246%	

(계속)

	(A)	200	249	298	315	83
	(B)	886	971	1,206	359	273
	A/B	23%	26%	25%	88%	30%
	(A)	280	271	225	295	129
	(B)	2,250	3,563	2,251	1,229	1,565
	A/B	12%	8%	10%	24%	8%
	(A)	382	458	159	287	151
	(B)	984	1,660	- 2,467	- 4,204	658
	A/B	39%	28%			23%
	(A)	192	264	263	253	88
	(B)	360	431	683	- 335	- 2,037
	A/B	53%	61%	39%		
	(A)	246	265	219	215	90
	(B)	46	200	1,055	1,135	907
	A/B	531%	133%	21%	19%	10%
	(A)	162	170	159	199	42
	(B)	388	1,614	202	- 998	- 805
	A/B	42%	11%	79%		
	(A)	259	281	135	172	58
	(B)	1,208	785	- 3,012	- 801	526
	A/B	21%	36%			11%
	(A)	207	228	158	134	53
	(B)	1,234	1,211	114	- 2,748	130
	A/B	17%	19%	139%		41%
	(A)	87	156	184	119	41
	(B)	750	1,120	974	- 850	- 3,263
	A/B	12%	14%	19%		
	(A)	49	55	76	103	46
	(B)	251	350	359	296	188
	A/B	19%	16%	21%	35%	25%
	(A)	64	72	85	75	23
	(B)	653	843	858	- 2,157	- 315
	A/B	10%	9%	10%		
가 ,	(A)	75	82	57	53	22
	(B)	- 7	- 126	- 363	- 361	- 147
	A/B					
	(A)	38	44	50	52	19
	(B)	98	48	- 174	23	- 296
	A/B	39%	92%		226%	
	(A)	41	56	58	46	15
	(B)	227	220	132	0	- 1,620
	A/B	18%	26%	44%	50822%	
	(A)	45	46	44	40	19
	(B)	77	168	150	- 821	- 503
	A/B	59%	27%	29%		

(계속)

	(A)	15	15	19	34	3
	(B)	- 19	7	52	111	81
	A/B		209%	37%	31%	4%
	(A)	19	23	29	33	10
	(B)	223	331	438	586	149
	A/B	8%	7%	7%	6%	7%
	(A)	22	25	25	24	8
	(B)	86	83	- 62	- 147	64
	A/B	26%	30%			12%
	(A)	24	28	23	22	7
	(B)	- 29	17	- 35	- 456	180
	A/B		165%			4%
	(A)	12	12	15	20	7
	(B)	104	107	137	176	31
	A/B	11%	11%	11%	11%	22%
	(A)	11	14	13	14	10
	(B)	15	44	55	22	13
	A/B	76%	31%	23%	65%	76%
	(A)	6	6	4	5	3
	(B)	- 65	- 35	- 25	- 181	- 61
	A/B					
	(A)	2	2	4	3	1
	(B)	12	12	69	43	0
	A/B	12%	19%	6%	6%	922%
	(A)	2	1	1	2	0
	(B)	- 7	0	- 5	1	4
	A/B		695%		171%	6%

<부록 2> 30대 그룹의 준조세 현황

우리나라 경제에서 3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 특히 5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표 19> 참조). 따라서 아래에서는 30대 그룹의 준조세 부담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0> 30대그룹 94년 준조세 현황

(단위 : 억원, %)

			가	93	94	93	94
SK	12	2,279	104.4	0.41	0.67	17.8	13.2
	19	1,561	33.1	0.35	0.39	36.7	28.9
	11	1,480	40.7	0.68	0.76	30.4	17.6
	11	1,250	40.0	0.62	0.71	92.1	45.5
	7	689	-16.8	0.80	0.58	32.0	18.0
	3	604	12.3	2.40	2.17	115.2	90.8
	6	732	50.2	0.92	1.20	34.1	38.9
	4	277	32.5	0.67	0.80		
	4	162	-50.2	1.58	1.17	45.7	
	4	227	67.5	0.61	0.87	61.4	104.7
	7	170	28.8	0.72	0.82		
	6	344	55.6	0.37	0.45	15.9	19.1
	4	191	54.6	0.78	0.99		30.0
	6	97	12.9	0.47	0.46	15.8	16.1
	4	95	35.9	0.47	0.47	50.9	21.0
	2	116	12.7	1.20	1.29	42.2	138.2
	4	115	-1.8	0.83	0.71	25.1	34.7
	3	104	-68.4	1.88	0.52	85.5	24.3
	3	53	16.7	0.54	0.56	43.3	29.6
	2	69	5.1	0.24	0.23	155.2	40.4
	3	74	-6.8	1.94	1.60	69.3	22.3
	2	59	-23.5	1.01	0.69	101.6	44.1
	5	29	-11.8	0.58	0.41	25.9	14.6
	2	43	39.6	0.36	0.42	13.4	18.3
	4	65	52.4	0.35	0.44	48.8	25.4
	4	27	12.0	0.95	0.98		
	6	19	-11.8	0.81	0.68		
	2	33	-2.7	0.66	0.54	18.0	21.0
	4	75	141.8	0.73	1.42	99.4	55.7

<표 11> 30대그룹 95년 준조세 현황

(단위 : 억원, %)

			가	94	95	94	95
S K	12	4,075	78.8	0.67	0.90	13.2	12.2
	19	2,052	31.4	0.39	0.41	28.9	15.0
	11	2,105	42.2	0.76	0.72	17.6	14.8
	11	1,537	22.9	0.71	0.60	45.5	52.0
	7	1,116	62.0	0.58	0.79	18.0	22.2
	3	688	13.8	2.17	2.12	90.8	80.0
	6	793	8.3	1.20	1.12	38.9	31.2
	4	349	25.8	0.80	0.69		38.4
	3	373	130.6	1.17	1.34		429.2
	4	204	- 10.1	0.87	0.67	104.7	63.5
	7	202	19.1	0.82	0.90		
	6	280	- 18.5	0.45	0.26	19.1	13.6
	4	186	- 2.9	0.99	0.90	30.0	26.3
	6	109	12.0	0.46	0.47	16.1	19.1
	4	136	43.0	0.47	0.57	21.0	23.3
	2	131	13.1	1.29	1.35	138.2	141.5
	4	110	- 4.4	0.71	0.60	34.7	33.6
	3	123	17.3	0.52	0.50	24.3	19.6
	3	64	19.9	0.56	0.60	29.6	
	2	78	14.0	0.23	0.22	40.4	29.7
	3	105	42.4	1.60	1.65	22.3	41.8
	2	71	21.1	0.69	0.69	44.1	63.5
	4	39	34.2	0.41	0.40	14.6	9.5
	2	46	7.3	0.42	0.38	18.3	21.2
	4	64	- 0.7	0.44	0.33	25.4	12.0
	4	55	106.0	0.98	1.43		
	6	28	46.4	0.68	0.77		
	2	30	- 11.4	0.54	0.42	21.0	17.7
	4	41	- 45.3	1.42	0.65	55.7	21.9

<표 12> 30대그룹 96년 준조세 현황

(단위 : 억원, %)

			가	95	96	95	96
S K	12	2,445	- 40.0	0.90	0.47	12.2	106.0
	19	1,548	- 24.6	0.41	0.27	15.0	27.7
	11	1,096	- 47.9	0.72	0.31	14.8	30.3
	11	1,329	- 13.5	0.60	0.39	52.0	111.3
	7	851	- 23.7	0.79	0.47	22.2	17.3
	3	978	42.3	2.12	2.58	80.0	156.7
	6	390	- 50.9	1.12	0.50	31.2	
	4	443	26.9	0.69	0.72	38.4	215.5
	3	367	- 1.5	1.34	1.21	429.2	73.5
	4	181	- 11.0	0.67	0.56	63.5	53.6
	7	164	- 18.8	0.90	0.73		
	6	225	- 19.8	0.26	0.16	13.6	13.6
	4	141	- 23.9	0.90	0.64	26.3	43.6
	6	121	11.0	0.47	0.51	19.1	23.4
	4	157	15.4	0.57	0.57	23.3	20.3
	2	88	- 32.9	1.35	0.80	141.5	64.2
	4	103	- 6.5	0.60	0.51	33.6	40.4
	3	165	34.6	0.50	0.59	19.6	29.9
	3	73	15.3	0.60	0.57		34.0
	2	88	12.7	0.22	0.23	29.7	38.1
	3	79	- 24.7	1.65	1.11	41.8	30.1
	2	75	5.0	0.69	0.67	63.5	71.0
	4	43	9.8	0.40	0.34	9.5	8.0
	2	51	9.6	0.38	0.38	21.2	73.9
	4	48	- 25.0	0.33	0.24	12.0	15.9
	4	53	- 4.0	1.43	1.01		115.6
	6	28	0.7	0.77	0.54		
	2	33	10.6	0.42	0.38	17.7	
	4	37	- 10.6	0.65	0.51	21.9	15.7

<표 13> 30대그룹 97년 준조세 현황

(단위 : 억원, %)

			가	96	97	96	97
S K	12	2,731	11.7	0.47	0.45	106.0	107.1
	19	1,244	- 19.6	0.27	0.19	27.7	
	11	1,241	13.2	0.31	0.30	30.3	
	11	1,216	- 8.5	0.39	0.29	111.3	
	7	752	- 11.6	0.47	0.33	17.3	25.3
	3	717	- 26.7	2.58	1.64	156.7	292.1
	6	512	31.3	0.50	0.55		
	4	335	- 24.3	0.72	0.45	215.5	
	3	266	- 27.6	1.21	0.84	73.5	333.1
	4	264	45.5	0.56	0.71	53.6	76.9
	7	239	45.4	0.73	0.96		
	6	226	0.6	0.16	0.14	13.6	29.0
	4	171	21.0	0.64	0.70	43.6	29.6
	6	121	0.3	0.51	0.48	23.4	
	4	118	- 24.9	0.57	0.40	20.3	
	2	117	32.8	0.80	0.91	64.2	35.5
	4	109	6.0	0.51	0.35	40.4	
	3	107	- 35.2	0.59	0.32	29.9	38.9
	3	102	39.3	0.57	0.64	34.0	
	2	92	4.0	0.23	0.21	38.1	
	3	73	- 7.5	1.11	0.97	30.1	
	2	65	- 12.7	0.67	0.50	71.0	59.3
	4	59	36.7	0.34	0.36	8.0	10.4
	2	44	- 13.0	0.38	0.25	73.9	
	4	44	- 9.7	0.24	0.17	15.9	65.6
	4	31	- 41.6	1.01	0.44	115.6	
	6	30	6.0	0.54	0.45		
	2	30	- 8.6	0.38	0.28		
	4	29	- 19.7	0.51	0.28	15.7	5.4

<표 14> 그룹별 94년 항목별 준조세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

	(A+B+C+D)		(A)		(B)		50%		(E)		+	
	2,279	0.67	1,558	0.46	602	0.18	119	0.03	2,552	0.75	4,830	1.41
	1,561	0.39	664	0.17	767	0.19	130	0.03	1,624	0.41	3,185	0.80
	1,480	0.76	832	0.43	555	0.28	93	0.05	1,743	0.89	3,223	1.65
	1,250	0.71	497	0.28	681	0.39	73	0.04	529	0.30	1,779	1.01
S K	689	0.58	411	0.34	237	0.20	41	0.03	1,217	1.02	1,906	1.60
	604	2.17	46	0.17	530	1.90	28	0.10	201	0.72	806	2.89
	732	1.20	407	0.67	300	0.49	25	0.04	886	1.47	1,628	2.66
	277	0.80	95	0.28	155	0.45	27	0.08	78	0.23	356	1.03
	162	1.17	52	0.37	96	0.69	14	0.10	191	1.38	353	2.55
	227	0.87	75	0.29	129	0.50	23	0.09	161	0.62	387	1.49
	170	0.82	30	0.15	85	0.41	55	0.27	100	0.48	270	1.31
	344	0.45	165	0.21	152	0.20	26	0.03	762	0.99	1,105	1.43
	191	0.99	93	0.46	83	0.43	15	0.08	112	0.58	304	1.57
	97	0.46	6	0.03	83	0.39	9	0.04	247	1.17	344	1.63
	95	0.47	23	0.12	61	0.31	10	0.05	145	0.72	240	1.19
	116	1.29	49	0.54	53	0.64	10	0.11	85	0.94	201	2.24
	115	0.71	18	0.11	82	0.51	15	0.09	76	0.47	191	1.18
	104	0.52	9	0.05	79	0.39	16	0.08	103	0.51	208	1.03
	53	0.55	8	0.03	33	0.35	12	0.13	65	0.69	119	1.25
	69	0.23	2	0.01	51	0.17	16	0.05	51	0.17	120	0.40
	74	1.60	28	0.61	29	0.63	16	0.35	229	4.99	303	6.60
	59	0.69	8	0.10	42	0.50	8	0.10	40	0.47	98	1.16
	29	0.41	3	0.04	18	0.26	8	0.11	62	0.88	91	1.29
	43	0.42	5	0.05	31	0.30	7	0.07	46	0.44	89	0.86
	65	0.44	25	0.17	28	0.19	12	0.08	59	0.40	124	0.85
	27	0.98	6	0.21	16	0.59	5	0.19	51	1.86	78	2.85
	19	0.68	1	0.02	13	0.46	6	0.20	45	1.60	64	2.28
	33	0.54	9	0.14	21	0.34	4	0.06	44	0.70	77	1.24
	75	1.42	51	0.98	17	0.31	7	0.13	59	1.12	134	2.54

<표 15> 그룹별 95년 항목별 준조세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

	(A-B+C-D)		(B)		(C)		50%		(E)		+	
	4,075	0.90	3,163	0.70	787	0.17	125	0.03	5,676	1.25	9,752	2.15
	2,052	0.41	1,071	0.21	845	0.17	136	0.03	3,184	0.63	5,236	1.04
	2,105	0.72	1,246	0.42	726	0.25	133	0.05	2,861	0.97	4,966	1.69
	1,537	0.60	772	0.30	666	0.26	99	0.04	954	0.37	2,491	0.97
S K	1,116	0.79	714	0.50	351	0.25	51	0.04	1,477	1.04	2,592	1.83
	688	2.12	208	0.64	447	1.38	33	0.10	255	0.79	943	2.91
	793	1.12	452	0.64	315	0.45	27	0.04	652	0.92	1,445	2.05
	349	0.69	89	0.18	221	0.44	38	0.08	157	0.31	506	1.00
	373	1.34	115	0.41	231	0.83	26	0.10	168	0.60	541	1.95
	204	0.67	46	0.15	130	0.43	27	0.09	134	0.44	338	1.11
	202	0.90	23	0.10	100	0.44	79	0.35	61	0.27	263	1.16
	280	0.26	114	0.11	137	0.13	30	0.03	623	0.59	903	0.85
	186	0.90	72	0.35	97	0.47	16	0.08	198	0.96	384	1.85
	109	0.47	4	0.02	94	0.40	11	0.05	260	1.12	369	1.58
	136	0.57	41	0.17	82	0.34	13	0.05	175	0.73	310	1.29
	131	1.35	47	0.48	71	0.74	13	0.13	87	0.90	218	2.25
	110	0.60	13	0.07	83	0.46	14	0.08	102	0.56	212	1.16
	123	0.50	10	0.04	97	0.40	16	0.06	315	1.29	438	1.79
	64	0.60	19	0.18	33	0.31	12	0.12	85	0.81	149	1.41
	78	0.22	0	0.00	60	0.17	17	0.05	46	0.13	124	0.35
	105	1.65	52	0.81	31	0.48	22	0.35	125	1.97	230	3.62
	71	0.69	15	0.14	46	0.44	11	0.10	58	0.57	129	1.26
	39	0.40	10	0.10	22	0.23	7	0.08	86	0.89	126	1.30
	46	0.38	6	0.05	31	0.26	9	0.08	103	0.85	149	1.23
	64	0.33	25	0.13	26	0.13	13	0.07	112	0.56	176	0.89
	55	1.43	25	0.65	23	0.59	7	0.19	38	0.98	93	2.42
	28	0.77	3	0.07	19	0.52	7	0.18	26	0.71	54	1.48
	30	0.42	3	0.05	22	0.31	4	0.06	37	0.52	67	0.98
	41	0.65	12	0.19	23	0.36	6	0.10	51	0.81	92	1.46

<표 16> 그룹별 96년 항목별 준조세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

	(A-B+C-D)		(A)	(B)	50%		(E)	+				
					(C)			(A-E)				
	2,445	0.47	1,937	0.33	365	0.07	94	0.02	1,129	0.22	3,575	0.69
	1,548	0.27	571	0.10	846	0.15	130	0.02	888	0.15	2,436	0.42
	1,036	0.31	360	0.10	602	0.17	134	0.04	1,000	0.28	2,036	0.60
	1,329	0.39	486	0.14	728	0.21	115	0.03	855	0.25	2,184	0.64
S K	851	0.47	475	0.26	338	0.19	38	0.02	2,002	1.11	2,853	1.59
	978	2.58	218	0.57	725	1.91	36	0.09	335	0.88	1,313	3.46
	390	0.50	189	0.24	172	0.22	29	0.04	63	0.08	453	0.59
	443	0.72	169	0.27	244	0.40	30	0.05	48	0.08	491	0.80
	357	1.21	156	0.51	191	0.63	20	0.07	114	0.38	481	1.59
	181	0.56	28	0.09	124	0.39	29	0.09	95	0.29	276	0.86
	164	0.73	31	0.14	94	0.41	40	0.18	250	1.11	414	1.84
	225	0.16	89	0.06	97	0.07	39	0.03	358	0.26	583	0.42
	141	0.64	39	0.18	87	0.40	15	0.07	57	0.26	198	0.90
	121	0.51	36	0.15	73	0.30	12	0.05	149	0.62	270	1.13
	157	0.57	57	0.21	84	0.30	16	0.06	153	0.55	310	1.12
	88	0.80	20	0.18	57	0.51	11	0.10	76	0.69	164	1.48
	103	0.51	12	0.06	72	0.36	19	0.09	79	0.39	182	0.90
	165	0.59	48	0.17	101	0.36	16	0.06	115	0.41	280	1.01
	73	0.57	17	0.13	43	0.34	13	0.10	93	0.72	166	1.29
	88	0.23	0	0.00	69	0.18	19	0.05	29	0.08	117	0.30
	79	1.11	22	0.31	28	0.39	29	0.41	129	1.83	208	2.94
	75	0.67	15	0.14	47	0.42	12	0.11	50	0.45	125	1.11
	43	0.34	6	0.05	31	0.25	6	0.05	119	0.95	162	1.30
	51	0.38	3	0.02	37	0.28	10	0.08	73	0.54	123	0.92
	48	0.24	16	0.08	20	0.10	13	0.06	82	0.41	131	0.65
	53	1.01	22	0.42	23	0.44	8	0.16	34	0.64	87	1.66
	28	0.54	1	0.01	20	0.38	8	0.14	34	0.64	63	1.18
	33	0.38	1	0.01	28	0.33	3	0.04	15	0.17	48	0.56
	37	0.51	7	0.09	23	0.32	7	0.09	54	0.75	90	1.26

<표 17> 그룹별 97년 항목별 준조세 부담 현황

(단위 : 억원, %)

	(A+B+C+D)	(B)	(C)	(D)	50%	(E)	(A-E)	+				
	2,731	0.45	2,166	0.35	469	0.07	105	0.02	888	0.14	3,619	0.59
	1,244	0.19	369	0.05	754	0.12	121	0.02	815	0.12	2,059	0.32
	1,241	0.30	446	0.11	666	0.16	130	0.03	671	0.16	1,912	0.46
	1,216	0.29	399	0.09	711	0.17	106	0.03	699	0.17	1,915	0.45
S K	752	0.33	316	0.14	391	0.17	45	0.02	824	0.36	1,577	0.69
	717	1.64	188	0.43	497	1.13	32	0.07	106	0.24	822	1.88
	512	0.55	146	0.16	333	0.36	32	0.03	157	0.17	669	0.72
	335	0.45	112	0.15	176	0.24	47	0.06	45	0.06	380	0.51
	266	0.84	47	0.15	191	0.60	27	0.09	99	0.31	364	1.15
	264	0.71	32	0.09	206	0.56	25	0.07	60	0.16	323	0.87
	239	0.96	86	0.34	111	0.44	42	0.17	98	0.39	336	1.36
	226	0.14	48	0.03	141	0.09	37	0.02	222	0.14	448	0.28
	171	0.70	38	0.16	118	0.48	15	0.06	175	0.72	347	1.42
	121	0.46	11	0.04	98	0.39	12	0.05	68	0.27	189	0.74
	118	0.40	22	0.09	79	0.27	16	0.05	61	0.21	179	0.61
	117	0.91	34	0.27	71	0.55	11	0.09	44	0.35	161	1.26
	109	0.36	7	0.02	75	0.24	27	0.09	104	0.34	214	0.69
	107	0.32	11	0.03	81	0.25	15	0.04	18	0.05	125	0.38
	102	0.64	7	0.04	83	0.51	13	0.08	61	0.38	163	1.01
	92	0.21	0	0.00	72	0.16	20	0.04	0	0.00	92	0.21
	73	0.97	9	0.11	40	0.53	24	0.32	231	3.05	304	4.02
	65	0.50	13	0.10	39	0.30	13	0.10	31	0.24	96	0.74
	59	0.36	15	0.09	38	0.23	6	0.04	117	0.71	176	1.07
	44	0.25	7	0.04	27	0.16	10	0.05	-	0.00	44	0.25
	44	0.17	11	0.04	20	0.08	12	0.05	23	0.09	67	0.26
	31	0.44	9	0.12	14	0.20	8	0.12	17	0.24	48	0.67
	30	0.45	2	0.03	19	0.29	9	0.13	14	0.21	44	0.67
	30	0.26	1	0.01	25	0.24	4	0.04	5	0.04	35	0.33
	29	0.26	2	0.02	19	0.18	8	0.08	137	1.30	166	1.57

<표 18> 그룹별 준조세 및 경상이익 추이

(단위 : 억원, %)

		94	95	96	97	98
	(A)	2,279	4,075	2,445	2,731	643
	(B)	17,233	33,490	2,307	2,549	3,792
	A/B	13%	12%	106%	107%	17%
	(A)	1,561	2,052	1,548	1,244	615
	(B)	5,408	13,688	5,579	-536	-5,278
	A/B	29%	15%	28%		
	(A)	1,480	2,105	1,096	1,241	317
	(B)	8,424	14,272	3,621	-1,338	-1,907
	A/B	18%	15%	30%		
	(A)	1,250	1,537	1,329	1,216	394
	(B)	2,747	2,953	1,194	-642	1,040
	A/B	46%	52%	111%		38%
S K	(A)	689	1,116	851	752	348
	(B)	3,824	5,031	4,914	2,971	3,336
	A/B	18%	22%	17%	25%	10%
	(A)	604	688	978	717	281
	(B)	666	859	624	245	-3,167
	A/B	91%	80%	157%	292%	
	(A)	732	793	390	512	259
	(B)	1,883	2,539	-2,181	-7,080	1,211
	A/B	39%	31%			21%
	(A)	277	349	443	335	122
	(B)	-109	909	205	-205	-1,144
	A/B		38%	215%		
	(A)	162	373	367	266	183
	(B)	-324	87	500	80	-392
	A/B		429%	73%	333%	
	(A)	227	204	181	264	69
	(B)	216	321	338	343	322
	A/B	105%	63%	54%	77%	21%
	(A)	170	202	164	239	69
	(B)	-852	-1,277	-1,490	-1,294	-1,503
	A/B					
	(A)	344	280	225	226	74
	(B)	1,795	2,062	1,657	778	959
	A/B	19%	14%	14%	29%	8%
	(A)	191	186	141	171	52
	(B)	637	705	324	577	575
	A/B	30%	26%	44%	30%	9%
	(A)	97	109	121	121	59
	(B)	604	572	516	-454	44
	A/B	16%	19%	23%		135%
	(A)	95	136	157	118	48
	(B)	452	584	771	-1,192	-441
	A/B	21%	23%	20%		

(계속)

	(A)	116	131	88	117	49
	(B)	84	93	137	329	-125
	A/B	138%	142%	64%	35%	
	(A)	115	110	103	109	28
	(B)	333	329	255	-110	608
	A/B	35%	34%	40%		5%
	(A)	104	123	165	107	170
	(B)	430	627	552	275	-514
	A/B	24%	20%	30%	39%	
	(A)	53	64	73	102	.
	(B)	180	-2	216	-1,475	.
	A/B	30%		34%		n/a
	(A)	69	78	88	92	12
	(B)	170	263	231	-60	-720
	A/B	40%	30%	38%		
	(A)	74	105	79	73	3
	(B)	330	251	262	-220	-48
	A/B	22%	42%	30%		
	(A)	59	71	75	65	14
	(B)	133	112	105	110	182
	A/B	44%	63%	71%	59%	7%
	(A)	29	39	43	59	20
	(B)	200	412	541	568	-113
	A/B	15%	10%	8%	10%	
	(A)	43	46	51	44	40
	(B)	235	218	68	-2,995	-9
	A/B	18%	21%	74%		
	(A)	65	64	48	44	18
	(B)	256	538	303	67	-3,874
	A/B	25%	12%	16%	66%	0%
	(A)	27	55	53	31	11
	(B)	-177	-15	46	-235	-1,242
	A/B			116%		
	(A)	19	28	28	30	4
	(B)	-64	-127	-16	-2,181	-100
	A/B					
	(A)	33	30	33	30	.
	(B)	159	168	-191	-228	.
	A/B	21%	18%			n/a
	(A)	75	41	37	29	30
	(B)	134	187	232	547	371
	A/B	56%	22%	16%	5%	8%

정부 및 공공부문의
조세외 공공부담 부과 현황

I. 서론

기업이나 개인은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세금, 공과금, 부담금, 분담금, 수수료, 사용료, 사회보험료,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이름의 부담을 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담을 그 성격에 따라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용어의 혼용으로 무엇이 세금이고 어떤 것이 수수료나 사용료인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준조세”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조세이외의 부담은 물론 기부금이나 접대비도 이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준조세란 용어는 이론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준조세의 정의나 범위 등이 연구마다 차이가 나며 연구성과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OECD의 연구 등(1990, 1998)에서 세외수입이나 사용자 부담금 등 기존 조세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분석과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의회예산국(1993)에서도 조세이외 부담을 「사용자부담(user charges)」으로 정의하고, 이를 ① 사용수수료(user fees), ② 규제수수료(regulatory fees), ③ 편익부담금(beneficiary-based taxes), ④ 책임부담금(liability-based taxes) 등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준조세를 비롯한 다양한 기존 개념들을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개념에 의해 조세이외의 부담을 정리해 보고 실태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전지급의무, 공과금 등 행정학이나 회계학 등에서의 논의를 검토하고, 특히 경제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준조세 개념의 특징과 한계를 살핀 후 새로운 개념으로서 “조세의 공공부담(租稅外 公共負擔)”을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조세의 공공부담의 정의에 따라 조세이외의 부담을 재분류하고, 그 현황을 재정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II. 다양한 기존 개념들 — 금전지급의무, 공과금, 준조세

1. 행정학적 의미의 금전지급의무

최근에 행정법 또는 행정학적 접근을 통해 국민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하여 법령상 부담하는 금전적 지급의무를 파악하고, 그 법적 성격을 유형별로 명확히 분류하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¹³⁾ 행정학 또는 행정법적 관점에서의 정의는 공과금을 공권력 주체가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 하에서 징수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공과금은 공법상의 자연부담

13) 김성수(1991), 박상희(1994), 오준근(1998)

과 더불어 보다 상위개념인 공법상의 부담에 속하는 일련의 강제적 금전급부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공과금은 재정목적에 의하여 징수된다는 점에서 경찰목적 등 다른 목적의 공법상 금전급부와 구별된다. 따라서 재정수입이 목적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벌금, 과태료, 강제금, 과징금 및 손해배상금, 손실보상금 등은 공과금 체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재정목적이 부수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양자간의 구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근래 독일에서는 이에 관하여 공법상 부담금 또는 금전적 지급의무를 조세(Steuer), 사용료 및 수수료(Gebuhr), 분담금(Beitrag), 사회보험료(Sozialversicherungsbeitrag), 특별부담금(Sonderabgabe)의 5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¹⁴⁾

한편 김기표(1993)는 우리 나라 현행법상의 금전급부의무에 대하여 ① 조세, ②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③ 행정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금전적 부담금, ④ 수수료와 사용료, ⑤ 사회보험료, ⑥ 기타 국민의 금전적 부담금 — 동업자조합비·협회비, 각종 공단·협회나 기금에 납부·출연하는 분담금·부담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과료도 공법상의 금전급부로서 그 일차적 목적이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지만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금전적 부담금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 조세법 및 회계상의 공과금

조세법적 측면에서 공과금의 정의는 국세기본법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조세법에서 말하는 공과금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 8호에 의거하여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채납처분비 이외의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의 본문에 의하면 공과금은 그 징수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자력집행권 유무를 구분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에 채권상호간의 변제순위에 있어서는 공과금을 국세보다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다.”(임양택·최명근(1983), p.20~21)

따라서 조세법적 개념의 공과금은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채권실현과정에 있어서 자력집행권의 유무(국세채납처분절차의 준용여부)를 기준으로 징세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범위가 확정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소득계산상 공과금인가 혹은 아닌가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상기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 대신 기업의 부담이라는 측면과 그 부담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하여 공과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은 사회보장부담이

14) 김성수(1991)

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정법에서는 공과금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이들을 다른 항목으로서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체육성금, 원호성금, 국방헌금 등과 같이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으로서 중요한 공공성 기부금은 그 부담의 자의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공과금의 범위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기업회계상 이를 세금과 공과로 비용처리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15)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77조16)에서는 다음의 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 ②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다시 말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만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그 이외의 임의성 공과금은 손금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인정된다.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벌과금 성격의 것은 손금부인된다. 1997년 12월 31일 세법 개정 이전에는 법령에 열거된 공과금이 아니더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비용은 기부금 시부인계산에 의하여 손금산입되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여지가 없어졌다. 따라서 공과금에 대한 세무상 취급은 손금용인되는 공과금과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한편 1997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손금산입되는 공과금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열된 공과금이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는 손금에 산입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합비(회비 포함) 또는 협회비는 과거에 공과금의 범위에 나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금불산입된다. 종전 규정에 따른 공과금의 범위가 적어도 2000년까지 유효하므로 그 내용을 보면 <표 1>과 같다.

15)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공과금의 범위)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하여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전문개정 97·12·31]

16) 소득세법 시행령 제77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33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과금외의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하여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 [전문개정 97·12·31 대통령15565]

<표 1> 2000년까지 손금산입되는 공과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공회의사회비 2. 조합비(회비 포함) 또는 협회비(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및 협회만 가능)¹⁾ 3. 대한직접사회비 4.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5.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자가 소맥분가격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제분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에 금융기관(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포함)이 출연하는 금액 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기금으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금액 8.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9.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출연하는 직업훈련부담금²⁾ 10.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1. 축산법에 의하여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2. 잠업법에 의한 잠업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²⁾ 13.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²⁾ 14. 석탄사업법에 의하여 석탄산업안정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²⁾ 15.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16.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농약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²⁾ 17.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8.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²⁾ 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안전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²⁾ 20.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22.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23. 자력법원에 의하여 청소원인 자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액 24.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지정되는 연탄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한석탄공사가 외국무연탄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25. 원자력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²⁾ 2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폐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 28.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29.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30.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3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

주 : 1) 1998년부터 손금불산입됨.

2) 현재 폐지 또는 대체된 기금으로 효력이 없는 조항임.

<표 1> 2000년까지 손금산입되는 공과금(계속)

32.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교통안전기금에 납부하는 분담금
33.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²⁾
34.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
35.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
36.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
37. 염관리법에 의하여 염안정기금으로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38.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 납부하는 분담금
3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동 기금에 납부하는 대손보전준비금 및 출연금
40.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기금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4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에 수입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4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에 납부하는 분담금

주 : 1) 1998년부터 손금불산입됨.

2) 현재 폐지 또는 대체된 기금으로 효력이 없는 조항임.

그러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증권회사의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 도로점용료 및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폐수종말처리장 사용료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1997. 12. 31.) 이전부터 손금부인 되고 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및 도로공사 등 공사비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은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경우 관련자산의 원가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타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주식의 취득원가에 합산한다.

3. 경제학적 의미의 공과금과 준조세

경제학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과금은 다음과 같다.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공과금(public impost)을 국가·공공단체가 공권력에 기인한 강제원칙에 따라 사경제로부터 징수하는 재정 특유의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학상의 공과금은 두 가지, 즉 ① 조세와 행정수입을 총괄하는 광의적 개념의 공과금과 ② 조세외공과라는 개념에 의거하여 국가·공공단체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사용료, 수익자 부담금, 위법금 등의 행정수입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협의적 개념의 공과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임양택·최명근(1983), p.20)

따라서 경제학적 의미의 공과금이 갖는 광의적 개념은 행정수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조세까지도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협의적 개념의 공과금을 구성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 수익자부담금 등은 공공시설을 사용한다든가 혹은 공익서비스로부터 편익을 얻음으로써 발생하는 사용자 혹은 수혜자로서의 반대급부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위법금은 사회질서의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이지만 행정수입으로서 협의적 공과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준조세라는 용어가 처음 소개된 것은 임양택·최명근(1983)의 연구에서라고 할 수 있다.¹⁷⁾ 이 연구에서 앞에서 정의된 경제학적 의미의 공과금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준조세의 정의를 도출하였는데, 준조세를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이외의 공과금으로써 강제성이 강한 협의의 공과금과 공익성이 강한 기부금성 공과금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준조세라 함은 기업활동에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순수한 생산비용과 조세를 제외시킨 비필수적인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서의 공과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의에 따라 임양택·최명근(1983)의 연구에서 제시된 준조세는 <표 2>와 같다. 개별 항목은 현재와의 시차로 인하여 폐지된 것이 다소 있으나, 준조세라는 개념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 준조세의 종류

협의의 공과금	기부금성 공과금
동업자 조합비 및 협회비 등	이재민 구호성금
적십자 회비	새마을사업 기부금
오물수거료, 방법비 등	불우이웃돕기 기부금
각종 수익자부담금	원호관계 기부금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수수료 ¹⁾	자선성금
인쇄비 ¹⁾	각종 위문금
의료보험에 내는 기금	체육성금
수출진흥분담금 등 기금	교육·장학관계 기부금
기타 ²⁾	기타 ³⁾

주 : 1)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관련임.

2) 사업주부담저축장려금, 산재보험료, 교통안전협회비, 교통안전진흥공단기금 등

3) 지하철공사에 내는 기금 등

자료 : 임양택·최명근(1983)

한편 최근 손원익(1998)의 진행중인 연구에 따르면 준조세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의 주체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 중 '사용자로서의 반대급부가 명백히 반영되는 경우'와 '사회비용 유발에 대한 교정책임의 결과 및 사

17)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실시된 준조세 관련 연구조사는 모두 네 차례로 임양택·최명근(1983), 최동규(1986), 이춘근(1988, 1991) 등이 있으며, 그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988, 1991, 1994)와 중소기업청(1996)의 실태조사가 있었음. 또한 대우경제연구소는 1993년 이후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매년 준조세 부담현황을 발표하고 있음. 또한 최근의 참고할 만한 자료로는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1996) 등이 있음.

회질서 위반에 따르는 경제적 제재의 결과(벌과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활동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순수한 생산비용과 조세를 제외한 비필수적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뜻한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준조세는 공과금, 부담금, 분담금, 기금출연금과 같이 '법령상 부담의무가 있는 것'과 기부금, 성금 등과 같이 '법령상의 부담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부담이 강제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민간에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부담의 총칭으로 조세와 공적비용부담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 중 조세를 제외한 공적비용부담이 광의의 준조세에 해당한다. 부담금 및 분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지방자치법 제129조).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준조세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부과 및 징수에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 사용료, 수수료처럼 회피 가능하거나 시장기능에 의해 준조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하며, 법률, 조례, 규약 등에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자의 부담이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과 같이 납부자에게 혜택이 귀속되는 공과금은 준조세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항만시설을 손상할 공사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항만관련 부담금처럼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부과되는 것도 준조세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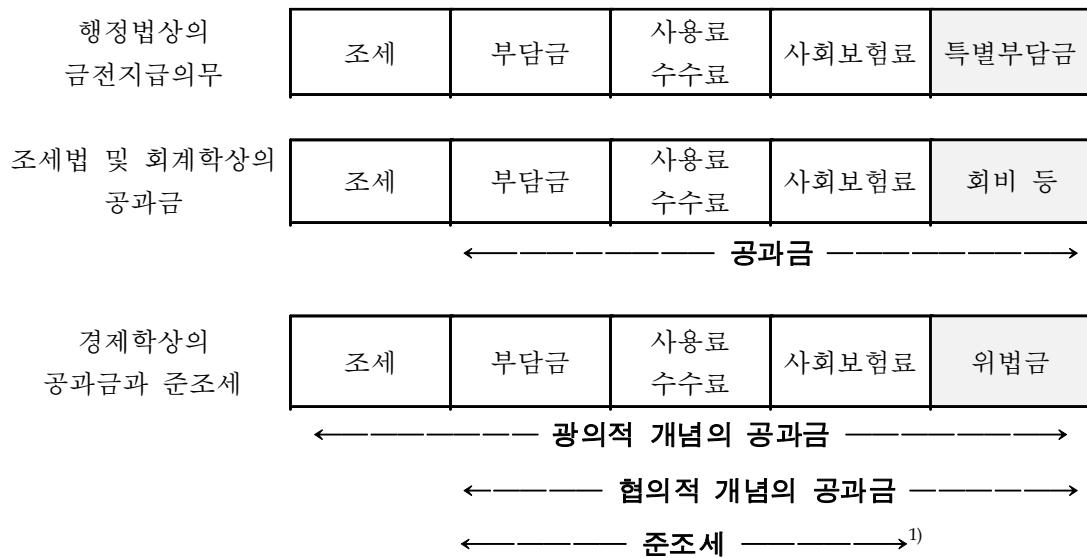
한편 준조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범위 1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각종 부담으로 명백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례상 강제적으로 인지되는 것을 말한다. 범위 2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명백한 법적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각종 부담을 포함한다. 범위 3은 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명백한 법적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각종 부담, ② 사업자의 부담이 직접적인 이득에 대한 보상이 아닐 것, ③ 사업자의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아닐 것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비자발적 기부금은 총 준조세 규모에 포함시키고 있다.

4. 기존 개념의 특징 및 한계 — 준조세를 중심으로

행정법 또는 행정학에서의 금전지급의무, 조세법 또는 회계학상의 공과금, 그리고 경제학적인 공과금 및 준조세 정의 등은 조세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부담에 대한 상이한 접근으로 인해 다양한 명칭과 분류가 존재함을 예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정학적 접근에서의 금전지급의무 또는 공과금이라는 개념에는 조세가 명시

적으로 하나의 구성요소가 되고 있지만, 조세법이나 회계학상에서는 공과금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경제학적인 정의에서는 공과금의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을 구분하고, 조세를 광의적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경제학에서 준조세란 개념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협의적 개념의 공과금을 정치(精緻)화하고 기부금을 그 구성요소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비교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논리적 정합성(整合性)이 유지되고 있는 행정법상의 금전지급의무 또는 공과금의 개념을 기준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금전지급의무, 공과금, 준조세



주 : 1) 준조세에는 기부금성 공과금이 추가됨.

그런데 경제학적인 준조세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기존 연구와 관련하여 정의상(定義上)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조세의 개념적인 근거는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이외의 공과금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 특징을 강제성과 공공성에서 찾고 있다. 다시 말해 임양택·최명근(1983)은 준조세를 강제성을 띤 협의 공과금과 공공성을 띤 기부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더욱이 손원익(1998)에서는 이와 같은 정의에 법적 규정성과 비수익 또는 비손실부담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임양택·최명근(1983)의 정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준조세란 개념이 기본적으로 강제성과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조세를 비롯한 모든 공공부담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세입이 되고 이를 통해 세출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에 공공성을 내포하게 되며, 정도의 차이에도 있을지라도 강제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성의 강약으로 조세는 강제성이 강하고, 준조세는 강제성이 약하다는 방식으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폐기물부담금과 같이 현재 준조세로 분류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이나 과징금 등을 내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강제성이 일반적인 조세의 강제성과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공성을 띤 기부금을 준조세로 간주하고 있으나 오히려 기업의 부담이 되는 것은 공공성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부를 강요하는 공권력의 강제성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Ⅲ.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조세의 공공부담에 대한 정의와 유형

1. 조세의 공공부담이란?

정부나 공공부문이 생산,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재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때로는 사용재를 공급할 수도 있으며, 민간부문도 공공재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생산,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일종의 가격(價格)으로서의 성격을 내포하게 된다. 현재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조세외의 부담을 우리나라에서는 준조세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이든 준조세이든 정부·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거나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기업이나 가계의 금전적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세와 준조세 또는 기타 공공부담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조세이든 준조세이든 재정활동의 범주(範疇)에서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부나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부연하면,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일반적인 “조세”가 대다수의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특정 세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징수되며, 특정의 혜택이나 손실(책임)과는 관계가 없는 공공부담이라면, “조세외 공공부담(租稅外 公共負擔)”은 특정 세입을 강조하거나 특정 세출을 목적으로 하고, 특정한 혜택이나 손실에 기초를 둔 공공부담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용재는 물론 정부가 제공하는 준공공적인 재화와 서비스(quasi-public goods and services)에 적용되는 모든 민간부문의 공공부담을 조세외 공공부담으로 볼 수 있다.

금전지급의무, 공과금, 준조세 등 기존 개념과 비교할 때 조세외 공공부담이란 정의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

첫째, 조세외 공공부담은 금전지급의무, 공과금, 준조세 등 기존 개념과는 달리 강제성과 같은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념을 도출하지 않고, 정부나 공공부문의 경제행위, 즉 재정활동에서 나타난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특히 준조세에서는 공공성을 띤 기부금 등을 포함하지만 조세외 공공부담

18) 정부의 재정활동에서 있어서 조세외의 부담에 대한 연구는 차병권(1985), 김동건·이준구(1986), 이계식(1988), 이규억·이재형(1988), 노기성(1989) 등을 들 수 있으며, 본고에서 정의하고 있는 조세외 공공부담은 선행 연구의 접근법을 따르면서 그 연구결과를 종합하려는 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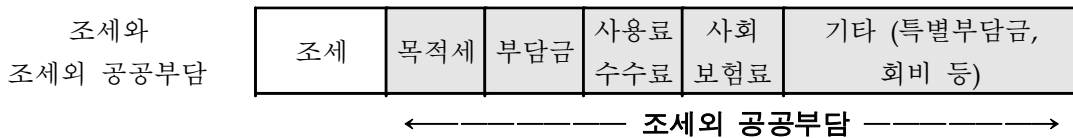
에서는 제외하고 있다.¹⁹⁾ 이는 기부금, 정치헌금, 접대비 등이 기업이나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정활동의 범주(範疇)나 정부·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조세의 공공부담에는 우리 나라의 경우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과 같은 소위 목적세(ear-marked taxes)가 일반적인 조세와 분리되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분류는 재정활동의 범주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목적세는 특정 세입이나 세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조세의 공공부담에는 부담금, 사용료·수수료, 사회보험료 등이 포함되며, 법적 규정성과 비수익 또는 비손실부담성 등을 토대로 준조세인 부담금과 준조세가 아닌 부담금 등으로 구분하는 최근의 준조세 논의를 따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세의 공공부담에 대한 정의와 기타 개념과 비교를 토대로 할 때 조세의 공공부담은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조세와 조세의 공공부담



2. 조세의 공공부담의 네 가지 유형

가. 목적세(ear-marked taxes)

일반적인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않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비해 목적세는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세 중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²⁰⁾ 목적세의 세입이 특정한 혜택(benefit)과 관련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또는 세출에 대한 특정성의 유무(有無)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세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에 부과함으로써 교통자원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게 되지만,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기존 세원(稅源)에 부가세(附加稅, surtax)로 부과되어 혜택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다. 반면에 교통세의 세입은 일반회계로,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세입은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세출에 대한 특정성에 차이가 나고 있다.

현행 목적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교통세의 경우는 도로 및 도

19)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김진수(1997), 접대비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손원익(1997)을 들 수 있음. 그러나 이들 연구는 기부금이나 접대비에 관한 세제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20) 지방세 중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해당됨.

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현재 세율은 휘발유에 대하여 455원/ℓ, 경유에 대하여 85원/ℓ을 기본세율하고 있으나,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탄력세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특별소비세액 및 종합토지세액 등 일부 국세 또는 지방세에 추가하여 부과(surtax)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아닌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및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다. 현재 세율은 <표 3>과 같다.

<표 3> 교육세의 세율

과세대상	세율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0.5%
특별소비세액	30%(등유의 경우 15% ¹⁾)
교통세액	15% ¹⁾
주세액	10%, 30% (30% 적용은 주세율 80% 이상인 주류)
등록세액, 재산세액, 종합토지세액	20%
경주·마권세액	50% ²⁾
균등할 주민세액	10%, 25% (25% 적용은 인구 50만명이상 도시)
담배소비세액	40% ¹⁾
자동차세액	30%

주 : 1)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

2) 2000년까지는 현행 세율로 부과, 그 이후는 종전 세율 20%로 환원

자료 : 재정경제부(1998)

또한 농어촌특별세는 WTO체제의 출범에 대응하여 농어촌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과(surtax)되고 있으며, 교육세와 마찬가지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이 되고 있다. 현재 세율은 <표 4>와 같다.

한편 최근에 조세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2000년부터 현행 목적세의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나 관련 정부부처간 이견(異見)을 보이고 있다.

<표 4> 농어촌특별세의 세율

과세대상	세율	비고
조세감면액 - 내국세 감면액 - 관세 감면액 - 지방세 감면액	20%	조감법·지방세법·관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등록세 감면액에 부과 (농어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감면은 제외)
저축 감면	10%	농·수·축협 출자금의 배당금, 장학적금의 이자에 대한 감면 제외
증권거래금액	0.15%	
취득세액	10%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자 (서민주택, 농가주택, 농지취득 등 제외)
종합토지세액 500만원 초과분	10~15%	500~1,000만원 : 10% 1,000만원 초과 : 50만원+1,000만원 초과액의 15%
경주·마권세액	20%	
특별소비세액	10% (골프장 30%)	고급가구, 모피, 오락기 등 사치성물품

자료 : 재정경제부(1998)

나. 사회보험료(social insurances)

사회보험은 정부의 공권력에 강제성을 이용하여 개인과 기업의 기여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사회보장이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제도가 실시 중이다. <표 5>에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특히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별도 관리중인 사립교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4월부터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확대 적용, 2000년 국민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립,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통합논의 등 사회보험에 대한 구조개편이 진행 중이다.

<표 5> 사회보험

	명칭	근거법	세입(조성)	(위탁)관리	기타
1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기금 (공)	국민연금 관리공단	
2	의료보험 보험료	의료보험법		국민의료 보험관리 공단 직장의료 보험조합	- 직장의료보험 : 사용자와 피보험자가 50%씩 보험료 부담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 학교경영자 30%, 정부 20%, 피보험자 50% - 지역의료보험 : 세대당 월보험료와 정부보조
3	고용보험 보험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기금 (공)	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 사업주 :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고용안정보험료 전액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 50% 부담 - 근로자 : 실업급여 보험료 50% 부담
4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보험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공)	근로복지 공단	- 사업주 : 전액 부담
5	사립학교교원 연금기금 기여금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 금기금(기)	사립학교 교원연금 관리공단 (교육부)	- 개인 : 표준보수월액의 6.5% - 사학법인 : 교원과 직원 보수월액의 4% - 정부 : 교원 보수월액의 2.5%
6	공무원 연금기금 기여금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기금 (기)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행정자치부)	- 개인 : 보수월액의 55/1000범위
7	군인연금기금 기여금	군인연금법	군인연금기금 (공)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국방부)	- 개인 : 보수월액의 75/1000범위

주 : (공)은 공공기금, (기)는 기타기금임.

다. 사용료·수수료

사용료·수수료를 사용수수료(user fees)와 규제수수료(regulatory fees)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사용수수료는 정부나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때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자발적으로 소비되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구성원과 공유하지 않는다. 사용수수료는 편익(benefit)에 따라 재화나 용역에 부과되며, 정부가 부과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의 일상적인 거래에서 생기는 비용의 대가(代價)와 유사하다. 사용수수료는 자연자원의 로열티, 고속도로·교량·터널의 통행료, 보험료, 임차비, 자원(수자원, 광물, 목재 등)이나 그 생산물(예를 들어, 전력)의 사용료, 국유지사용료, 국립공원 입장료, 우편요금, 핵폐기물처리비용, 기타 규제와 관련이 있는 인허가 수수료 등이다.

한편 규제수수료는 특정한 경제활동을 규제 또는 통제하는 정부의 권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여권발급수수료, 세관검사료, 시험·검사·등급판정 등의 수수료, 특허·상표 등에 대한 수수료, 등록·인허가·면허 등에 대한 수수료 등 규제성 법률 서

비스와 관련된 것이 규제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수수료는 편익성 또는 책임성에 관련되어 있으나 전통적으로 정부가 제공해왔던 서비스에 대한 대가(代價)이다. 규제수수료는 조세를 부과하고 특정한 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정부의 독립적인 권한에 부과근거가 있다. 특정 상업활동의 허가조건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면허 등에 관련된 비용도 규제수수료에 속한다. 또한 수수료 납부자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로부터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때로 수수료 납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검사관련 수수료도 규제수수료에 해당한다. 환경이나 공중보건, 안전 등과 관련되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규제수수료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특정 산업에 안전기준을 정하고, 검사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한다. 이 경우 규제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납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검사수수료라고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조세와 같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수수료가 기업이 공해를 유발하거나 공공자원에 손상을 주거나 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생기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반면에 정부가 여권을 발급하거나 특정활동을 허가할 때에는 혜택을 받게 되는 민간경제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용료·수수료의 수는 총 4,449종으로 처리유형은 <표 6>과 같이 신고, 허가 등 모두 26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신고가 1,175종으로 26.41%, 허가가 724종으로 16.27%, 승인이 631종으로 14.1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 세 유형이 전체의 56.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처리유형별 수수료

(단위: 종, %)

구분	계	신고	허가	승인	등록	교부	검사	증명	인가	지정	확인	기타
계	4,449	1,175	724	631	281	255	124	153	187	185	92	642
구성비	100.00	26.41	16.27	14.18	6.32	5.73	2.79	3.44	4.20	4.16	2.07	14.43

주 : 기타에는 기타(351)외에 시험(53), 면허(37), 인정(38), 추천(15), 보고(38), 이의(41), 검정(16), 진정(3), 인증(22), 건의(4), 질의(2), 제출(16), 신청(2), 청구(1), 특허(3) 포함된 수입.

자료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1998

<표 7>은 사용료·수수료를 관련부처별로 정리한 것으로 부처별 수수료의 격차는 매우 심하다. 가장 많은 부처는 건설교통부로 603종으로 전체의 13.5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해양수산부 457종, 산업자원부 451종으로 각각 전체의 10.27%, 10.14%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적은 곳은 기상청으로 3종 0.0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민원사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7> 부처별 수수료

(단위: 종, %)

구 분	수수료수	구성비	구 분	수수료수	구성비
계	4,449	100.00			
공 통	23	0.52	환 경 부	253	5.69
국가보훈처	65	1.46	노 동 부	185	4.16
공정거래위원회	5	0.11	건설교통부	603	13.55
청소년보호위원회	4	0.09	해양수산부	457	10.27
재정경제부	72	1.62	국 세 청	186	4.18
통 일 부	50	1.12	관 세 청	145	3.26
외교통상부	23	0.52	조 달 청	9	0.20
법 무 부	116	2.61	병 무 청	28	0.63
국 방 부	71	1.60	경 찰 청	96	2.16
행정자치부	184	4.14	기 상 청	3	0.07
교 육 부	90	2.02	농촌진흥청	64	1.44
과학기술부	30	0.67	산 립 청	126	2.83
문화관광부	238	5.35	중소기업청	37	0.83
농 립 부	234	5.26	특 허 청	36	0.81
산업자원부	451	10.14	식품의약품안전청	104	2.34
정보통신부	137	3.08	철 도 청	45	1.01
보건복지부	243	5.46	해양경찰청	36	0.81

자료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1998

라. 부담금

부담금은 경제적 혜택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편익(benefit)에 따른 비용부담을 기초로 하는 편익부담금(benefit-based taxes)과 경제행위에 따른 책임(liability)을 강조하는 책임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²¹⁾

우선 편익부담금은 공공재(公共財)의 사용과 관련되어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용수수료의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편익부담금은 부담의 구조·성격은 물론 납부자의 부담과 이를 통해 조달된 재원으로부터의 편익이나 서비스의 관계에 있어서 사용수수료와 차이가 있다. 편익부담금은 사용수수료에 비해 비용이나 용도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비율(uniform rule)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휘발유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고속도로나 국도를 사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편익부담금을 지불

21) 이와 같은 구분은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손피자부담금 등 법적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며, 단순 비교를 한다면 수익자부담금은 편익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과 손피자부담금을 책임부담금으로 간주한다고 할 수 있음.

해야 한다. 따라서 편익부담금은 고속도로 통행료와 같은 사용수수료에 비해 편익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편익부담금은 소득세와 같은 일반적인 조세보다는 편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편익부담금은 때로 상호보조금(cross-subsidy)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다시 말해 어떤 한 그룹이 비용보다는 더 많은 부담금을 지불하지만, 다른 그룹은 적은 부담금을 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담금을 많이 납부하는 그룹이 덜 지불하는 그룹을 보조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용자 수수료의 경우에도 상호보조금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익부담금과 사용자 수수료는 정도의 차이에 있지 성격이 다르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편익부담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43종에 이르고 있다. 이중 28종은 특정한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관리되고 있는 반면, 나머지 15종은 방조제, 산림, 하천 등 자원활용과 관련하여 수익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표 7>에서 편익부담금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책임부담금(liability-based taxes)은 위험을 줄이거나 손실·부상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부과된다. 정부가 손실을 끼친 경제주체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손실의 원인과 관련이 있는 생산물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도 한다. 책임부담금 형태의 부담금은 환경문제나 제3자에게 손실을 주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책임부담금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도 하며, 따라서 최종가격의 범위 안에서 관련된 재화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편익부담금이 사용수수료와 유사한 것처럼 책임부담금도 규제수수료와 비슷한 점이 있다. 환경문제에 부과되는 책임부담금은 그 문제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험의 부담은 보험(insurance)을 대체할 수도 있다. 잠재적 손실과 책임부담금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하게 되며, 그 관계의 강도가 클수록 책임부담금은 실제적인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책임부담금은 모두 35종에 이르며, 이중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관리되는 고용, 환경 등 특정목적과 관련된 책임부담금이 21종이다. 그리고 14종은 도로, 방조제, 산림,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훼손 등에 책임을 묻는 일반적인 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8>은 35종의 책임부담금을 보여주고 있다.

마. 기타

기존에 준조세 등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조세의 공공부담이란 개념을 토대로 할 때 목적세, 사회보험료, 사용료·수수료, 부담금 등에 속하지 않는 것을 기타 조세의 공공부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타 조세의 공공부담에는 보험이나 공제(控除)의 성격을 띤 기금이나 사업자 단체의 회비 및 특정 기부금이 해당된다. <표 9>에서는 기타 조세의 공공부담을 보여주고 있다.

	명칭	근거법	세입(조성)	(위탁)관리	기타
1	석유수입 부과금	석유사업법	에너지 및 자원관리 특별회계	산업자원부	-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판매업자
2	가스안전관리 부과금				
3	LNG수입 부과금	석탄(판매) 부과금			- 무연탄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의 결손보전과 관계사업비용 충당 - 석탄 또는 석탄가공 제품의 판매 가격 최고액 지정시 부과금 포함
4	가스안전관리 부과금				
5	석탄(판매) 부과금	광업법			- 공업의 균형발전과 환경·유통 등 산업기반 구축 -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에서 완료된 기술을 사용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기술료 수입의 일부
6	광물수입· 판매부과금				
7	산업기반기금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출연금	공업발전법	산업기반기금(공)	대한염업조 합 (산업자원부)	
8	염수입부담금				염관리법
9	과학기술진흥 기금 부담금	과학기술진흥 법	과학기술진흥기 금(공)	한국종합기 술금융(주) (과학기술부)	
10	농수산물수입 이익부과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1	수입양곡판매 부과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 정기금(공)	- 국내양곡가격의 안정 - 양곡수입자, 양곡판매업자, 양곡가공업자	
12	양곡수입이익 부과금				축산업법
13	축산물수입 이익금	인삼산업법	인삼산업진흥기 금(기)	인삼협동조 합중앙회 (농림부)	
14	인삼류 수입납입금				한국국제교류 재단법
15	국제교류기금 기여금	국제교류기금(기)	국제교류기금(기)	- 여권신청자	

주: (공)은 공공기금, (기)는 기타기금임.

<표 7> 편익부담금(계속)

	명칭	근거법	세입(조성)	(위탁)관리	기타
16	관광진흥개발 기금 카지노사업체 납부금 해외출국자 부담금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 금(공)	한국산업은 행 (문화관광부)	- 관광사업 발전과 관광수입 증대
17	국민체육진흥 기금 부가금	국민체육진흥 법	국민체육진흥기 금(기)	국민체육진 흥공단 (문화관광부)	- 체육진흥사업지원 재원확보 - 체육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18	문화예술진흥 기금 기부금, 모금액	문화예술진흥 법	문화예술진흥기 금(기)	한국문화예 술진흥원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활동 사업 및 활동지원 - 공연장·박물관 및 미술관·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제로부터의 모금액
19	정보화촉진기 금 기간통신사업 자 출연금	정보화촉진기 본법	정보화촉진기금 (공)	정보통신연 구원 (정보통신부)	-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조성 등 - 기간통신사업자 총R&D투자의 10% 이상
20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 기금 출연금	발전소주변지 역지원에 관한 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 (기)	한국전력공 사 (산업자원부)	- 한국전력공사의 출연금
21	도로교통안전 협회기금 개인 및 단체분담금	도로교통법	도로교통안전협 회기금(기)	도로교통안 전협회 (경찰청)	- 교통안전 계몽 및 교육 등 - 개인 : 운전면허소지자,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 단체 : 한국도로공사, 자동차손해보험 책임보험 사업자, 타이어제조업자
22	교통안전기금 분담금	교통안전공단 법	교통안전기금(기)	교통안전공 단 (건설교통부)	- 자동차 운송·대여·정비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항공운송 및 사용사업자, 사설철도 경영자의 분담금 - 자동차·철도차량·산업차량·선박 및 항공기 제작조립업자의 분담금
23	해외건설진흥 기금 해외건설업자 출연금	해외건설촉진 법	해외건설진흥기 금(공)	해외건설협 회 (건설교통부)	- 해외건설의 지속적 안정과 성장재원 확보
24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 에 관한 법률	토지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 토지구 토지정책과	- 부과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특별회계(50%) 및 지방자치단체(50%)
25	국민건강증진 기금 출연금	국민건강증진 법	국민건강증진기 금(공)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26	다목적댐주변 지역지원사업 출연금	특정다목적댐 법 제42조의 3		건설교통부	- 부담주체는 수자원공사(정부투자기관)
27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수도법 제6조의 2		관리청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부담주체는 수자원공사(정부투자기관) - 수도사업자 출연금(70%), 국고보조(30%)
28	국립공원관리 공단	자연공원법 제49조의 15		국립공원관 리공단	- 공원내 청소원인자

<표 7> 출연회부담금(계속)

	명칭	근거법	세입(조성)	(위탁)관리	기타
29	방조제관리법에 의한 관리비	방조제관리법 제6조		농림부 도	- 국가관리방조제 : 농림부장관 - 지방자치단체관리방조제 : 도지사
30	산림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산림법 제64조		산림청	
31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부담금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관리기관 또는 입주기업체 협의회	
32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건설비용 부담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사업자	
33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농어촌전화촉진법 제3조		한국전력공사 (전기사업자)	
3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개발부담금	국토이용관리법 제3조의 2		국가	
3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		사업시행자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용자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업시행자	
37	공고시행관리자의 부담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4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	
38	하천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하천법 제58조		관리청	
3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 제1항		한국수자원공사	
40	특정다목적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특정다목적법 제10조		건설교통부	
4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이용자부담금	관광진흥법 제32조		사업시행자	
42	항만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항만법 제54조		관리청	
43	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도시재개발사업법 제58조		사업시행자	

<표 8> 책임부담금

	명칭	근거법	세입(조정)	(위탁)관리	기타
1	장애인고용 촉진기금 사업주 부담금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기금(공)	노동부 장애인 고용과	- 장애인 미고용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기준율에 미달할 경우 매년 해당부담금을 부과
2	직업훈련 분담금촉진 기금	직업훈련촉진 기금법	직업훈련촉진 기금(공)	노동부 고용정책실 훈련정책과	※ 1998, 12. 31. 폐지 ¹⁾
3	진폐기금 사업주 부담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기금(공)	노동부 산업보건 환경과	
4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 출연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특정물질사용합 리화기금(기)	한국정밀 화학공업 진흥회 (산업자원부)	- 특정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5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부	- 부과징수 : 시도지사 - 수질환경개선부담금, 대기환경개선 부담금, 자동차개선부담금
6	환경오염 방지사업 비용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관리 공단 (환경부)	
7	배출부과금	수질환경 보전법 대기환경 보전법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부	
8	수질개선 부담금	먹는물관리법	시도, 시·군 또는 자치구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부	- 시도징수비용으로 10%, 잔여금액의 50% 시·군 또는 자치구의 세입, 50% 환경개선특별회계 - 판매가액의 20%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9	폐기물처리 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부	
10	폐기물예치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 특별회계	환경부	
11	농지전용 부담금	농어촌특별 조치법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진흥 공사 (농림부)	- 전용억제 및 개발시 이익환수 - 부담금은 특별회계(93%), 자치단체(5%), 농어촌진흥공사(2%)에 전입 또는 귀속
12	산지전용 부담금	산림법		산림청	- 전용농지 또는 산지 공시지가의

주: 1) 직업훈련촉진기금의 직업훈련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통합하
여 시행될 예정임.

	명칭	근거법	세입(조성)	(위탁)관리	기타
13	대체농지 조성비 <표 8> 책임부담금(계속)	농지법	농지관리 기금(공)	농어촌진흥공사 (농림부)	- 전용역제 및 대체 농지재원 확보 -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사업시행자 - 농지별, 단위당 단가고시
14	대체조림비	산림법	임업진흥 기금(공)	임업협동 조합중앙회 (농림부)	- 전용역제 및 대체 조림재원 확보
15	대체초지 조성비	초지법	축산발전 기금(기)	축산업협동 조합중앙회 (농림부)	
16	초과사육 부담금	축산업법			- 감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부담 - 부과실적 없음
17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부담금	원자력법	원자력연구개발 기금	과학기술부	- 한국전력공사의 부담금
18	교통유발 부담금	도로교통 촉진법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사업 특별회계	건설교통부 지방자치 단체	-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과태료
19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시·도	건설교통부 지방자치 단체	- 특별회계(50%), 시·도(50%)
20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1990)	토지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건설교통부 토지구 토지관리과	※ 폐지(1998. 1. 1. 부과분부터 적용)
21	항공기 소유부담금	항공법	교통시설 특별회계	건설교통부	- 항공운송사업자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업시행자
23	자연공원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자연공원법 제31조			공원관리청
24	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제53조			수도사업자
25	수도법에 의한 손피자부담금	수도법 제54조			수도사업자
26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등	하수도법 제32조			공공하수도 관리청 - 손피자부담금 포함
27	도시공원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도시공원법 제16조			공원관리청
28	도로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제64조			관리청

	명칭	구거범	세입(조성)	(위탁)관리	기타
<표 8>	도로법에	구거범			
29	의한 손괴자부담금	도로법 제67조		관리청	
30	하천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하천법 제56조		관리청	
31	한국수자원공 사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한국수자원 공사법 제28조 제3항		한국수자원 공사	
32	한국수자원공 사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한국수자원 공사법 제28조 제2항		한국수자원 공사	
33	관광진흥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관광진흥법 제32조		사업시행자	
34	농어촌도로정 비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1조		군수	
35	항만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항만법 제53조		관리청	

<표 9> 기타

	명칭	근거법	세입(조성)	(위탁)관리	기타
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신 용보증기금 (기)	농협중앙회 (재정경제부)	
2	예금보험기금 은행 출연금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기금 (공)	예금보험 공사 (재정경제부)	- 신용관리기금, 보증보험기금 통합
3	신용보증기금 금융기관 부담금	신용보증기금 법(1976)	신용보증기금 (기)	신용보증 기금 (재정경제부)	- 금융기관 대출금의 3/1000
4	기술신용보증 기금 금융기관 출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1989)	기술신용보증 기금(기)	기술신용 보증기금 (재정경제부)	- 금융기관 용자금의 3/1000
5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출연금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기)	한국 주택은행 (재정경제부)	- 주택금융기관 대출금의 3/1000
6	채신보험기금 보험료	채신보험특별 회계법	채신보험기금 (기)	채신금융 진흥회 (정보통신부)	
7	수출보험기금 보험료	수출보험법	수출보험기금(기)	한국수출 보험공사 (산업자원부)	- 무역협회(50억원) 출연
8	중소기업공제 사업기금 공제부금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중소기업공제 사업기금(기)	중소 기업은행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자 공제부금,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등의 출연금
9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민간임의 출연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 에 관한 법률(1996)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청)	
10	보훈기금	보훈기금법	보훈기금(공)		- 군인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기부금
11	사회복지 사업기금 기부금	사회복지사업 기금법	사회복지 사업기금		※ 1998년말 폐지 ¹⁾
12	과학교육기금 기부금	과학교육 진흥법	과학교육기금 (공)	교육부 과학기술과	
13	대한적십자 회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14	상공회의소 회비	상공회의소법			

주 : 1)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의 적립금은 동법에 의해
설립되는 전국공동모금회로 이관

IV. 재정통계자료를 통해 본 조세외 공공부담의 규모

1. 통합재정세입상의 조세의 공공부담 총계규모 추산²²⁾

가. 통합재정의 세입의 구조와 조세의 공공부담

정부·공공부문의 모든 재정활동은 통합재정(統合財政)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 통합재정은 IMF의 기준에 따라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통계수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조세의 공공부담을 개략적(概略的)이나마 추산할 수 있다. 우선 통합재정에서 어떻게 조세의 공공부담을 추출할 수 있는가를 통합재정의 기본구조를 통해 살펴본다. 통합재정을 작성할 때에는 복잡다기한 정부거래를 세입과 세출 그리고 보전재원 등 셋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 때의 세입과 세출은 통상적인 정부회계 통계상의 세입세출과는 개념이 다르다. 다시 말해 정부회계(예산서 및 결산서)에서는 회계연도 내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또한 모든 지출을 세출로 파악하는데 반하여, 통합재정에서는 정부의 수입을 세입, 보전수입 및 용자회수로 분류하고 세출은 보전거래 및 용자지출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세입은 정부로 유입되는 수입 중 비상환성 수입만을 말하며, 상환성 수입인 국채발행수입·차입 등은 세입으로 분류되지 않고 보전재원 수입으로 분류된다. 세입은 비상환성 수입에 해당하는 한 유상·무상을 불문하여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으로 구분되는데, 후자에는 자본재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이 포함된다. 경상수입에는 모든 조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포함되며 세외수입에는 재산수입, 수수료, 비산업적인 판매, 정부기업의 경상잉여 등과 같은 유상수입과 벌금, 몰수금, 기타 개인기여금 등과 같은 무상수입이 있다. 특히 조세수입은 공공정책의 수행을 위해 정부가 징수하는 강제적이고 무상인 비상환성 기여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기타 부가세 및 과징금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조세의 공공부담의 구체적 유형인 사용수수료, 규제수수료, 편익부담금, 책임부담금, 그리고 목적세 등과 통합재정의 분류항목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세입 중 세외수입은 조세의 공공부담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조세수입 중 방위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목적세로서 조세의 공공부담의 한 유형이 된다. 따라서 통합재정에서 목적세, 사회보장기여금, 세외수입 등을 조세의 공공부담으로 추산하여 조세수입 또는 중앙정부 총수입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표 1>에서 통합재정상의 중앙정부 세입의 경제적 분류 항목을 제시하고 짙은 색으로 조세의 공공부담을 나타냈다.

<표 10> 통합재정상의 중앙정부 세입의 경제적 분류 항목

22) 통합재정을 이용한 연구는 OECD(1990), 노기성(1989) 등을 참고할 수 있음.

I. 경상수입(Ⅱ+Ⅲ)			
Ⅱ. 조세수입			
	1. 소득 및 이익세		
		1.1 개인	소득세
		1.2 법인	법인세
		1.3 기타소득 및 이익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2. 사회보장기여금		
		2.1 피고용자부담금	
		2.2 고용주부담금	
		2.3 개인취업자·미취업자	
		2.4 기타사회보장기여금	
	3. 급여 및 인력세		
	4. 재산세		
		4.1 부동산세	
		4.2 순자산세	개인, 법인
		4.3 상속 및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4.4 자산거래세	증권거래세
		4.5 임시재산세	자산재평가세
		4.6 기타경상재산세	
	5. 재화 및 용역세		
		5.1 일반매상세·거래세	부가가치세
		5.2 선별재화세	주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5.3 전매익세	전매익세
		5.4 선별용역세	전화세
		5.5 재산이용영업활동허가세	
	6. 국제무역거래세		
		6.1 수입관세	관세 기타수입부과금
		6.2 수출관세	
		6.3 수출입전매이익세	
		6.4 기타무역거래세	
	7. 기타조세		
		7.1 인두세	
		7.2 인지세	
		7.3 기타	과년도수입 기타내국세 방위세 기타지방양여세 기타교육양여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주 : 짙은 색의 항목은 조세의 공공부담을 나타냄

<표 10> 통합재정상의 중앙정부 세입의 경제적 분류 항목(계속)

Ⅲ. 세외수입			
	8. 부서기업잉여 및 재산수입		
		8.1 부서기업잉여	
		8.2 비금융공기업수입	
		8.3 기타재산수입	
	9. 수수료, 요금 등 비영업적 판매		
	10. 벌금 및 몰수금		
	11. 공무원연금 및 복지기금 기여금		공무원 기여금
	12. 기타세외수입		
Ⅳ. 자본수입			
	13. 고정자산매각		
	14. 재고자산매각		
	15.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		
	16. 자본이전수입	16.1 국내자본이전수입	
		16.2 해외자본이전수입	
Ⅴ. 무상원조	17. 해외 (국제기구 제외)		
	18. 지방정부		
	19. 국제기구		
	20. 국제기구의 국내기구		
Ⅵ. 총수입 및 무상원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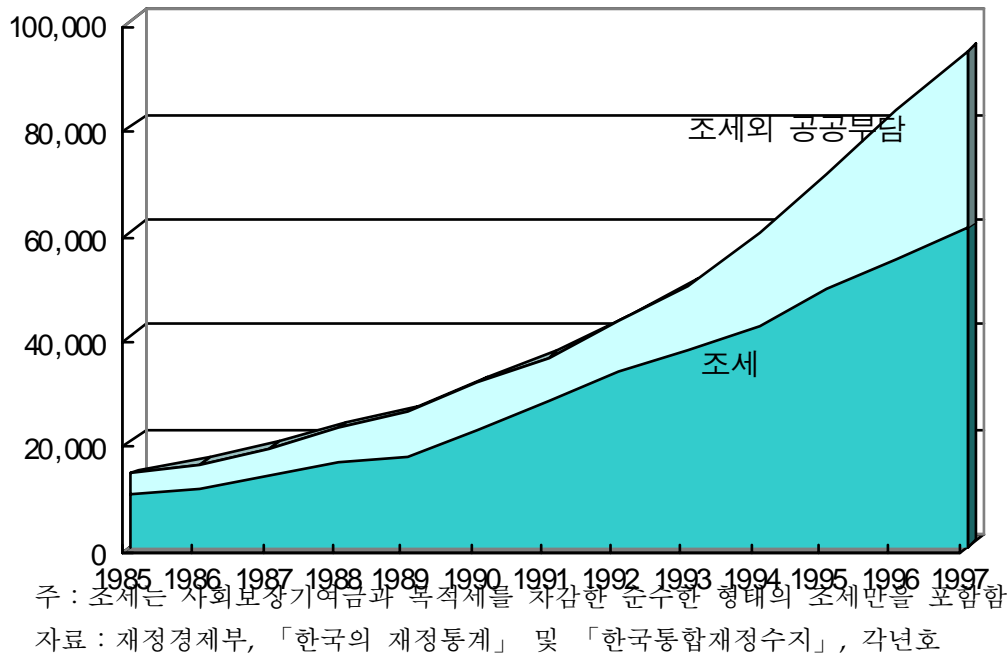
주 : 짙은 색의 항목은 조세의 공공부담을 나타냄

나. 통합재정상의 조세의 공공부담 규모

<그림 3>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통합재정 중 조세수입과 조세의 공공부담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조세수입은 통합재정상의 조세수입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목적세를 차감하여 조세의 공공부담으로 간주함으로써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순수한 형태의 조세수입만을 의미한다. 통합재정에서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조세의 공공부담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1994년 이후 조세의 공공부담의 증가폭이 조세수입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통합재정을 통해본 조세수입과 조세의 공공부담 추이

(단위 : 10억원)



이와 같은 사실은 <표 11>에 나타난 통합재정에서 중앙정부의 총수입 및 무상원조, 조세수입, 조세의 공공부담 등의 수치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총수입과 무상원조는 1985년 13조 9,220억원에서 1997년 95조 6,276억원으로 약 6.9배 증가하였다.²³⁾ 이 중 조세수입은 9조 9,178억원에서 60조 6,839억원으로 6.1배 늘어난 반면, 조세의 공공부담은 3조 8,192억원에서 33조 4,692억원으로 8.8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총수입 및 무상원조의 증가에서 차지하는 조세수입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조세의 공공부담은 늘어났다. 조세의 공공부담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1985년에는 목적세가 조세의 공공부담의 51.8%, 세외수입이 41.9%, 사회보장기여금이 6.3%로 목적세와 세외수입이 조세의 공공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97년 현재 조세의 공공부담에서 차지하는 목적세는 39.8%, 세외수입은 34.8%로 1985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24.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득증대에 따른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의 수요 증대와 함께 국민연금제도 도입(1988년)에 따라 그 재원의 대부분이 조세수입보다는 조세의 공공부담인 사회보장기여금에 의존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1> 통합재정을 통해본 조세수입과 조세의 공공부담 추이

23) 참고로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재정규모 증가세는 같은 기간 명목국내총생산(GDP)(1985년 82조 621억원 → 1997년 420조 9,867억원)의 증가폭 5.1배를 상회하는 것임.

(단위 : 10억원, %)

	1985	1990	1994	1995	1996	1997
총수입 및 무상원조(A)	13,922.0	32,089.3	61,109.6	72,087.5	84,272.4	95,627.6
조세수입(B) ¹⁾	9,917.8	21,960.2	41,897.9	49,015.2	54,554.8	60,683.9
B/A	71.2	68.4	68.6	68.0	64.7	63.5
조세의 공공부담(C=D+E+F)	3,819.2	9,372.1	17,827.2	21,847.3	28,416.2	33,469.2
C/A	27.4	29.2	29.2	30.3	33.7	35.0
목적세(D)	1,980.2	4,951.9	5,363.8	7,759.3	10,405.4	13,316.4
D/A	14.2	15.4	8.8	10.8	12.3	13.9
D/C	51.8	52.8	30.1	35.5	36.6	39.8
사회보장기여금(E)	239.0	1,510.1	4,671.8	5,536.1	7,551.1	8,495.0
E/A	1.7	4.7	7.6	7.7	9.0	8.9
E/C	6.3	16.1	26.2	25.3	26.6	25.4
세외수입(F)	1,600.0	2,910.1	7,791.6	8,551.9	10,459.7	11,657.8
F/A	11.5	9.1	12.8	11.9	12.4	12.2
F/C	41.9	31.1	43.7	39.1	36.8	34.8

주 : 1) 조세는 사회보장기여금과 목적세를 차감한 순수한 형태의 조세만을 포함함

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의 재정통계」 및 「한국통합재정수지」, 각년호

(1) 목적세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목적세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교통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네 가지 종류이다. 특히 방위세는 1991년 1월 1일 폐지되기까지 목적세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기타 목적세는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표 12>에 나타나듯이 1997년 현재 목적세는 13조 3,164억원으로 1985년에 비해 6.7배 증가한 것으로 이중 교육세가 5조 8,396억원, 교통세가 6조 1,49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세 규모는 통합재정상 조세수입(82조 3,613억원)의 16.2%,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조세수입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2)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

통합재정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은 개인이나 고용주의 부담으로 조달되고 있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정부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되고 통제를 받으며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세와 성격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IMF 기준에 의해 작성되는 통합재정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조세수입으로 간주되고, 조세부담률의 계산에도 이를 반영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일반적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을 조세수입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조세부담률 계산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²⁴⁾

한편 통합재정에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총액으로 처리되고 있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항목별 수치를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 1997년 현재 사회보장기여금은 8조 4,590억원으로 1985년의 2,390억원에 비해 무려 35.5배 증가하였다. 특히 이중 고용주 부담금은 5조 2,742억원으로 피고용자 부담금 3조 868억원보다 1.7배 많다. 이와 같은 사실이 기업의 복지비용이 많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통합재정상 목적세 추이

(단위 : 10억원, %)

	1985	1990	1994	1995	1996	1997
목적세	1,980.2	4,951.9	5,363.8	7,759.3	10,405.4	13,316.4
교육세	321.2	521.3	2,539.6	2,993.1	4,081.2	5,839.6
방위세	1,501.9	4,093.6	76.7	63.1	14.3	4.4
교통세	157.1	337.0	2,457.1	3,371.8	4,823.9	6,149.4
농어촌특별세	-	-	290.4	1,331.3	1,486.0	1,323.0
목적세/통합재정상 조세수입	16.4	17.5	10.3	12.5	14.4	16.2
목적세/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조세수입	16.6	18.4	11.3	13.7	16.0	18.0

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의 재정통계」 및 「한국통합재정수지」, 각년호

<표 13> 통합재정상 사회보장기여금 추이

(단위 : 10억원, %)

	1985	1990	1994	1995	1996	1997
사회보장기여금	239.0	1,510.1	4,671.8	5,536.1	7,551.1	8,495.0
피고용자부담금	4.3	440.9	1,694.6	2,159.8	2,804.6	3,086.8
고용주부담금	202.8	1,009.6	2,880.5	3,275.5	4,620.8	5,274.2
공무원 및 복지기금기여금 ¹⁾	31.9	59.6	96.7	100.8	125.7	134.0

주 : 1) 공무원 및 복지기금기여금은 통합재정에서 세외수입으로 간주되는 항목임.

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의 재정통계」 및 「한국통합재정수지」, 각년호

(3) 세외수입

통합재정에서 세외수입은 토지 및 건물대여료 같은 재산수입, 수수료, 부담금, 정부기업의 정상잉여 등과 같은 유상수입과 벌금, 몰수금, 기타 개인기여금 등과 같은 무상수입으로 구성된다. 1997년 현재 세외수입은 11조 6,578억원으로 1985년과 비교하여 7.3배 가량 증가하였다. 개산수입, 수수료, 벌금 등 각 구성항목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수료나 벌금 등이 1995년 이후에 주목을 끈다.

24) 다만 보조적으로 국민부담률이란 표현을 사용해 조세수입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해 계산하고 있음.

<표 14> 통합재정상 세외수입 추이

(단위 : 10억원, %)

	1985	1990	1994	1995	1996	1997
세외수입	1,600.0	2,910.1	7,791.6	8,551.9	10,459.7	11,657.8
부서기업잉여 및 재산수입	1,088.0	1,708.5	3,366.2	3,649.1	4,600.0	5,682.1
수수료·요금등비영업적판매	311.2	533.6	886.1	1,223.1	1,518.1	1,386.5
벌금 및 몰수금	161.1	568.0	1,736.9	3,093.7	3,502.2	3,905.9
기타세외수입	39.7	100.0	1,802.4	586.1	839.3	683.3

자료 : 재정경제부, 「한국의 재정통계」 및 「한국통합재정수지」, 각년호

<참고> 통합재정으로 본 주요국의 조세외 공공부담 비교

통합재정통계가 IMF의 분류기준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국의 통합재정에 나타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비교하면 <부표 1>과 같다. 우리 나라의 총수입(무상원조 제외)에 대한 세외수입의 비중은 12%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본(15%)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프랑스(6%)와 미국(7%)에 비하면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부표 1> 통합재정을 통해본 조세외부담의 국제비교 I (중앙정부)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프 랑 스
총수입(A)	95,628	1,530.66	99,866	254,625	3,270.7
조세수입(B)	82,361	14,123.17	83,848	234,589	3,060.4
B/A	0.86	0.93	0.84	0.92	0.94
순조세수입	74,000	918.23	57,408	190,839	1,652.7
사회보장기여금	8,361	504.94	26,440	43,750	1,407.7
세외수입(F)	11,792	107.2	15,429	19,502	204.2
C/A	0.12	0.07	0.15	0.08	0.06
부서기업잉여 및 재산수입	5,682	57.60	8,565	11,761	41.2
수수료,요금등비영업적수입	1,387	12.56	1,800	2,987	113.4
벌금 및 몰수금	3,906	1.74	249	692	11.5
공무원 및 복지기금기여금	134	10.18	558	1,897	
기타 세외수입	683	25.12	4,257	2,165	38.1

주 : 한국(97), Billions of Won / Year Ending Dec. 31; 미국(96), Billions of Dollars / Year Ending Sep. 30; 일본(93p), Billions of Yen / Year Beginning Apr. 1; 영국(95), Millions of Pounds / Year Ending Dec. 31; 프랑스(96), Billions of Francs / Year Ending Dec. 31

자료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7

그러나 사회보장기여금과 목적세를 조세의 공공부담으로 재분류하면 실질적인 조세외부담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를 나타낸 것이 <부표 2>이다. 우리나라의 총수입대비 조세의 공공부담의 비중은 35%이다. 이 분류에 따른 각국의 총수입대비 조세의 공공부담의 비중은 프랑스가 49%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일본(42%), 미국(40%), 한국(35%), 영국(25%) 순서가 된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의 사회보장기여금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목적세를 조세수입으로 간주한다면 조세의 공공부담은 총수입 대비 21%로 낮은 수준이다.)

<부표 2> 통합재정을 통해본 조세외부담의 국제비교 II (중앙정부)

	한 국	미 국	일 본	영 국	프 랑 스
총수입(A)	95,627.6	1,530.66	99,866	254,625	3,270.7
조세수입(B)	60,683.9	918.23	57,408	190,839	1,652.7
B/A	0.63	0.60	0.57	0.75	0.51
조세의 공공부담(C=D+E+F)	33,469.2	612.14	41,869	63,252	1,611.9
C/A	0.35	0.40	0.42	0.25	0.49
목적세(D)	13,316.4				
D/A	0.14				
D/C	0.40				
교육세	5,839.6				
방위세	4.4				
교통세	6,149.4				
농어촌특별세	1,323.0				
사회보장기여금(E)	8,495.0	515.12	26,998	45,647	1,407.7
E/A	0.09	0.34	0.27	0.18	0.43
E/C	0.25	0.84	0.64	0.72	0.87
고용주	3,086.8	223.31		18,239	466.9
피고용주	5,274.2	254.75	26,440	23,791	813.0
자가고용		26.88		1,583	127.8
공무원 및 복지기금기여금	134.0	10.18	558	1,897	
기타				137	
세외수입(F)	11,657.8	97.02	14,871	17,605	204.2
F/A	0.12	0.06	0.15	0.07	0.06
F/C	0.35	0.16	0.36	0.28	0.13
부서기업잉여 및 재산수입	5,682.1	57.60	8,565	11,761	41.2
수수료,요금등비영업적수입	1,386.5	12.56	1,800	2,987	113.4
벌금 및 몰수금	3,905.9	1.74	249	692	11.5
기타 세외수입	683.3	25.12	4,257	2,165	38.1

주 : 한국(97), Billions of Won / Year Ending Dec. 31; 미국(96), Billions of Dollars / Year Ending Sep. 30; 일본(93p), Billions of Yen / Year Beginning Apr. 1; 영국(95), Millions of Pounds / Year Ending Dec. 31; 프랑스(96), Billions of Francs / Year Ending Dec. 31

자료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1997

2. 1994 ~ 1997년도 예산상의 조세의 공공부담 규모

통합재정에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만을 집계 대상에 하기 때문에 정부활동을 포괄한다고 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므로 적어도 기타기금에 나타나고 있는 조세의 공공부담은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예산에 나타나 있는 조세의 공공부담을 회계 및 기금별로 살펴보기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 기타기금으로 나누어 예산자료 등을 사용하여 추산해볼 필요가 있다.

가. 일반회계상의 조세의 공공부담 규모

일반회계상의 세입은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조세의 공공부담은 조세수입중의 목적세, 세외수입중의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등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어 일반회계상의 조세수입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세외수입 가운데에서도 관유물매각대, 국공채 및 차입금 등 자본거래에 따른 수입은 제외된다.²⁵⁾

일반회계의 세입이 주로 조세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공공부담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체로 낮은 편이다. 199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조세의 공공부담의 비중은 10.9% 수준이었으나 1997년 현재 일반회계 세입예산 67조 5,786억원중 조세의 공공부담은 8조 2,428억원으로 그 비중이 12.2%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조세의 공공부담의 증가는 세외수입의 꾸준한 증가세와 목적세인 교통세가 1994년 3조 394억원에서 1997년에는 6조 1,494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특별회계상의 조세의 공공부담 규모

특별회계는 철도, 통신 등 기업특별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재정융자특별회계와 같이 특별한 자금을 보유해 운용할 때, 그리고 기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며, 1997년 현재 4개의 기업특별회계와 18개의 기타특별회계가 각 개별법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세입은 (조세수입 등으로 조달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세입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목적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전액 특별회계의 세입이 되고 있으며, 토지 및 건물대여료 등의 재산수입, 각종 부담금과 면허·수수료 등의 경상이전수입, 그리고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이 있다.

25) 통합재정에서의 세외수입에는 고정자산매각 등 자본수입(資本收入)이 포함되지 않음.

특별회계의 특성상 조세의 공공부담의 비중은 일반회계보다 크다. 1997년 현재 순계기준으로 45조 7,000억원이나 이중 조세의 공공부담은 16조 3,151억원으로 35.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세의 공공부담의 비중은 1994년 이후 32~35%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표 15> 일반회계상의 조세의 공공부담 추이 : 1994~1997년

(단위 : 백만원, %)

	1994	1995	1996	1997
일반회계(A)	43,250,000	49,987,914	57,962,100	67,578,600
조세수입 ¹⁾	41,524,088	48,097,696	56,056,791	64,033,533
세외수입	1,725,912	1,890,218	1,905,309	3,545,067
조세의 공공부담(B)	4,714,824	5,392,464	6,594,456	8,242,798
A/B	10.9	10.8	11.4	12.2
조세수입중 목적세	3,092,879	3,588,896	4,803,395	6,153,815
교통세	3,039,413	3,555,769	4,770,400	6,149,376
방위세	53,466	33,127	32,995	4,439
세외수입중 공공부담	1,621,945	1,803,568	1,791,061	2,088,983
재산수입	28,590	29,895	34,460	216,861
토지및건물대여료	10,436	8,749	10,375	12,838
정부출자수입	-	-	-	183,100
이자수입	15,715	16,846	17,738	19,777
기타재산수입	2,439	4,300	6,347	1,146
경상이전수입	1,364,293	1,527,576	1,471,843	1,552,430
별급및물수금	1,045,385	1,177,668	1,184,747	1,228,046
변상금및위약금	16,534	12,686	13,040	16,734
가산금	199,751	228,627	177,854	210,110
기타경상이전수입	102,623	108,595	96,202	97,54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78,718	195,132	222,314	244,485
관유물대여료	241	274	1,219	1,310
병원수입	16,167	16,434	22,697	26,127
입장료수입	2,221	2,000	2,328	1,976
면허료및수수료	45,600	53,480	56,191	66,944
입학금및수업료	102,628	112,130	126,409	133,576
항공항만및용수수입	80	65	64	12
실습수입	3,866	2,918	3,149	4,082
기타잡수입	7,915	7,831	10,257	10,458
수입대체경비수입	50,344	50,965	62,444	75,207
별급및물수금	0	0	8,994	5,457
입장료수입	1,647	1,646	1,812	2,724
면허료및수수료	47,625	48,216	50,708	65,551
기타잡수입	1,072	1,103	930	1,475

주 : 1)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양여세(주세, 전화세 등) 등 특별회계에 계상되는 국세는 제외된 수치임.

자료 : 재정경제부, 「예산개요 참고자료」, 각년호

<표 16> 특별회계상의 조세의 공공부담 추이 : 1994~1997년

(단위 : 백만원, %)

	1994	1995	1996	1997
특별회계 세입합계(A) ¹⁾	29,153,914	35,142,310	40,507,516	45,700,011
특별회계 세입중 조세의 공공부담(B=C+D+E+F)	9,355,545	12,380,140	13,392,906	16,315,140
A/B	32.1	35.2	33.1	35.7
특별회계중 국세분 합계 ²⁾	4,343,866	6,200,307	8,333,683	9,966,793
특별회계중 목적세(C)	2,569,119	4,530,182	5,977,599	7,162,589
농어촌특별세 ³⁾	-	1,543,200	1,590,023	1,323,004
교육세	2,569,119	2,986,982	4,387,576	5,839,585
재산수입(D)	140,035	252,387	284,090	371,184
경상이전수입(E) ⁴⁾	622,938	1,615,479	1,902,257	2,388,935
농지, 산림전용부담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65,300	241,711	293,949	370,000
석유수입부과금(에너지및자원관리특별회계)		587,619	584,629	691,564
석탄,연탄판매부과금(에너지및자원관리특별회계)		887		
등유판매부과금(에너지및자원관리특별회계)		118,020	184,428	270,443
LNG수입부과금(에너지및자원관리특별회계)			48,009	86,060
가스안전관리부과금(에너지및자원관리특별회계)				57,033
환경개선부담금(환경개선특별회계)	210,354		159,184	221,688
폐기물예치금 등(환경개선특별회계)			135,291	193,311
개발부담금(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62,290	78,001	70,383	55,284
택지조과소유부담금(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158,431	143,423	150,620	111,277
과밀부담금(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1,000	7,786	37,621
과태료(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100	50	100	100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F) ⁴⁾	6,023,453	5,982,092	5,228,960	6,392,432
입장료수입(산림청)	231	185	636	2,670
도로점용료(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300	1,000	3,400	5,423
손괴원인자부담금(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100	100	100	100
항공,항만및용수수입(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64,244	105,867	140,851	174,291
면허및수수료(등기특별회계)	43,408	51,944	74,934	109,940
교도소수입(교도작업특별회계)	21,300	23,000	24,500	25,500
병원수입(사업수입(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	164,492	102,887		
병원수입(국립의료원특별회계)	39,172	44,294	45,100	47,312
입학금및수업료(국립의료원특별회계)		32	20	35
면허및수수료(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83,411	88,521	97,803	94,238
면허및수수료(특허관리특별회계)	27,171	32,717	37,005	52,932
재화및용역판매수입(양곡관리특별회계)	1,126,435	981,576	1,086,120	1,770,141
재화및용역판매수입(철도사업특별회계)	1,407,046	1,551,794	1,560,115	1,681,564
재화및용역판매수입(통신사업특별회계)	1,309,499	1,527,228	1,761,942	1,956,602
재화및용역판매수입(조달특별회계)	55,623	61,220	58,196	71,231

주 : 1) 순계기준임.

2)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양여세(주세, 전화세 등) 등 특별회계에 계상되는 총 국세 수치임.

3) 농어촌특별세는 1994. 7. 1.부터 시행함에 따라 1994년 추경예산에서 계상된 3,480억원은 제외되어 있음.

4) 개별항목은 주요내역임.

자료 : 재정경제부, 「예산개요 참고자료」, 각년호

다. 공공기금상의 조세의 공공부담 규모

기금은 조성재원이나 사업의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기금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중 조성재원이나 사업의 공공성을 기준으로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에서 지정한 기금을 말하고 공공기금을 제외한 여타기금을 기타기금이라고 한다. 이중 공공기금은 재정활동의 일환으로 통합재정수지의 구성요소가 되며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표 17>에는 공공기금의 기금별 운용규모와 민간부담금을 정리하였다. 1997년 현재 우리 나라 공공기금의 수는 35개인데 이 중 18개가 기금조성에 민간부담금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 기금운용액의 19.4% 정도가 민간부담금의 기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담의 비중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93.47%, 고용보험기금 90.0%, 국민연금기금 56.5% 등으로 특히 사회보험료에 대한 민간부담금의 비중이 큼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민간부담금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라. 기타기금상의 조세의 공공부담 규모

<표 18>에서는 기타기금의 민간부담금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기금은 전체 39개 기금 중 29개가 기금조성에 민간부담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기금 역시 전반적으로 민간부담금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기금조성액에서 민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2.7%로 공공기금에 비해 민간 의존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통안전기금(1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95.1%) 등의 기금운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민간부담금이 차지하고 있는 기금들이 있고, 그 외에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61.8%), 보험보증기금(56.4%), 국제교류기금 (55.4%),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44.9%) 등은 절반 가량을 민간에 의존하는 기금들이다.

<표 17> 공공기금의 민간부담금 추이 : 1994~1997년¹⁾

(단위 : 억원, %)

	1994		1995		1996		1997	
	민간 부담금	계	민간 부담금	계	민간 부담금	계	민간 부담금	계
남북협력기금		860 (100.0)	1 (0.0)	2,998 (100.0)	1 (0.1)	1,957 (100.0)		1,756 (100.0)
과학교육기금	2 (6.7)	30 (100.0)	11 (40.7)	27 (100.0)	12 (15.8)	76 (100.0)	10 (16.9)	59 (100.0)
농지관리기금	1,451 (6.7)	6,835 (100.0)	1,975 (40.7)	9,226 (100.0)	2,005 (15.8)	10,517 (100.0)	1,800 (16.9)	11,176 (100.0)
산업기반기금	31 (1.0)	3,195 (100.0)	54 (1.5)	3,618 (100.0)	84 (1.6)	5,114 (100.0)		4,446 (100.0)
고용보험기금			3,390 (100.0)	3,390 (100.0)	7,800 (85.6)	9,115 (100.0)	8,001 (90.0)	8,888 (100.0)
국민연금기금	33,258 (61.6)	53,952 (100.0)	39,663 (61.6)	64,342 (100.0)	49,436 (52.0)	95,124 (100.0)	58,121 (56.5)	102,919 (100.0)
사회복지사업기금	40 (9.6)	417 (100.0)	49 (9.4)	520 (100.0)	51 (10.3)	494 (100.0)	30 (10.5)	285 (100.0)
직업훈련추진기금	698 (20.4)	3,422 (100.0)	820 (32.4)	2,532 (100.0)	417 (22.9)	1,823 (100.0)	503 (20.9)	2,403 (100.0)
진폐기금	1 (0.8)	130 (100.0)		145 (100.0)	1 (0.6)	168 (100.0)		185 (100.0)
장애인고용촉진 기금	551 (43.2)	1,275 (100.0)	612 (36.3)	1,684 (100.0)	681 (31.3)	2,178 (100.0)	694 (28.0)	2,481 (100.0)
관광진흥개발기금		400 (100.0)	12 (2.8)	424 (100.0)	179 (27.9)	642 (100.0)	196 (28.1)	697 (100.0)
정보화촉진기금	5,307 (68.6)	7,733 (100.0)	712 (8.2)	8,658 (100.0)	4,634 (35.9)	12,894 (100.0)	1,703 (12.5)	13,651 (100.0)
여성발전기금							20 (16.1)	124 (100.0)
과학기술진흥기금	438 (35.7)	1,226 (100.0)	421 (35.3)	1,194 (100.0)	432 (34.3)	1,259 (100.0)	545 (35.1)	1,553 (100.0)
보훈기금	447 (23.8)	1,880 (100.0)	412 (18.8)	2,197 (100.0)	434 (20.0)	2,172 (100.0)	454 (22.3)	2,037 (100.0)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			8,865 (98.5)	9,004 (100.0)	14,688 (87.7)	16,754 (100.0)	17,685 (93.4)	18,935 (100.0)
산림개발기금	199 (56.7)	351 (100.0)	215 (46.4)	463 (100.0)	219 (40.5)	541 (100.0)	240 (50.1)	479 (100.0)
해외건설진흥기금	1 (12.5)	8 (100.0)	3 (33.3)	9 (100.0)		16 (100.0)	2 (8.3)	24 (100.0)
합계 ²⁾	42,424 (14.0)	303,965 (100.0)	57,215 (14.6)	392,755 (100.0)	81,074 (17.3)	468,109 (100.0)	90,004 (19.4)	463,459 (100.0)

주 : 1) 운용규모 기준이며, ()안은 계에 대한 비중임.

2) 운용규모 전체합계임.

자료 : 재정경제부, 기금백서, 각년호

<표 18> 기타기금의 민간부담금 추이 : 1994~1997년¹⁾

(단위 : 억원, %)

	1994		1995		1996		1997	
	민간 부담금	계	민간 부담금	계	민간 부담금	계	민간 부담금	계
기술신용보증기금	1,303 (25.5)	5,107 (100.0)	1,273 (20.3)	6,272 (100.0)	1,448 (20.4)	7,110 (100.0)	1,651 (19.4)	8,498 (100.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742 (100.0)		1,318 (100.0)	79 (5.6)	1,406 (100.0)	96 (6.7)	1,437 (100.0)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려기금					116 (11.8)	983 (100.0)	45 (5.6)	798 (100.0)
신용보증기금		11,971 (100.0)	1,963 (20.1)	9,769 (100.0)	2,834 (24.2)	11,721 (100.0)	3,100 (21.0)	14,750 (10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99 (21.2)	1,409 (100.0)	321 (14.9)	2,150 (100.0)	381 (16.5)	2,303 (100.0)	370 (15.2)	2,435 (100.0)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429 (18.5)	2,317 (100.0)	133 (15.0)	885 (100.0)
국제교류기금	206 (57.9)	356 (100.0)	219 (56.6)	387 (100.0)	255 (57.3)	445 (100.0)	240 (55.4)	433 (100.0)
법률구조기금		15 (100.0)		16 (100.0)		19 (100.0)	5 (16.7)	30 (100.0)
서울대학교병원기금	1 (33.3)	3 (100.0)	3 (50.0)	6 (100.0)	3 (11.5)	26 (100.0)	4 (13.3)	30 (100.0)
사학진흥기금	1 (0.2)	466 (100.0)	2 (0.3)	788 (100.0)	1 (0.1)	1,018 (100.0)	2 (0.2)	1,320 (100.0)
국민체육진흥기금		2,014 (100.0)		1,987 (100.0)	406 (17.5)	2,322 (100.0)	463 (20.9)	2,217 (100.0)
문예진흥기금		672 (100.0)	50 (5.6)	886 (100.0)	198 (23.3)	850 (100.0)	170 (33.3)	510 (100.0)
잠업진흥기금	6 (7.5)	80 (100.0)	14 (17.5)	80 (100.0)	12 (13.0)	92 (100.0)	1 (1.0)	98 (100.0)
축산발전기금	3,300 (28.1)	11,731 (100.0)	2,809 (26.7)	10,535 (100.0)	3,266 (29.3)	11,150 (100.0)	2,520 (26.5)	9,522 (100.0)
인삼산업진흥기금		38 (100.0)		65 (100.0)	5 (6.8)	74 (100.0)		114 (1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 업기금	247 (97.6)	253 (100.0)	230 (96.6)	238 (100.0)	501 (98.6)	508 (100.0)	793 (95.1)	834 (100.0)
특정물질사용합리화 기금	43 (66.2)	65 (100.0)	47 (71.2)	66 (100.0)	49 (49.5)	99 (100.0)	43 (43.4)	99 (100.0)
염안정기금					97 (98.0)	99 (100.0)	67 (38.7)	173 (100.0)
교통안전기금	86 (100.0)	86 (100.0)	97 (97.0)	100 (100.0)	111 (100.0)	111 (100.0)	138 (100.0)	138 (100.0)
방송문화진흥기금	7 (100.0)	7 (100.0)	7 (100.0)	7 (100.0)	2 (22.2)	9 (100.0)		9 (100.0)

주 : 1) 운용규모 기준이며, ()안은 계에 대한 비중임.

자료 : 재정경제부, 기금백서, 각년호

<표 18> 기타기금의 민간부담금(계속)¹⁾

(단위 : 억원, %)

	1994		1995		1996		1997	
	민간 부담금	계	민간 부담금	계	민간 부담금	계	민간 부담금	계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422 (51.5)	820 (100.0)	572 (52.0)	1,101 (100.0)	741 (50.5)	1,468 (100.0)	661 (44.9)	1,471 (100.0)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170 (7.6)	2,238 (100.0)	174 (6.6)	2,630 (100.0)	269 (9.6)	2,792 (100.0)	331 (9.7)	3,413 (100.0)
보험보증기금	232 (71.4)	325 (100.0)	277 (65.3)	424 (100.0)	347 (61.4)	565 (100.0)	392 (56.4)	695 (100.0)
신용관리기금		2,833 (100.0)		3,536 (100.0)	274 (7.0)	3,921 (100.0)	482 (10.4)	4,643 (100.0)
예금보험기금						103 (100.0)	338 (83.0)	407 (100.0)
새마을금고안전기금		149 (100.0)		204 (100.0)	361 (83.4)	433 (100.0)		457 (100.0)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3,795 (56.3)	6,743 (100.0)	3,937 (62.1)	6,337 (100.0)	4,887 (60.6)	8,062 (100.0)	5,437 (61.8)	8,791 (100.0)
수출보험기금	260 (21.1)	1,230 (100.0)	287 (18.4)	1,563 (100.0)		2,021 (100.0)		2,868 (100.0)
채신보험기금			20,484 (42.1)	48,610 (100.0)	23,888 (36.7)	65,119 (100.0)	27,429 (37.7)	72,789 (100.0)
공무원연금기금	17,519 (40.7)	43,078 (100.0)	19,942 (45.2)	44,127 (100.0)	24,723 (48.3)	51,166 (100.0)	27,409 (51.3)	53,454 (100.0)
한국과학재단기금		170 (100.0)		584 (100.0)		260 (100.0)		202 (100.0)
합계 ²⁾	27,897 (26.2)	106,331 (100.0)	52,708 (32.0)	164,698 (100.0)	65,683 (32.8)	200,219 (100.0)	72,320 (32.7)	220,967 (100.0)

주 : 1) 운용규모 기준이며, ()안은 계에 대한 비중임.

2) 운용규모 전체합계임.

자료 : 재정경제부, 기금백서, 각년호

V. 결론 및 시사점

조세의 공공부담(租稅外 公共負擔)이란 사용재는 물론 정부나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준공공적인 재화와 서비스(quasi-public goods and services)에 적용하는 모든 민간부문의 공공부담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만 조세가 대다수의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특정 세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징수되며, 특정 혜택이나 손실과도 무관하지만, 조세의 공공부담은 특정 세입이나 특정 세출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혜택이나 손실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조세의 공공부담의 정의를 토대로 할 때, 공과금, 부담금, 분담금, 수수료, 사용료, 사회보험료,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 조세이외의 민간부담을 포괄하게 되며, 정부 및 공공부문의 재정활동을 거시적(巨視的) 측면에서 조세수입과 구분

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의 공공부담을 목적세, 사회보험료, 부담금, 사용료·수수료 등으로 세분하여 미시적(微視的)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조세의 공공부담은 교육세, 교통세 등 3종의 목적세²⁶⁾, 4대 사회보험 등 7종의 사회보험료, 4,449종의 사용료·수수료, 78종의 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통합재정(統合財政)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세의 공공부담은 1997년 현재 33조원을 넘고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총수입 가운데 1/3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조세의 공공부담의 증가폭은 조세수입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회계 및 기금별로 조세의 공공부담의 규모를 보면, 1997년의 경우 일반회계 67조 5,786억원의 12.2%, 특별회계 45조 7,000억원의 35.7%, 공공기금 46조 3,459억원의 19.4%. 그리고 기타기금 22조 967억원의 32.7% 등으로 단순합계를 하더라도 40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준조세 개념을 근거로 한 최근 손원익(1998)의 연구에서는 준조세 규모를 1997년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모든 부담을 포함할 때 약 1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법적 규정이나 직접적인 이득이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할 때 8조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사회보험 등을 참감한 부정적(否定的) 의미의 준조세는 1.6~1.9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준조세 규모는 조세의 공공부담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물론 이 같은 차이는 조세의 공공부담이 준조세 등을 포괄한 광의(廣義)의 개념을 토대로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개념상의 차이에 따른 규모의 많고 적음보다는 조세의 공공부담의 경제적인 의미나 성격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조세의 공공부담도 정부나 공공부문의 재정활동에 주요한 수입원(收入源)이기 때문에 거시적(巨視的) 의미에서 조세수입 등 다른 재정수입원과 함께 평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의 다양화와 함께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강조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기존 조세제도를 통한 세입(稅入)보다는 부담금이나 사용료·수수료 등 조세의 공공부담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준조세나 조세의 공공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이와 같은 부담이 어떻게 징수되고, 무엇에 사용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 절차나 과정이 효율적이며, 투명한가가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26)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지방세 중의 목적세는 제외함.

요약 및 정책과제

- 「OECD의 부담금에 대한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국민의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준조세 정비를 31대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수도권집중을 해소”의 소과제(小課題)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다. 행정자치부(재정경제과)가 주관이 되어 지방소재 기업의 육성과 기업의 당면 애로 해소차원에서 지방소재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기부금품 등 각종 준조세를 1998년 하반기까지 정비한다는 것이다.²⁷⁾ 이를 위해 기부금 접수실태 파악 및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정비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출연·위탁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1999년에는 약 1,200억원, 2000년부터는 매년 약 370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준조세 정비조치를 취했다는 발표를 하였다.²⁸⁾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기업 준조세에 관한 개혁을 1999년 32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은 그 성과를 추후에 검증해보아야 하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조세 정비가 부처별로 정책과제의 발굴이나 전시행정(展示行政)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나 가계 등 민간부문에서 생각하는 준조세와 정부가 주장하는 준조세에 큰 괴리(乖離)가 존재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사실 준조세라는 개념이 우리 나라에서만 조세이외의 부담을 통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법적 개념정의는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준조세에 대한 연구성과도 설문조사 등에 의한 실태파악에 머무른 채 준조세 규모의 많고 적음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해온 실정이다. 물론 준조세라는 개념이 우리 나라만의 특유한 경제구조, 예를 들면 명칭만을 부담금이나 분담금 등을 사용하여 세금(稅金)과 마찬가지로 징수할 수 있었던 관치(官治)위주의 경제운영이나 자발적인 동기를 무시한 채 기부금이나 정치헌금을 강요할 수 있었던 공권력의 강제성 등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환경,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의 다양화와 함께 (정부 및 공공부문의)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기능(market mechanism)을 강조하는 추세로 감안할 때, 기존 조세 제도를 통한 세입(稅入)보다는 부담금이나 사용료·수수료 등 조세이외의 부담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 조세이외의 부담은 소득세, 법인세 등 기존 조세의 대체 또는 보완형태의 재정수입이 됨으로써 우리 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재정수입에 대한 조세이외 부담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조세이외 부담의 증가는 기존 세제의 세율인상 등에 따른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정수입의 확보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최근 OECD의 보고서(1990, 1998)나 미국 의회예산국의 연구(1993)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조세이외 부담이 정부나 공공부문의 재정활동에 주요한 수입원(收入源)이기 때문에 거시적(巨視的)측면에서 조세수입 등 다른 재정수입원과 함께 평가 분석되어야 한다. 특히 준조세나 조세이외 부담이 단순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27) 기획예산위원회·국무조정실·관계부처합동(1998.6)

28) 기획예산위원회(1999. 1. 20)

이와 같은 부담이 어떻게 징수되고, 무엇에 사용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 절차나 과정이 효율적이며, 투명한가가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 보인다.²⁹⁾

이와 관련하여 OECD의 보고서(PUMA,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User Charging for Government Services, OECD, 1998)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과 각국의 사례는 큰 시사점을 전해주고 있다.

① 명확한 법률적 주체

- 사용자부담을 부과(징수)하는 법률적 주체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 이러한 주체는 사용자부담의 징수에 대한 일반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을 미리 정하여 놓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법률 제정 없이 사용자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사례 1>

핀란드 헌법은 모든 사용자부담은 법률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1992년 핀란드 의회는 User Charging Government Services Act를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어떤 종류의 정부서비스가 사용자부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명시하고 사용자부담은 어떤 근거에 의해 산정되는지를 상술하고 있다. 각 부처는 어떤 서비스가 사용자부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며 사용자부담이 법률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공포 하였다.

② 사용자와의 협조

- 사용자부담의 도입과 변경시 사용자와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용자부담 근거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를 할 수 있게 하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의견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자부담 시스템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 이러한 협의는 사용자부담이 부과되어야만 하는지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부담을 부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협의하는 회의라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협의는 미리 정해진 기간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29) 본 연구에서는 OECD의 정책제언을 통해 조세이의 부담에 대한 기본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 대안, 예를 들면 어떤 기부금은 폐지해야 한다거나 또는 어떤 분담금은 다급 부과금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등의 논의는 하고 있지 않음. 개별적인 조세이의 부담에 대한 논의는 대한상공회의소(1998)등을 참고할 수 있음.

- 사용자부담 시스템의 실행에 관한 질문(의문) 사항은 대부분 일선담당자에게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부담과 시스템의 운용의 근거는 일선담당자들에게 명확하여야 한다.

<사례 2>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최근 사용자부담에 의해 자금을 전부 조달하였다. 사용자부담은 매년 동 위원회에 의해 공표된 규제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규제를 채택하기 전에, 동 위원회는 그들이 원하는 부담에 대한 “제안된 규제”를 먼저 공표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의견을 구한다. “제안된 규제”에 대한 의견을 평가한 뒤에 위원회는 사용자부담에 대한 최종 규제를 공표한다.

③ 총비용의 산출(결정)

- 부담과 관련된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비용이 결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비용원칙은 그 의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완전히 커버하든 부분적으로 커버하든 간에 상관없이 수행되어야만 한다. 만약 의도가 비용을 완전히 커버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포함된 보조금의 정도를 분명히 해야만 한다.
- 완전한 비용은 서비스의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과 공유되는 비용(공통비용) 및 감가상각과 자본비용 등 비현금비용도 포함하여야만 한다.
- 완전한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특히 공통비용이 할당될 때 복잡하다. 비용을 산정하는데 드는 노력은 부담이 부과되는 서비스의 규모와 비례된다. 소규모 서비스의 경우는 정치한 비용회계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보다 공통비용을 할당하는 합리적인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비용부과는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사례 3>

미국 사회복지부는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정보기술 운영자이다. 평균적으로 사회복지부는 하루 2,100만건의 업무를 처리한다. 1998년 사회복지부는 각 업무의 비용을 서비스의 사용자와 연관시키는 비용귀속시스템을 입법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전에는, 모든 정보기술 비용은 Office of System Operations에 전부 귀속되었다. 광범위한 비용회계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처음 단계에서는 4/5 정도의 비용만이 특정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개선된 시스템에 의해 지금은 거의 모든 비용을 특정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 기능의 관리는 개선되었다.

④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시스템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자부담 징수시스템은 사용자부담 제도의 신뢰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징수의 책임은 부담을 부과하는 조직에 있다. 이것이 제삼자와 징수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 지불이 서비스의 제공전에 요구될 수 없거나 혹은 동시에 요구될 수 없으면, 청구서(Invoice)는 지불마감일을 적시하여 사전에 배달되어야만 한다. 청구서는 충분하지만 과도한 정보를 담지 않는 방식으로 분명하고 간단하여야만 한다.
- 징수비용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또한 징수과정의 불편함도 최소화되어야 한다.
- 사용자부담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는 즉시 문제시 하여야 한다. 징수 행위 이전에 강력한 제재메카니즘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에 의존하는 것은 분명히 정의되어야 하고 투명하여야 한다. 사용자부담의 비납부 수준은 투명하여야 한다. 만약 사용자부담 금액이 적어 징수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면 징수형태의 변경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사례 4>

바르셀로나 소방당국은 비위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징수하였다. 실제로 20~30%에 해당하는 청구서만이 징수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다양한 요인들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징수 책임이 불명확하였고, 청구서를 발행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며, 청구서 자체가 복잡하였으며,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재메카니즘이 매우 제약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수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사례 5>

독일정부가 고속도로 이용에 대해 시간에 따른 도로 사용 부담금(Euro-Vignet)을 입법화하려 할 때, 여러 국가간 단일한 방식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인접국가와 상호보조를 취하였다. 이것은 운전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였고 사용자부담금의 징수 과정을 편리하게 하였다.

⑤ 징수기관 업적의 감시 및 평가

-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조직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강력한 관리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 사용자비용 징수와 관련하여 조직의 특정한 금전적, 서비스 질 및 업적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의 성과는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 질과 효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 하에 감시되어야 한다.
- 조직은 사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서비스 사용자의 견해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구해야만 한다.
- 사용자부담 징수는 정부조직에게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것은 인식되어야만 하고 적절히 계획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특히 인적자원관리 및 정보기술시스템의 영역에서 합당하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사례 6>

오스트레일리아의 Attorney-General's Legal Service가 사용자징수 시스템으로 전환하자 고객 서비스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동 기구는 고객 서베이를 정기적으로 행하고 주고객 그룹을 조성하였다. 이는 동 기구가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주문형으로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동 기구는 업적을 개선하기 위해 사적부문에서 최고의 업무에 정기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였다. 사용자징수로의 전환은 스태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스태프의 상업적 기술을 고양하고 새로운 상업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적 변화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고객과 스태프에 대한 서베이는 동 기구의 개선된 실적을 확인하여 준다.

<사례 7>

Ordnance Survey는 정부조직, 공익 및 상업조직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지도와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Ordnance Survey의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160개 조직을 대표하는 자문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Ordnance Survey 서비스의 적용대상, 가용성, 상세한 수준 가격전략 기타 등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다. Ordnance Survey는 동 위원회의 견해를 합당하고 가능한 정도까지 받아들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객의 견해를 구함에 따라 Ordnance Survey는 그들의 서비스 제공을 사용자의 욕구에 보다 잘 맞출 수 있었다.

⑥ 징수금액의 적절한 관리

- 개별 조직이 징수한 사용자부담금 수익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익은 합당하다면 차감수익(음의 지출)으로 분류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특정한 서비스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수익관리의 책임은 조직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준다.

- 사용자부담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조직의 서비스 수요증가에 대해 지출과 사용자부담 수익을 늘림으로써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가변적인 예산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례 8>

핀란드에서는 사용자부담 개혁과 동시에, 새로운 순예산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것은 정부조직으로 하여금 의회의 사전승인이 없이도 증가된 지출을 사용자부담 징수액의 증가로 상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과거의 예산 시스템은 예산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총수준으로 운용되었다. 개혁은 정부조직의 재정적 정비상의 업적을 향상시켰다.

⑦ 적정 가격책정 전략

- 어떠한 경우든, 가격책정은 경쟁시장 가격에 근거하여야 한다.
- 다른 경우에 있어서, 완전한 비용 회수보다 적은 것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없다면, 각 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비용 회수' 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는 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 요금 구조의 단순성이 중요하다. 동일한 서비스가 하나의 집단의 사용자들에게 공급될 때, 개별적인 사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비용에 있어서 약간의 가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 어떠한 서비스가 개별사용자가 아니라 한 계층의 사용자들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그러한 서비스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그 계층내의 개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공급과 사용료 부과 사이의 관계가 다소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는 다소간의 사용자 부담의 편익 있어서의 상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peak와 off-peak에 대한 차별화된 가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유사하게, 프리미엄 가격에 대하여, 서비스 우선권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대체서비스가 유사한 비용 부담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을 도입을 하는 것은 그러한 대체 서비스의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그러한 대체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례 9>

‘미국 핵규제 위원회’는 완전 비용회수의 바탕 위에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두 가지 유형의 사용자비용 부과를 평가하고 있다. 첫째, 위원회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서비스의 공급비용을 회수하는 사용료를 평가하고 있다. 둘째, 개별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 계층으로 귀속될 수 있는 서비스의 비용 회수를 위한 사용료를 평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 계층내의 각 사용자에게 이러한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시키고 있으며, 개별사용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연간 사용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사례 10>

스웨덴 통계청은 데이터 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는 전문정보에 대한 주문을 받았을 때, 그 주문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차별화된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즉각적인 처리를 요하는 주문에 대해서는 프리미엄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낮은 시간대나 야간에 처리될 수 있는 주문에 대해서는 할인된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사례 11>

아이슬란드 보건부가 외래진료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도입했을 때, ‘입원진료서비스’는 비용 부담없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1일 입원진료’ 환자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유사한 비용 부담원칙이 도입하고 나서야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⑧ 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인식하라.

- 완전비용회수가 개별 사용자에게 대해 과도한 금전적인 부담이 될 때, 사용자들에 대한 부담축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저소득층, 소규모 단체, 원격지 사용자, 대량 사용자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부담축소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은 명백하고 명시적이어야 할 것이다.
- 사용자 부담으로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없을 때, 보조의 정도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감독하는 주체들에게 명백해야 할 것이다.
- 조세나 수혜 체계를 통한 조치가 부담축소를 통한 것보다 형평성 확보를 위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

<사례 12>

아이슬란드에서 초등 전문진료에 대해 사용자 부담을 도입했을 때, 이것이 저소득층에게 불합리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이 결과, 아이슬란드는 일반적인 비용부담의 1/3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할인카드를 도입하였다.

<사례 13>

캐나다에서 항공 관제서비스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원칙이 도입되었을 때, 15인승 통근항공기보다 400인승 점보여객기에 있어서 이러한 서비스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모든 항공기들에 대하여 동일한 비용근거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항공기의 크기에 따라서 거의 변하지 않을 지라도,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된 사용자 부담원칙은 항공기의 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사례 14>

룩셈부르크에서는 퇴직 후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때, 각 거주자의 금전적인 원천을 고려한다. 만일 거주자의 월 소득이 사용자 부담액과 같거나, 더 적다면, 사용자 부담액을 이에 따라서 감소시켜, 거주자는 평균적인 소득액을 유지하게 된다. 거주자 보유 자산에 대한 고려를 위한 특별조치들도 또한 존재하고 있다.

⑨ 경쟁적 중립성을 확보하라.

- 만일 한 조직이 다른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과 아울러, 민간부분과 경쟁하면서 상업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면, 독점서비스가 상업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그러한 서비스의 가격책정시, 비용책정이 정확하며, 민간주체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비용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부조직은 여러 가지 조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무상으로 중앙기관에 의한 특정 지원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다.

<사례 15>

핀란드에서는, 경쟁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조직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상업적인 서비스의 종류에 대하여 제약을 받고 있다; 모든 그러한 서비스는 그 조직의 기본적인 法定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한 서비스의 비용산정에 대해서 특별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 조직에 대하여 가격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자유경쟁청(the Office of Free Competition)에 의해 그러한 규정의 준수여부가 감독되고 있다.

참고문헌

-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199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1996.
- 김기표, 현행법상 국민의 금전적 부담금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총서』, 법제처, 1993.
- 김동건·이준구, 「도로사용부담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 『경제학연구』, 1986
- 김성수, 지하철도채권의 법적 성격 — 공법상 부담금 체계에서 본 강제공채의 합법성 여부, 『매지논총』, 제8집, 연세대학교 매지학술연구소, 1991. 2.
- 김진수, 『기업의 기부행위와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97-15, 1997. 12.
- 노기성, 「수익자부담과 재정」,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심상달·이계식(編), 한국개발연구원, 1989
- 대우경제연구소, 『상장기업의 1997년 준조세 부담 현황』, 조사자료, 98-01-02-09, 1998. 4. 20.
- 손원익, 「경제위기와 조세정책방향」, 『경제위기와 조세 및 재정운용방향』,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6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 1998. 8.
- 손원익, 『접대비 관련세제의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97-17, 1997. 12.
- 이계식, 「지방재정과 지역별 소득분배」,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編), 한국개발연구원, 1988
- 이규억·이재형, 「공공요금과 재정」,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編), 한국개발연구원, 1988
-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4. 5.
- 이춘근, 『한국 기업의 준조세 부담에 관한 연구』, 연구조사자료 51, 한국경제연구원, 1991. 4.
- 이춘근, 『한국 기업의 준조세 부담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57, 한국경제연구원, 1988. 11.
- 임양택·최명근, 『한국 기업의 준조세 부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부담수준의 실증적 분석』, 연구총서 12, 한국경제연구원, 1983. 6.
- 전영섭·나성린, 『공공경제학』, 학현사, 1995. 8.
- 차병권, 「지방행정기능의 재정립과 효율적 재원배분방안」,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編), 한국개발연구원, 1985
- 최동규, 『한국 기업의 준조세 부담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구총서 35, 한국경제연구원, 1986. 11.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호

- Cordes, J. J., and C. E. Steuerle, "The Effects of Tax Reform on Budget, Tax, and Social Policymaking," in *Proceedings of the Eightieth Annual Conference on Taxation of the National Tax Association/Tax Institute of America*, pp. 41~47, November 1987.
- Downing, P. B, "The Revenue Potential of User Chargers in Municipal Finance," *Public Finance Quarterly*, 20(4), pp. 512~527, October 1992.
- Netzer, D., "Differences in Reliance on User Charges by America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Finance Quarterly*, 20(4), pp. 499~511, 1992
- OECD, *Financing Public Expenditures through User Charges*, 1990
- PUMA,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User Charging for Government Services*, mimeo. 1998.
- Singh, N, and R. Thomas, "User Charges as a Delegation Mechanism,;" *National Tax Journal*, 39, pp. 109~113. 1986
- U. 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Growth of Federal User Charg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Washington, D. C., 1993.
- Wagner, Richard E.(ed), *Charging for government; User charges and earmarked taxes in principle and practice*, Routledge, London, 1991

Abstract

User Charging in Korea

by Kyungdong Hahn* and Jeong-Hun Ha**

User charges, which are called as *quasi-taxes* in Korea, are play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financing government programs. This study reviews the user charging system and analyzes the financial effect and business issues using the listed firms' annual financial reports. It also documents the trend of user charges since 1985 as well as the more recent changes in system and budget processes. Furthermore, it gives some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recent OECD's paper, *User Charging for Government Services: Best Practice Guidelines and Case Studies*(Public Management Occasional Papers, No. 22. 1998).

* Research Fellow,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Research Fellow, Daewoo Economic Research Institute